

대전광역시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임종호 · 김한수 · 이종영 · 정일호

연구진

연구책임 • 임종호 / 대전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공동연구 • 김한수 / 건양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교수

공동연구 • 이종영 / 대덕대학교 생활체육과 교수

공동연구 • 정일호 / (사)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 사무총장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방법	5
제2장 한국 체육정책 및 조직 현황	9
제1절 스포츠 정책의 기본제도	9
제2절 스포츠 정책의 시책사업	24
제3절 스포츠 관련 단체조직	29
제4절 특정 스포츠 정책의 상황	36
제3장 대전광역시 체육단체 조직의 체계 분석	45
제1절 조직현황 분석	45
제2절 사업 분석	48
제3절 예산분석	51
제4장 해외사례	61
제1절 미국의 사례	61
제2절 독일의 사례	86
제3절 프랑스의 사례	120
제4절 중국의 사례	172

제5장 통합체육회 조직 운영 모형 설정 및 활성화 방안	199
제1절 조직운영 모형의 도출 원칙	199
제2절 조직모형의 설정	203
제3절 활성화 방안 및 향후과제	205
참고문헌	207

- 표 목 차 -

표 2-1.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지역 스포츠클럽)의 수·종목 수 및 회원 수의 동향	11
표 2-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일반회계 예산(2010년)	13
표 2-3. 스포츠 관련 예산(2003-2013년)	20
표 2-4. 체육국 스포츠 예산 배분 내역(2005-2013년)	21
표 2-5. 스포츠비전 2018 주요 내용	25
표 2-6. 대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31
표 2-7. 국민생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33
표 2-8.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35
표 3-1. 대전광역시체육회 2015년도 예산 규모(재원별)	52
표 3-2. 대전광역시체육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53
표 3-3.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2015년도 예산 규모(재원별)	55
표 3-4.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	56
표 4-1. 연방정부의 스포츠 조성금(2006-2009)	92
표 4-2. 프랑스의 스포츠담당부의 직원수(2008)	124
표 4-3. 프랑스의 스포츠 정책에 배분되었던 예산 총액(2010-2011)	132
표 4-4. 국립 스포츠진흥센터의 예산(2006-2011)	134
표 4-5. 스포츠 지출(2004-2008)	135
표 4-6. 스포츠연맹별의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분포(2010)	148
표 4-7. 직업의 레벨과 자격 면허의 대상관계	154
표 4-8. 스포츠 담당부에 의해서 교부된 「스포츠청소년 영리 사단·생활」 부문의 전문 면허증의 수	155
표 4-9. 스포츠의 성질을 지닌 다양한 경제적 활동에서 임금 노동자 수의 추이	162

표 4-10. 조치의 실시 이후 생긴 취지지도 계약 및 장래계약의 수	163
표 4-11. 「청소년·스포츠」분야의 청소년 고용의 사람 수	163
표 4-12. 프랑스로림픽위원회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	166
표 4-13. 국가체육총국의 예산(2010)	180
표 4-14. 스포츠에 대한 자금 전체의 투입량 및 재정 투입량의 비교와 비율(1993-2001)	180
표 4-15. 중국의 스포츠 복권 매상과 공익금의 추이	182

- 그림 목 차 -

그림 3-1. 대전광역시체육회의 조직도	46
그림 3-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조직도	47
그림 5-1.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의 연계성 모형도	201
그림 5-2.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연계강화 모형	204
그림 5-3.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실질적 완전통합 모형	205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체육은 우리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고, 인생을 보다 충실된 것으로 하는 것과 함께 명랑하고 풍족하게 활력으로 충만한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는 세계 공통의 인류 문화의 하나로 있다. 또한, 체육의 국제교류는 언어 및 생활습관의 차이를 넘어, 동일한 규칙 하에서 서로 겨루는 것 등에 의해 세계 사람들과의 이해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우호와 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은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대회에서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1984년 LA올림픽대회 이후에는 줄곧 종합성적 10위권 내외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함으로써, 전문체육 중심의 체육정책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성적을 올리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 도입된 체육특기자 제도와 1980년대 도입된 꿈나무 발굴제도, 국가대표선수층의 역할 강화 등 전문체육 선수 육성에 중점을 둔 재정적, 정책적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전문체육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생활체육으로 그 방향을 점차 전환에 따라 관람스포츠에서 참여 스포츠로,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어 지대한 국민적 관심과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체육정책으로 변화가고 있다. 사회여건과 환경, 국민적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체육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은 새롭게 구축되고,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며, 스포츠 및 체육활동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으로써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육정책이 요구되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 위주의 기존 체육구조 속에서 생활체육을 진흥시키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

와 종목별 경기단체의 전문체육 위주의 역할 수행 구조는 우리나라 생활체육 진흥의 장벽이 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민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체육단체와 종목별 경기단체의 역할 제고 및 강화를 위한 발전적 체육행정 시스템 구축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국내 경기단체들의 재원조달 문제는 국고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수입만으로는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 속에 대응할 수 없어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주관단체의 이원화로 인한 운영 비효율성이나 단체간 갈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체육단체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체육계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통합체육회로 인한 조직운영의 효율화로 절감된 예산과 인력을 수요가 높은 현장 체육분야에 재투입하여 대국민 체육서비스 확대가 가능하고, 지방 하부 조직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여 체육 전반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이행이 용이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밀접한 연계를 맺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토대로 전문체육이 활성화되는 스포츠 선진국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46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도 통합체육회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대책 방안의 도출이 시급하다.

제2절 연구의 목적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32246호, 2015.3.27.개정 공포)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내년 3월에 출범해야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역시 통합된 체육회로 출범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양 체육단체의 운영 현황(조직, 사업, 예산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내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을 통해서 대전광역시에 최적화된 통합체육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기술적·서술적 접근방법에 의해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협조를 통한 양 단체의 연혁 및 운영 현황(조직, 사업, 예산 등)을 분석하고, 국내 중앙정부의 현황과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을 통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실태와 제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국외 문헌 사례조사

외국의 경우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알아보고자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각 나라별 세부적인 분석내용은 스포츠담당 부서(명칭, 예산, 인원 규모), 스포츠 진흥 관련 법(관련 법, 관련 계획), 스포츠 진흥 자원, 스포츠 단체의 자리매김, 장애인 스포츠의 자리매김, 스포츠 진흥에 관한 세계상의 우대조치, 국립 경기장(설치형태, 공적 재정지원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 전문가 심층 간담회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운영 현황,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와 국내외 문헌 사례조사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에 최적화된 통합체육회의 모델 제시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여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고자 한다.

제 2 장

한국 체육정책 및 조직 현황

제1절 스포츠 정책의 기본제도

제2절 스포츠 정책의 시책사업

제3절 스포츠 관련의 단체조직

제4절 특정 스포츠 정책의 상황

제 2 장 한국 체육정책 및 조직 현황

제1절 스포츠 정책의 기본제도

1. 역사적 배경, 앞으로의 동향 및 현 상황

1) 스포츠 정책의 역사적 배경 및 앞으로의 동향

한국의 체육·스포츠 정책과 제도는 정부수립(1948년) 후,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역사적으로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으로 나뉘지며, 제3공화국(1963-1972년) 이전에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경기력 향상, 올림픽대회 참가에 의한 국위선양, 해외와의 스포츠 교류 등이 민간주도로 실시되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인식되어 엘리트 체육의 육성에 총력을 쏟았다. 또, 체육·스포츠의 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에 제정되어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학교체육, 직장체육, 선수육성 등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정부는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체육·스포츠 정책에서 생활체육(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로 있었다. 제3공화국이 체육·스포츠 정책의 기초를 다진 시기로 있었다고 한다면 제5공화국(1981-1988년)은 스포츠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체육·스포츠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정부조직 내에 「체육부」를 신설하는 것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체육·스포츠를 통해서 국민통합, 복지증진 및 국위선양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런 배경의 가운데, 1986년의 서울아시아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실마리로서 제6공화국의 정부(1988-1993년)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도리계획)」

을 책정하고, 1991년에 생활체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립하고, 국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문민정부(1993-1998년)는 특히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 잡힌 진흥을 도모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3-1997년)」을 책정하고, 체육·스포츠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정부(1998-2003년)는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8-2002년)」을 책정하고, 2002년의 축구 월드컵 한일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반 시설의 확충과 국민의 생활체육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체육·스포츠 정책을 전개하였다. 참여정부(2003-2008년)는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2003-2008년)」을 책정하고, 스포츠 참가율의 향상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를 통한 국위선양에 중점을 두고, 해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세대·여러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부터의 현 정권은 「문화 비전(2008-2012년)」을 책정하고, 스포츠 활동의 참가 상황의 개선, 스포츠에 친숙하기 쉬운 교육환경의 정비, 세계 속에서 한국 스포츠의 자리매김, 엘리트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 스포츠 행정 시스템의 선진화,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체육·스포츠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스포츠 정책은 경기력 향상에 관한 시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제6공화국 이후는 서서히 생활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에 관한 시책이 도입되어 정책의 전환을 앞으로 어떻게 도모하는가가 정책과제로 되어져 있다.

2) 국민의 스포츠 참가 동향

(1) 스포츠 실시 상황

한국정부가 2010년에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주에 2회 이상, 1회 30분이상의 운동·스포츠를 실시하였던 사람」의 비율은 41.5%로, 2008년의 34.2%에 비해서 7.3% 증가하였다.

한국정부는 1988년 이후, 국민의 스포츠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포츠 참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체육·스포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로서, 주 2-3회 이상의 스포츠 참가자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00년의 실시율은 IMF 경제위기의 발생에 의해 저하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2006년과 비교해서 9.9% 감소하고 있으나, 이 감소의 이유로서는 세계 금융 위기에 동반하는 한국 통화위기에 의한 경제위기감의 고조, 고용불안, 실업률 증가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실시되고 있는 활동의 종류를 보게 되면, 「워킹」이 31.9%로 가장 높고, 이어서 「등산」 16.2%, 「보디빌딩」 12.8%, 「축구」 10.1%, 「사이클링(cycling)」 5.5%, 「수영」 5.3%로 알려져 있다.

(2) 스포츠클럽 가입 상황

정부와 민간단체로 있는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 종목별 연합회의 육성·지원, 지역의 스포츠 동호인 행사의 개최·지원 등,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의 종목별 리그에는 클럽 소속의 리더(지도자)가 배치되고, 지속적으로 클럽 리그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종목별 클럽 리그제의 사업을 통해서 클럽 참가자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표2-1.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지역 스포츠클럽)의 수·종목 수 및 회원 수의 동향

연도	클럽 수	종목 수	회원 수
2002	52,020	84	1,776,604
2003	64,665	109	2,176,221
2004	73,802	109	2,449,948
2005	77,452	109	2,556,737
2006	82,781	109	2,701,736
2007	92,688	109	2,913,806
2008	95,075	115	2,985,253
2009	97,697	115	3,081,436
2010	97,815	117	3,085,87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체육백서에 의해 작성.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지역 스포츠클럽)의 수, 그 종목 수 및 회원 수는 <표 2-1>와 같이 있다. 2010년 1월 현재,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지역 스포츠클럽)의 수는 97,815개 클럽, 종목 수는 117개 종목, 회원 수는 3,085,879명으로 있다. 이런 클럽은 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생활체육회와 종목별 연합회에 소속되고, 회원 수는 1개 클럽 평균 31.5명으로 되어져 있다. 한국의 지역 스포츠클럽의 수, 종목 수 및 회원 수는 2002년부터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 국내의 스포츠 담당 기관

1) 중앙조직

(1) 스포츠 행정 조직

한국의 스포츠 행정조직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기에 창설되었다. 미군정당국은 1946년 3월 29일에 문교부 교화국내에 체육과를 설치해서 체육업무를 담당케 하고, 같은 해 7월 10일에는 교화국을 문화국으로 개편하였다. 게다가 1948년 7월 17일의 정부조직법 제1호에 의해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다만, 당시의 직원 수는 4-5명으로 있었다.

1982년 3월 20일에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체육부」가 신설되고, 문교부가 총괄하고 있었던 체육에 관한 업무를 체육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후, 체육부는 1990년에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1993년 3월 6일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문화체육부」로 통합되어 문화, 청소년의 보호 및 체육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었다. 더욱이, 1998년에 행정개혁이 이루어져 문화, 체육, 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업무가 통합되어 「문화관광부」가 설치되고, 부의 명칭에서 체육이 없어졌다. 그러나 2008년에 이명박 정권으로 되면서 문화관광부의 명칭에 체육이 추가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었다.

2011년 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스포츠에 관한 업무를 체육국 중심으로 1국 4과로 담당하고 있다. 행정 직원 수는 51명(체육정책과 16명, 체육진흥과

14명, 국제체육과 11명, 장애인 문화체육과 10명)에 의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다.

체육국의 주요 업무로서는 국민의 스포츠 진흥을 위한 단기적 및 중기적인 체육·스포츠 정책을 책정·시행하고,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스포츠의 진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영 지원, 스포츠 단체의 육성, 스포츠 산업의 육성·지원,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 등이 있다.

특히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2010년도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예산은 8,415억 원으로 있고, 그 내역은 국고가 2,639억 원, 기금이 5,776억 원으로 있다. 그 가운데, 체육국의 일반회계 예산(2010년)을 항목별로 보면 전문체육(경기 스포츠)에 예산이 편중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표 2-2).

표 2-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일반회계 예산(2010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항목	예산 액
생활체육	생활체육 활성화	924
국가대표 선수 (전문체육)	국가대표선수 양성	28,079
	국가트레이닝센터 시설 보강	1,425
	전국체육대회용 시설 건설	12,900
스포츠 산업	스포츠 산업 전문 기관 지정·운영	300
	스포츠 산업	2,944
국제체육 교류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1,604
	스포츠 외교력 강화	300
	국제대회 참가 지원	5,100
	안티도핑 활동 지원	605
장애인 체육회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1,000
	장애인 육성 지원	4,500
합계		59,681

2) 지방조직

1982년의 체육부 발족 이전의 지방스포츠 행정조직은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가 교육·과학에 관한 업무와 함께 체육·스포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육부 발족 후, 국무총리의 지시(1982년 12월 28일) 사항으로 있는 「1986년의 서울아시아게임 및 1988년의 서울올림픽 지원 기구의 정비 강화방안」과 내부 지침서(1983년 1월 14일)로 있는 「시·도의 체육지원 전문기구의 설치 지침」이 제시하였던 것을 수용하고,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에 스포츠행정 담당부국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었다. 시·도의 스포츠 업무는 체육지원계가 관리하고 있었으나 스포츠행정의 수요가 증가하였던 것에 동반하여 1989년 9월 1일부터 내무부 산하의 지방행정부서로 생활체육과가 옮겨져 스포츠 산업을 전문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중앙정부 조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행정 조직도 스포츠 담당과 다른 부서와의 통합이 이루어져 체육청소년과 또는 문화관광과 등의 안으로 재편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 통합의 동향은 2011년 현재도 마찬가지로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자치단체(9개) 및 도(9개)에서는 대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국 등의 국 단위 수준에서 그 안에 체육진흥과, 체육청소년과 등의 과가 있고, 게다가 그 하부 조직으로서 체육진흥 팀(계, 담당)과 체육시설 팀(계, 담당)이 있고, 지방의 스포츠 진흥 업무와 시설관리 운영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담당 직원 수는 평균 10-20명으로 있다. 2010년도의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스포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합계 842명으로 있다. 이 인원수는 시설관리 사업소의 인원(554명)을 포함하였던 것으로 있다.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가 설치되어져 있다.

또한, 총 수 24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있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홍보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이 있고, 생활체육 팀, 체육시설 팀, 주민자치 팀 등의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스포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합계로 3,234명으로 있다. 그 내역은 본청의 소속 직원이 2,085명으로 있고, 시설관리 직원이 1,149명으로 되어져 있다.

학교체육에 관해서는 특별시·도교육청의 생활교육체육과가 담당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단체와 긴밀한 상호 협력의 속에서 학교체육, 생활체육 및 전

문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국고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그 외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되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있어, 국고 보조률(30-50%)에 따라서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고 보조사업의 예산 증가는 지방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3) 그 외

(1)연구기관

한국정부의 체육·스포츠 관련의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스포츠개발원(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KISS)이 있다. 동 개발원은 1980년에 스포츠과학연구소로 설립되어 1989년에 재단법인 한국체육과학연구원으로, 2014년에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 개발원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부설 조직으로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체육·스포츠정책에 관련하는 연구를 행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과학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 생활스포츠의 활성화, 스포츠 전문 인재의 양성, 체육·스포츠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동 개발원의 조직은 원장을 중심으로 정책개발실(연구기획팀), 스포츠산업실(산업기획팀, 산업기술진흥팀, 산업지원팀, 시장개척팀), 스포츠과학실(거점센터TF팀), 행정지원실(행정지원팀)로, 4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3. 스포츠 관련 법

스포츠에 관한 주요 법률로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3가지가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에 제정되었다. 현행의 국민체육진흥법은 전체 6장 55조로 구성되어져 있다. 동법의 주요 특색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①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선수, 경기단체 등 12개의 용어 정의(제2조)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진흥 시책을 책정해서 스포츠 활동을 보호·육성하는 것 내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 진흥의 기본시책을 책정하여 실시하는 것(제3조, 제4조)
- ③ 행정과 체육관계 단체와의 협력(제6조)
- ④ 지역체육,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8조-10조)
- ⑤ 여가체육(스포츠)의 진흥 속에서 경정, 경마, 경륜 등의 공영경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제16조)
- ⑥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위한 올림픽 마크 등의 영리목적 사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시설의 확충, 선수 및 지도자의 양성, 스포츠 선수의 복지향상, 생활보조금, 학교운동부의 육성 등) (제19조-제23조)
- ⑦ 대한체육회(제33조), 대한장애인체육회(제34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제36조) 등 스포츠 관련 단체의 여러 규정
- ⑧ 도핑방지 활동(제15조)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제35조)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회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의 스포츠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제18조)
- ⑩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등에 위임하고, 또 관련 행정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제46조)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에 제정되었다. 현행의 법률은 전체 5장 40조로 구성되어져 있다. 한국에서는 스포츠시설의 설치 및 이용이 스포츠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서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법의 주요 특색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① 체육시설, 체육시설 업, 체육시설 업자, 회원, 일반 의료자의 5가지 용어의 정의(제2조)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 및 체육시설 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 ③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스포츠 종목 및 시설의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3조)
- ④ 전문체육 시설, 생활체육 시설, 직장체육 시설 등의 공공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장)
- ⑤ 보조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 시설, 체육시설 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포함되는 각종 체육시설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2007년 4월 6일에 제정되었다. 현행 법은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소위 스포츠의 경제 및 산업의 발전에 국가가 주목하고, 스포츠 산업을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의 결과로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의 책정, 기술개발 및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전문적인 인재의 양성, 스포츠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 등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 동법의 주요 특색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① 스포츠, 스포츠 산업 및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의 3가지 용어의 정의(제2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관계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률에 근거해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함에 의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8조)
- ③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분야별 및 기간별의 세부 시행계획을 책정한다. (제5조)
 - 기본계획에는 이하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 | | |
|-----------------------------|----------------------------|----------------|
|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침 | 2. 조성 | 3. 전문적인 인재의 양성 |
| 4. 스포츠산업 진흥 시설 | 5. 지역의 특성에 맞춘 스포츠 이벤트의 활성화 | |
| 6.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 | 7.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 |
| 8.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 |
| 9. 스포츠산업의 정보망 구축 및 전자거래의 육성 | | |
| 10. 국가간의 스포츠산업의 협력 | 11. 프로스포츠의 육성 | |
- ④ 조성에 관한 규정
- 국유 재산 및 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조항(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 재산 및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 또는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국유 재산 및 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 매각 등의 내용 또는 조건에 관한 것은 국유 재산 및 공유 재산·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자금 지원에 관한 조항(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프로 스포츠의 육성에 관한 규정(제16조)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프로 스포츠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4) 그 외의 관계하는 법률

그 외, 스포츠에 관계하는 법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경륜 및 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수상레저안전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조세특별제한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조세법」 「정부조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및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국민건강증진법」	

4. 스포츠 관련 예산, 자원, 세제

1) 스포츠 관련 예산

한국의 스포츠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회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의 민간 스포츠 단체로부터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3). 스포츠 예산의 총액을 보면 2003년이 1조6,600억원, 2004년이 1조7,976억원, 2005년이 1조9,762억원, 2006년 1조8,957억원, 2007년이 2조5,955억원, 2008년이 3조1,303억원, 2009년이 3조4,090억원으로 있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스포츠 재원은 증가 경향으로 있다. 또, 지방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되어져 있다. 또한, 국가의 예산으로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예산보다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상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표 2-3. 스포츠 관련 예산(2003-2013년)

(단위: 억원)

연도	국고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단체	합계
2003	1,426	12,847	1,726	601	16,600
2004	1,093	14,443	1,526	914	17,976
2005	1,137	16,041	1,747	837	19,762
2006	1,489	13,835	2,291	1,342	18,957
2007	1,812	20,510	2,367	1,266	25,955
2008	2,343	24,808	2,578	1,574	31,303
2009	2,135	25,949	3,860	2,146	34,090
2010	1,529	26,193	5,295	2,327	35,344
2011	1,559	25,677	6,568	2,134	35,938
2012	1,516	28,198	7,344	2,365	39,423
2013	1,717	32,130	9,265	2,724	45,836

*국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

*지방비: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회계의 최종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만 작성

*스포츠단체: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중앙)의 자주 재원에 의한 예산. 국민생활체육회, 시·도, 시·군·구의 생활체육회, 종별연합회(중앙)의 자주 재원에 의한 예산, 태권도진흥재단 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9, 2014). 체육백서 참조.

다음으로, 2009년 체육국의 스포츠예산에 있어서 배분을 보면, 생활체육에 128억 6,300만원, 전문체육에 1,775억 6,300만원, 국제체육에 79억 7,000만원, 스포츠산업에 82억 6,900만원, 장애인스포츠에 66억 1,000만원, 그 외에 2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다(표 2-4).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는 주로 5개의 시책에 예산이 배분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문체육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엘리트 스포츠 혹은 전문체육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로부터의 예산 배분의 측면에서도 전문체육을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생활체육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배분되어져 있다.

또한, 현재의 한국 중앙행정, 즉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란 2004년에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 지역간의 특성에 따른 발전 및 지역간의

연대 및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해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마련된 것으로 있고, 지방에 할당되는 예산을 특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회계인 것으로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이 특별회계로 스포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결정되고, 지역 스포츠 진흥 예산이 특별회계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보되었다.

표 2-4. 체육국의 스포츠 예산 배분 내역(2005-2013년) (단위: 백만원)

내역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활체육	26,252	25,776	11,337	17,649	12,863	93,896	96,547	89,248	104,227
전문체육	77,718	98,342	142,701	193,058	177,563	42,404	43,128	40,845	47,131
국제체육교류	7,465	13,899	11,939	12,998	7,670	7,609	7,126	9,802	10,316
스포츠산업	2,010	6,792	6,674	6,262	8,269	3,244	3,444	3,759	3,496
장애인 스포츠	-	3,898	8,514	4,110	6,610	5,550	5,401	7,747	6,307
그 외	239	145	227	263	244	226	220	214	205
합계	113,684	148,852	181,392	234,340	213,219	152,929	155,866	151,615	171,682

* 「기타」는 체육국의 기본사업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14). 체육백서.

2) 재원

스포츠 재원의 하나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다. 이 기금의 재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고, 이하의 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다. 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을 법률에 근거 확보하고, 하나의 기금에 집중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정부 및 정부 외 사람의 출연금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홍보사업의 수입
- ③ 골프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附加金)
- ④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배분되는 복권 수익금
- ⑥ 경륜, 경정사업 및 종합 유선방송 사업에 대한 수익금
- ⑦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내지 이런 것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임대 등의 운영사업에 대한 수익금
- ⑧ 체육진흥 투표권의 발행사업에 의한 출연금
- ⑨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이 가운데, 체육진흥 투표권(스포츠 복권)은 수익금의 80%가 스포츠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또,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의 40%가 스포츠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스포츠 진흥 투표권의 종류에는 「토토(toto)」와 「프로토(proto)」가 있다. 토토(toto)의 대상 경기로서는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씨름, 배구 등이 있다. 프로토(proto)의 대상 경기로서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이 있다. 또한, 체육진흥 투표권의 수익에 의해 스포츠 토토(toto) 공익기금(TOTO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스포츠 재원으로서 배분되는 총액의 78%가 국민체육진흥 조성에, 10%가 발행 대상 경기 주최 단체에, 7%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체육사업에, 5%가 지방공공단체에 배분되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9년 4월 20일에 신설되었던 공단으로, 현재 본부, 스포츠산업본부, 경주사업본부, 체육과학연구원(KISS), (주)한국체육산업개발의 5개의 조직이 있다. 동 공단은 국민의 스포츠 진흥, 스포츠과학연구, 청소년의 건전육성, 스포츠산업의 육성 등에도 지원을 행하고 있다.

3) 세제

(1)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세제 특례

국민체육진흥법 제41조 제1항은 정부가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것에 의해 조세를 감면한다고 정해져 있다. 동 조 제2

항은 대한체육회에 기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되었던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제한법이 정한 것에 의해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다. 동 조 제3항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평방지위원회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의해 사들려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기관에 준하여 면제한다고 정해져 있다.

(2) 운동경기부에 대한 법인세의 공제

조세 특별제한법 제104조의2 제1호는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목의 운동경기부(엘리트 스포츠 선수로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로 구성되는 학교 및 직장의 운동부인 경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는 날의 사업 년도와 다음 연도의 개시 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가운데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법인세를 공제한다고 정해져 있다.

(3)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위한 면세 조치

한국에서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소위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위한 고유 목적사업 준비기금의 손금산입 특례(제74조), 부가가치세의 면세 등(제106조), 관세의 경감(제118조) 등의 다양한 세제 면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져 있다.

제2절 스포츠 정책의 시책사업

1. 스포츠 기본계획

한국의 스포츠에 관련하는 최신의 기본계획으로서는 ‘스포츠비전 2018’이 있다. 또한, 과거에 책정되었던 스포츠에 관한 계획으로서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1990-1992년),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3-1997년),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8-2002년),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2003-2008년)이 있다.

1) 스포츠비전 2018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2013년 8월)을 맞아 향후 5년간(2013-2017년)의 스포츠정책 청사진인 ‘스포츠비전 2018’을 발표하였다. 스포츠비전 2018은 스포츠의 가능성에 착안하여 출발하였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된 지 오래이다.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은 사회폭력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 또한,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유치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스포츠는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려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못지않게 성장률이 높아 차세대 전략사업으로서의 잠재력도 풍부하다. 이런 스포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스포츠비전 2018’을 수립하게 되었다.

스포츠비전 2018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마련하였다. ① 생활체육 참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 ‘손에 닿는 스포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습관처럼 스포츠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2013년 기준 43%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017년까지는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②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선수 자원의 감소, 역피라미드형 선수 구조, 우수한 경기력에 못 미치는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 스포츠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브랜드 제고를 달성할 계획이다. ③ 우리 스포츠 산업의 시장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융·복합시장 창출 및 스포츠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스포츠 산업 규모를 37조 원에서 53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한다. ④ 체육경기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 등 스포츠 행정의 근간을 개선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를 바꾸고, 스포츠로 사회와 국격 및 미래를 바꿈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꾸는 동력이 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표 2-5>와 같다.

표 2-5. 스포츠비전 2018 주요 내용

전 략	과 제 내 용
손에 닿는 스포츠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형 스포츠클럽(9개소→229개소), 수혜 인원(3,600명→91,600명) ■ 국민체력인증제 인증 국민 49,000명→1,004,000여 명 ■ 생활체육지도자(일반, 노인) 2,230명→2,730명, (장애인) 230명→600명 ■ 작은 체육관(2017년까지 900여 개소) 조성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 개·보수 400개소 ■ 저소득계층 등 대상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확대(274개소→680개소)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스포츠로 국격을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영재와 꿈나무 선수/청소년 대표 육성 확대(2,550명→4,200명) ■ 스포츠인 인권 향상과 복지 강화 ■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 확대(96명→115명) ■ 태권도 사범 파견(19개국 19명→70개국 80명), 드림프로그램(39개국 163명→45개국 180명)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스포츠로 미래를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감형 가상스포츠 시장 규모 3.5조 원 확대 ■ 국내 스포츠 브랜드 시장 점유율 26.0%→34.0% ■ 스포츠기업 300개 창업 지원, 2만 건 일자리 중개, 2,000여 명 취업 달성 ■ 프로구단 수익개선 근거 마련, 스포츠 무형자산 담보 대출 추천
공정한 스포츠 ‘스포츠를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경기단체 운영 규정 전면 개선 및 평가 환류 강화 ■ ‘스포츠 공정위원회(가칭)’ 설치

2) 과거 기본계획

(1)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1990-1992)

한국에서는 1988년의 서울 올림픽 후,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1990년에 이른바 생활체육(스포츠)의 진흥계획으로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호도리 계획)(1990-1992년의 3년 계획)을 책정하였다. 호도리 계획은 한국에서 최초의 생활스포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있고, 생활스포츠의 기본방향, 참가조건 정비, 참가율의 향상 시책 등이 정해졌다. 또한, 이 계획은 ① 국민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② 사업별 추진 현황, ③ 생활체육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으로 구성되었다.

(2)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3-1997)

1993년에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 책정되었다. 이 계획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책정되었던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있다. 이 계획은 ① 총괄, ② 부분별 계획, ③ 5개년 계획의 투자 규모 및 ④ 기대효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부분별 계획은 ㉠ 생활체육의 국민적인 확산, ㉡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인 육성, ㉢ 국제체육협회의 증진, ㉣ 체육과학의 진흥, ㉤ 체육행정 체계의 보강으로 구성되었다. 즉, 이 계획은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국제체육, 체육과학 및 체육행정으로 나눠 각각의 시책 및 사업내용이 종합 계획적으로 책정되었다.

(3)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8-2002)

1998년에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 책정되었다. 이 계획은 ① 총괄, ② 부분별 계획, ③ 투자규모 및 체육지표의 변동 전망의 3부 6장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부분별 계획에서는 ㉠ 생활체육, ㉡ 전문체육, ㉢ 국제체육, ㉣ 축구 월드컵, ㉤ 체육산업, ㉥ 체육과학 및 체육행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시책 및 사업이 책정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제1차 계획을 이어가면서 체육시설업의 관광산업화와의 지원 및 스포츠 소비자에의 서비스 개선이라고 한 스포츠 산업에 관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2002년 축구 월드컵 시책도 추가되어 있다.

(4)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2003-2008)

2003년에는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 책정되었다. 이 계획은 ① 총론, ② 부분별 계획 및 부록의 2부 6장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부분별 계획에서는 ㉠ 생활체육, ㉡ 전문체육, ㉢ 스포츠산업, ㉣ 국제체육, ㉤ 체육과학 및 정보, ㉥ 체육 행정 및 체육재정으로 나뉘, 각각의 시책 및 사업이 책정되었다. 이 계획은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과 비교하면 축구 월드컵에 관한 부분별 계획이 삭제되었던 것 외에는 큰 구성의 변경은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진흥 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책정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 동 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는 지방 공공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시책에는 ① 생활체육의 진흥, ②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 및 육성, ③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및 관리, ④ 체육과학의 진흥, ⑤ 여가체육 활동의 육성 및 지원, ⑥ 그 외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의 6가지가 있다(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시책에서 연도별의 국민체육진흥의 시행 계획을 책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동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더욱이, 이 시책에 따라 체육진흥 계획을 책정해야 한다(동 법 시행령 제4조). 다만, 체육진흥 계획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감 또는 시·군·구의 교육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것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것으로 되어져 있다.

2. 스포츠 정책의 구조 및 체계

1) 스포츠의 개념 규정

(1) 스포츠

한국에서는 스포츠의 개념을 규정하는 법률로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존재한다. 이 법률에서 스포츠는 「건강한 신체의 육성, 건전한 정신의 함양,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2) 체육

국민체육진흥법은 ①체육, ②전문체육, ③생활체육, ④선수, ⑤학교, ⑥체육지도자, ⑦체육동호인 조직, ⑧운동경기부, ⑨체육단체, ⑩도핑, ⑪경기단체, ⑫체육진흥투표권의 12개 항의 법령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라는 용어는 없고, 「체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체육이란 운동경기 및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길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여가체육」에 관한 규정이 있고, 여가체육의 육성 속에서 레크리에이션, 프로경기, 경마, 경륜, 경정 등이 건전하게 행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법령 용어로서 스포츠와 체육이 개별로 정의되어져 있다.

(3)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한국에서는 한국 독자의 전문용어로서 경기스포츠에 관련하는 「전문체육」이라는 용어와 생활체육(스포츠)에 관련하는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
|--|

2) 한국에서 스포츠 정책의 체계

한국에서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 행정조직, 스포츠 관련 법, 스포츠 기본계획, 스포츠 진흥 시책 등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장애인 체육」 「국제체육 교류」 「여가체육」 등에 관한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3절 스포츠 관련 단체조직

1. 국내의 스포츠 통괄 단체

1) 대한체육회

(1) 설립 배경 및 목적

대한체육회는 2009년 6월 29일에 정관을 변경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였다. 이것에 동반하여 그 영문 명칭이 Korea Sports Council에서 Korean Olympic Committee(KOC)로 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맹하는 한국의 국내 올림픽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대한체육회의 역할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근거해서,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의 경기 스포츠 진흥, 스포츠 선수의 복지향상, 국가대표의 은퇴 지원 사업, 그 외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외적인 교섭권을 지닌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올림픽 정신을 양성·보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조로 되는 정신적 신체적인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친선,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의 참가 등을 행하고 있다.

(2) 조직 구성

현재 대한체육회는 70개(정가맹 경기단체 56개, 준가맹 경기단체 5개, 인정단체 9개)의 가맹 경기단체와 17개의 시·도지부, 18개의 재외한인체육단체를 두고 있다. 시·도 체육회는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217개의 시·군·구 체육회와 읍·면·동(시·군·구보다 하위의 행정구역의 단위) 체육회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아래 사무총장, 선수총장이 있고, 사무총장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차장이 있다. 또한 직제와 별도로 국제 체육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제위원장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고 있다. 조직원은 임원의 경우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7명, 감사 2명이며, 사무처는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1명, 선수총장 1명, 3본부 2실 1단 1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3명이다.

(3) 예산(재정 현황)

대한체육회의 2013년도 예산은 자체수입 145억 원, 국고 402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129억 원, 공익사업 적립금 67억 원 등 총 1,745억 원 규모이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국고 및 공익사업 적립금, 자체예산이 감소되었고, 기금예산이 증가하였다. 이는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관련 훈련수당 증액 등 훈련여건 개선 및 선수단 격려금 등이 2012년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 기금예산은 진천선수촌 1단계 사업 준공에 운영비 등의 예산이 증가한 것이다(표 2-6).

표 2-6. 대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예산 비중 (B/A)×100(%)
		국고	기금	공익사업 적립금	자체(B)	
2009	134,931	67,835	56,023	2,575	8,498	6.3
2010	141,078	35,604	82,801	9,256	13,417	9.5
2011	188,661	36,105	128,912	7,613	16,031	8.5
2012	154,020	41,211	87,489	7,781	17,539	11.39
2013	174,510	40,215	112,990	6,781	14,524	8.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체육백서.

시·도 체육회의 2013년 총 예산은 2,311억 원 규모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한체육회 등의 보조금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찬조금 등 자체수입 규모는 47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경기단체의 2013년도 총 예산은 2,766억 원으로 국고와 기금 보조금과 사업수입, 찬조금 등 자체 수입으로 구성된다. 전체 예산 중 자체 수입은 2,0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2) 국민생활체육회

(1) 설립 배경 및 목적

1986년 제10회 서울 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일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열기 고조, 산업발달과 자동화 시대의 도래로 국민건강 및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생활체육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의 체육동호인들은 1990년 7월부터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결성을 시작하였으며, 이어 시·도 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여 1990년 11월 30일 15개 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민간차원에서 범국민 체육활동을 확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목적으로 각 시·도 생활체육

협회의 참여 속에서 1991년 2월 6일, 국민생활체육협회의 명칭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관련 중심단체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증진, 국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조국애 함양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조직 구성

국민생활체육회는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생활체육회와 65개 전국 종목별연합회 및 6개 협력, 30개 등록단체가 있으며, 시도 생활체육회에는 해당 시도 행정구역별 시·군·구 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 시도별 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는데 전국적으로 229개 시·군·구 생활체육회와 100개 종목 793개의 시도 종목별연합회가 있고, 시·군·구 생활체육회는 168개 종목 6,585개 시·군·구 종목별연합회와 생활체육 동호회클럽은 94,386개 클럽, 4,131,880명으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동호인클럽 연결망을 갖추고 점차 선진국형 발전 형태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는 2실 4부가 있으며, 조직원은 임원인 회장, 사무총장 포함하여 현재 4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3) 예산(재정 현황)

국민생활체육회는 창립초기 9억7천만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자체예산을 포함하여 12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출발하였으나,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업무량의 증대 및 세계한민족축전의 개최에 따라 그 사업규모가 증대되어 2013년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428억200만 원 및 자체예산 36억8,284만 원 등 총 464억8,484만 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표 2-7).

표 2-7. 국민생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A)	재원별			자체예산 비중 (B/A)×100(%)
		국고	기금	자체(B)	
2009	22,449	-	20,387	2,062	9.2
2010	25,802	-	23,661	2,141	8.3
2011	27,282	-	24,986	2,296	8.4
2012	35,209	100	32,527	2,539	7.8
2013	46,484	-	42,802	3,682	7.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체육백서.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 예산은 임원 출연금과 회원단체 회비 등의 자체 예산과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지자체 생활체육진흥 사업비로 구성된다.

3)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1) 설립 배경 및 목적

1988년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는 국민에게는 ‘대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민족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였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영원히 기념하고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성과를 보존,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조직 구성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본부 이외에 스포츠산업본부와 경륜·경정사업본부, 한국체육과학연구원(현 한국스포츠개발원)을 두고 있으며, 출자회사로는 (주)한국체육산업개발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체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3임원 3본부(원)장 3단 38실 7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단본부는 3임원 8실 19팀으로 되어 있다. 스포츠산업본부는 1본부장 1단 3실 14팀으로 되어 있고,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본부장 2단 23실 32팀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은 1원장 4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현황은 본부 163명, 스포츠산업본부 144명, 경륜·경정사업 355명, 연구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주)한국체육산업개발은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기념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올림픽공원·경정공원·경주시설·스포츠센터 등 공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스포츠·문화사업 전문회사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1대표이사 1전문위원 5실 1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예산(재정 현황)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익잉여금 3,110억 원 등 발족기금 3,521억 원으로 시작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조성액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1조8,039억 원이다. 보조금사업이 포함된 기금운영계획과 별도로 운영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3년도 법인회계 규모는 1조7,798억 원으로, 보조금사업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3년도 운용 규모는 9,816억 원으로 경륜·경정·투표권 전입금 5,893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표 2-8).

표 2-8.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 백만 원)

수입	금액	지출	금액
계	981,631	계	981,631
○ 이자 수입	16,330	○ 기금관리비	10,142
○ 회원제골프장 수입	49,595	○ 사업운영비	13,471
○ 투자사업 수입	31,028	- 경륜	639
○ 연구원 운영 수입	1,868	- 경륜	3,369
○ 법인회계 전입금	589,381	- 경륜	4,207
- 경륜	43,701	- 경륜	5,256
- 경정	11,108	○ 보조금(기금지원)	899,945
- 투표권	534,572	○ 용자지출	8,240
○ 복권기금 전입금	50,633	○ 투자지출	13,414
○ 용자회수	12,796	○ 공자금 예탁	-
○ 여유자금 회수	230,000	○ 여유자금운용	36,41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체육백서.

2. 스포츠 단체 또는 클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해 왔던 스포츠클럽 모델 사업(2006-2010)은 2011년부터 국민생활체육회에 의한 스포츠클럽 사업으로 바뀌어져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3억5,000만 원으로, 각 클럽당 1,690만 원을 80개의 클럽에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각 클럽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개 종목 이상을 운영해야 하며, 회원은 100명 이상의 다세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하고 있다.

3. 스포츠단체의 재취업(second career)에 대한 노력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는 선수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특히 동 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외 대통령령에서 정한 단체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선수가 아마추어 경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에 의해 2006년부터 하계·동계의 올림픽 및 아시아대회의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국제교류의 기본으로 되는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동 회는 국제적인 인재 전문기업으로 있는 (주)아데코 코리아(Adecco Korea 글로벌 인력솔루션기업)와 협동하고, 올림픽 및 대표선수에서 은퇴한 스포츠 선수의 경력관리 프로그램(IOC Athlete Career Program: IOC ACP)을 통해서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적성에 따른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4절 특정 스포츠 정책의 상황

1. 장애인 스포츠

1)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 스포츠는 1950년대의 6.25전쟁, 1960년대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던 상이군인의 재활 수단으로서 시작하였다. 또, 특별지원 학교에서 교육교과의 실시, 운동경기부의 창설, 대회의 개최, 대회에의 참가 촉진 등도 장애인의 스포츠 진흥을 후원하였다. 1965년에는 국제 스토크 맨더빌(Stoke Mandeville) 대회(현재의 장애인올림픽의 기원으로 되는 장애인의 스포츠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1967년에는 제1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를 개최하였던 것에 의해 장애인 스포츠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1981년 국제 연합의 국제장애인 해를 계기로, 한국장애인 재활협회가 제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주최단체를 바꾸면서 회를 거듭하고(제8회 대회는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개최 때문에 실시되지 않고), 현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하에 대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전국단체로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5회를 주최하였던 서울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가 최초로 있다.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후의 1989년에는 대한장애인복지체육협회가 보건복지국의 소관하에 창설되었다. 동 협회는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한 조직개혁에 동반,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업무는

2000년에 대한장애인체육협회에서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후, 2005년의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근거해서 장애인 스포츠를 총괄하는 단체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장애인 스포츠의 소관 관청도 보건복지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는 2007년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근거해서 2008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제언, 복지진흥, 체육스포츠의 진흥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장애인 스포츠의 현황

2010년 12월 말 한국의 기준 장애인 등록 인구는 242만9,547명으로 있다. 이 가운데, 2010년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에의 참가율은 8.3%로 있었다. 또한, 장애인으로 생활체육 활동의 완전 불실행자는 56.0%로, 전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운동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23.0%,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운동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12.8%로 있었다.

전문체육 분야에서 종목별로 등록된 장애인 선수의 현황(2009년 12월 기준)을 보면 축구(합계 1,623명: 남자 1,600명, 여자 23명), 탁구(합계 846명: 남자 661명, 여자 168명), 수영(합계 561명: 남자 416명, 여자 145명)의 순으로 등록 선수가 많다. 또한, 전반적으로 지체장애 및 청각장애의 선수를 포함하는 종목의 선수가 많다. 등록 선수를 남녀별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남자 선수에 비해서 여자 선수의 비율(약 19.3%)이 낮은 경향으로 있다.

3) 장애인 스포츠의 조직 구조

(1) 장애인 스포츠 담당 행정조직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장애인 스포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체육국내에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해서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등의 일부 시·도에 장애인의 전문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많은 자치단체는 장애인 스포츠의 전문 담당부서 및 직원을 두지 않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2) 장애인 스포츠 단체

① 대한장애인체육회

2005년 11월 25일에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OSAD)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전문부서를 총괄해서 추진하는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 2008년에는 16개의 시·도에서 장애인체육회의 설립이 완료되고, 게다가 시·도별로 시·군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를 근거로 해서 장애인의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단체로 있다. 주된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이 있다.

- ① 장애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보급
- ② 국내외의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참가와 국제스포츠 교류
- ③ 장애인 스포츠선수의 양성,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의 경기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 ④ 장애인의 경기단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⑤ 장애인의 스포츠선수 및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의 복지 향상
- ⑥ 장애인 체육시설·경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각각 시·도의 지역에서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지역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 ② 각 가맹단체와 각 장애인체육회의 육성 및 지도 감독
- ③ 장애인의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지원 등, 장애인 스포츠의 정착화 추진
- ④ 장애인체육대회에의 참가선수 트레이닝 및 대회참가 지원
- ⑤ 장애인 체육대회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의 장애인 스포츠의 육성과 보급
- ⑥ 장애인 스포츠선수 및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 ⑦ 특별학교 및 장애아 학교에서의 체육 육성
- ⑧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는 종목별 경기단체가 26개 단체, 장애인 중별의 스포츠 단체가 4개 단체, 관련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2개 단체, 합계 32개 단체가 있다. 또한, 별도의 인정단체 7개 단체를 포함

하는 경우에는 합계 39개 단체로 된다. 각 가맹단체는 각각의 시·도 지부로 합계 293개 단체를 슬하에 두고 있다.

②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Korean Paralympics Committee: KPC)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는 국제장애인올림픽헌장에 근거해서 한국의 국내 장애인올림픽위원회(National Paralympic Committees: NPCs)로서 2006년 5월 12일에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총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감사 1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회장을 겸무하고 있다.

4) 장애인 스포츠 관련법과 기본정책

한국에서 장애인 스포츠 관련법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및 그 시행령(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조직과 다음의 사업 및 활동을 정하고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②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③ 장애인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④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⑤ 장애인 선수,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장애인 체육계의 공로자 복지 향상⑥ 그 외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
|--|

또한, 상기의 관련법에 근거해서 장애인 스포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근거,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①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②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③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④생활체육 지도자의 배치 확대, ⑤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센터의 운영, ⑥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전문체육분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의 경기력 강화를 목표로 해서 ①가맹 경기단체의 지원 및 전문체육 육성 환경의 정비, ②국내대회 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의 지원, ③국제 스포츠 교류 거점의 국가에 의한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인재의 양성, ④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국제 스포츠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⑤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 중심으로 한 대표선수 및 후보 선수의 훈련지원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5) 장애인 스포츠 시책 · 사업

(1) 시설

2009년에 경기도 이천시에 장애인전용의 국가트레이닝센터 「한국장애인스포츠 트레이닝센터」가 완공되었다. 약 45,446m²의 부지에 육상경기장, 실내 수영장, 체육관, 휠체어 테니스전용 코트, 양궁장, 탁구장, 숙박시설, 레스토랑(양식 식당) 등이 정비되고, 한국의 장애인올림픽 선수의 강화 거점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고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표준화 및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의 장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2) 지도자

2008년부터 시작하였던 장애인스포츠아카데미는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의한 장애인스포츠 행정 · 정책 실무자의 양성교육으로, 합계 96시간에 걸쳐 국내외의 장애인스포츠의 변천, 스포츠 영어, 스포츠 장애의 분류, 스포츠 대회, 스포츠 행사의 기획론, 스포츠 정책론 등의 교육을 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의 지도자 양성사업을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

(3) 재정 조치

한국의 장애인 스포츠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이며, 2010년에는 이천 한국장애인스포츠트레이닝센터의 완공

에 의한 예산 축소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2. 국립 경기장

한국에서는 1986년의 서울아시아대회, 19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와 2002년의 축구 월드컵 한일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체육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1986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지방체육 시설사업을 국고 보조대상 사업을 포함하였다.

또한, 1989년 3월 31일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체육시설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2년의 축구월드컵 한일대회를 계기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수가 증가하고,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관련 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정부는 종합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력해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및 제101조를 개정(2010. 3. 10)하고, 스포츠 경기장(운동장 및 체육시설)내의 수익시설 설치기준을 대폭으로 완화하였다. 이 완화조치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수익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하고, 경기장 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의 경감도모, 시설 복합화 및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다. 수익시설의 설치 예로서 월드컵경기장의 안에 설치된 점포의 구성을 보면 대형 할인점, 스포츠센터, 영화관, 결혼식장, 문화시설, 사무실 등이 있다.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형 할인점이 있는 서울과 군산의 월드컵경기장 이외의 월드컵경기장과 올림픽메인 경기장은 적자 운영으로 있는 것이 실정으로 있다.

3. 국립트레이닝센터(NTC) 및 강화거점 시설

한국에서는 국가대표선수의 합숙·트레이닝 시설로서 국립트레이닝센터가 있다. 국립트레이닝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하·동계), 아시아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의 국제적 경기대회에 출장하는 선수 등으로 있다.

1) 태릉선수촌(Taerung National Training Center)

태릉선수촌은 1966년 6월에 신설되어 현재 약 31만 m^2 의 광대한 부지로, 숙박시설(올림픽의 집, 영광의 집 등), 트레이닝 시설(체조, 탁구, 역도, 펜싱, 태권도, 배구, 유도, 농구, 싱크로나이즈수영, 육상경기, 핸드볼, 배드민턴, 양궁, 하키, 축구 등), 부대시설(어학원, 도서관, 업무실, 오락실 등)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태백트레이닝센터(Taebaek Training Center)

태백트레이닝센터는 1996년 7월에 신설되어 현재 약 3만2,267 m^2 의 부지로, 숙박시설, 실내체육관, 관리시설,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 표고 1,330m의 높이에 있는 태백트레이닝센터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심폐기능 및 지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시설로서 설치되었다.

3) 진천트레이닝센터(Jincheon Training Center)

진천트레이닝센터(국가대표 종합훈련원)는 태릉선수촌의 노후화 등의 문제에 의해 종합훈련 시설(실내외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육상경기장, 카누, 사격, 테니스, 야구, 태권도, 스포츠의·과학센터 등)로서 2011년 10월 개관하였다.

제 3 장

대전광역시 체육단체 조직의 체계 분석

제1절 조직현황 분석

제2절 사업분석

제3절 예산분석

제 3 장 대전광역시 체육단체 조직의 체계 분석

제1절 조직현황 분석

1.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체육회 지부로서 등록되어 있으며, 스포츠를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시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를 지원·육성함과 아울러 우수한 지도자 및 선수를 육성하여 시의 위상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회장 아래 부회장, 사무처장이 있고, 사무처장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부장이 있다. 조직원은 임원의 경우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20명, 감사 2명이며,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 사무부장 3명, 3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처 정원은 16명과 별도로 계약직 11명으로 총 27명이다(그림 3-1).

대전광역시체육회의 사업내용은 대전광역시체육회 규약(규정) 제4조에 따르면 ① 시민체육 보급 및 선수·경기지도자 육성 ② 전국체육대회 등 대한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각종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③ 스포츠 과학의 진흥과 선수, 지도자의 경기기술 연구 촉진 사업 ④ 가맹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 지원·육성 ⑤ 각종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등 유치 및 개최 ⑥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개발 및 추진 ⑦ 국제 및 시도간 체육교류 ⑧ 체육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⑨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⑩ 기타 체육발전에 관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림 3-1. 대전광역시체육회 조직도

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는 1991년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설립허가에 따라 대전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창립하여 출범하게 되었었으며, 설립 목적은 체육생활화 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추진, 생활체육 동호인활동의 육성 및 지원, 각종 생활체육 단체활동의 지원 및 지도로 있다.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는 회장 아래 부회장, 사무처장이 있고, 사무처장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부장이 있다. 조직원은 임원의 경우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2명,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 사무부장 3명, 3부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처 정원은 13명으로 있다(그림 3-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사업내용은 대전광역시체육회 규약(규정) 제4조에 따르면 ① 구생활체육회 및 시종목별연합회의 관리·지원 ②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③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④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⑤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⑥ 시민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⑦ 청소년 생활체육 연구·보급 ⑧ 기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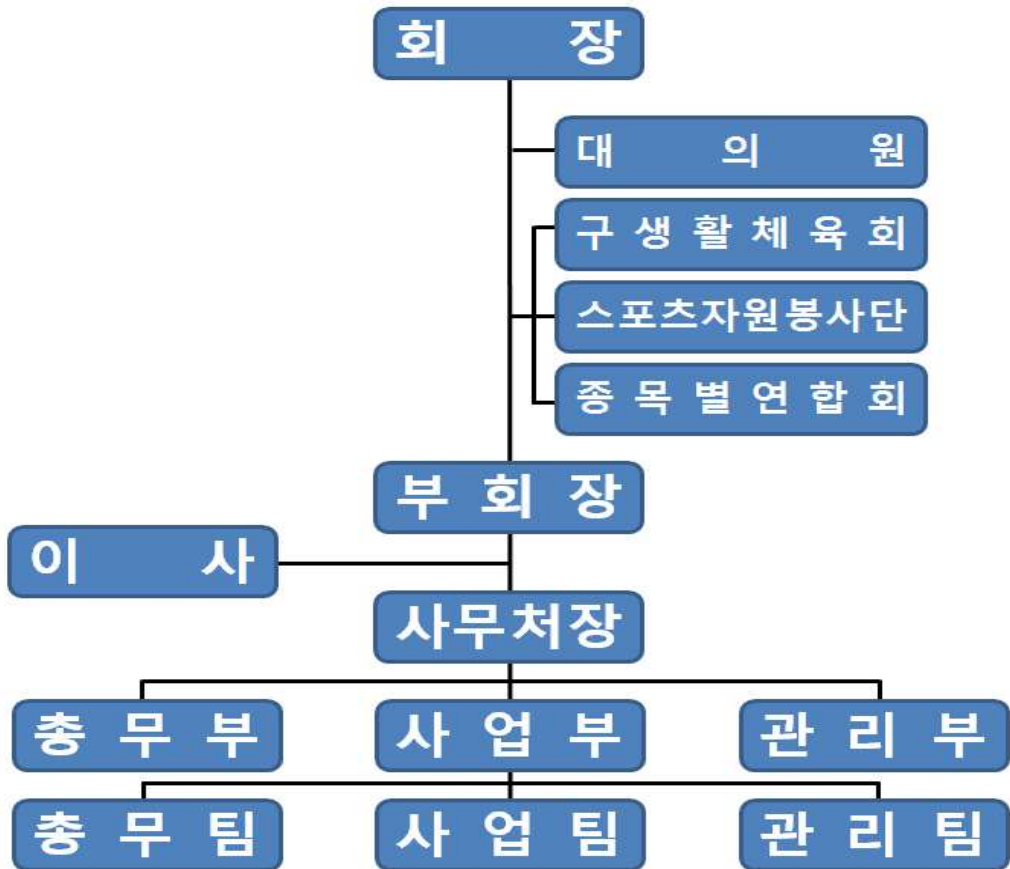


그림 3-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조직도

제2절 사업 분석

1.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 규약(규정) 제4조에 명시된 사업내용은 ① 시민체육 보급 및 선수경기지도자 육성, ② 전국체육대회 등 대한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각종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③ 스포츠 과학의 진흥과 선수, 지도자의 경기기술 연구 촉진 사업, ④ 가맹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 지원·육성, ⑤ 각종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등 유치 및 개최, ⑥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개발 및 추진, ⑦ 국제 및 시·도간 체육교류, ⑧ 체육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⑨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⑩ 기타 체육발전에 관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대전광역시체육회의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국체육대회 참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위권 도약을 꾀하고자 종목별 체계적인 훈련과 안정적인 선수 연계육성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켜 전력향상을 추진하여 전문체육을 통한 시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제9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②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③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대비하여 강화훈련을 실시하여 우수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맹경기단체와 소통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한 경기단체의 균형발전과 체육인 화합의 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가맹경기단체 운영활성화, ②국제(전국)대회 및 강습회 적극 유치·개최, ③기초종목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④용기구 및 시설보수 지원을 통해서 부실경기단체 정상화 유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마련, 체육회 부별(직원) 담당 종목제 정착, 체육인 인화단결 유도, 경쟁력 있는 전국대회 유치와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체육진흥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市) 체육 저변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 체육복지 실현으로 만족도 향상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전문체육 활성화, ②선수 및 우수지도자 육성관리, ③구(區) 체육회 지원, ④스포츠마케팅 활성화, ⑤기타 체육진흥 사업을 통해서 학교·직장체육활성화, 등록선수와 우수지도자 관리, 부상선수 치료 및 스포츠과학 실현,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등 체육진흥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시민체육 활성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전문체육의 아마추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운동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각종 시장기대회 활성화, ②마라톤대회 개최를 통한 체육축제의 장 마련을 통해서 각종 시장기대회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시(市)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체육교류대회 활성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제 스포츠교류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참여를 통해서 우호증진, 국제적 체육마인드 함양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체육행정 내실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체육행정의 체계적 수행과 효율화 등 선진행정 구현을 통해서 홈페이지 활성화, 효율적인 예산관리, 직원 위탁 교육 실시를 통한 행정력을 강화코자 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체육시설 운영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시(市) 체육서비스 제고를 통해서 안정적인 체육행정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규약(규정) 제4조에 명시된 사업내용은 ① 구(區) 생활체육회 및 시(市) 종목별연합회의 관리·지원, ②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③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④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⑤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⑥ 시민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⑦ 청소년 생활체육 연구·보급, ⑧ 기타 대전

광역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사업계획의 수립 목적은 ① 생활체육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② 스포츠 7330 캠페인을 통한 건강한 도시 건설, ③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이다. 또한, 관련근거는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와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에 의한 것이다. 추진방향으로는 ① 시민건강증진 「골든플랜」 사업 추진, ② 생활체육 동호인의 참여욕구 해결을 위한 기회 제공, ③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확대, ④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조성에 있으며,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서는 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과 활기찬 도시 건설에 이바지, ②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③ 가족(세대)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여건 및 분위기 조성에 기여, ④ 100세 시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체육회의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동호인 활동 지원 및 육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호인들이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기량점점 기회의 마련과 시민들이 스포츠 참여를 통한 건강한 체력관리로 삶에 질 향상을 시키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종목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②전국규모대회의 우리 시 개최, ③신규 종목 가입 확대, ④세대공감 생활체육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다고하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종합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 축제의 장 마련으로 개인의 기량점점 및 경기력 향상과 전국 동호인들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호친목과 생활체육 활력 고취시키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제23회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②2015 대전광역시장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③201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④대학생활체육축전, ⑤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⑥유소년 7:7 축구대회, ⑦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 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이다. 이 사업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고령자 및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어린이체능교실, ②여성생활체육강좌, ③대전 시민마라톤교실 운영, ④주말가족 스포츠캠프, ⑤대전체육인증센터 운영, ⑥종합형스포츠클럽(대전 대덕스포츠클럽) 지원, ⑦체육시설 수탁운영, ⑧뉴스포츠 보급단 운영, ⑨전통 스포츠 보급, ⑩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⑪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 원활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지원과 대학자원봉사단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활체육 참여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대학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②생활체육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체육활동 지도로 건강한 시민 육성과 효율적 지도자 배치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②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③생활체육광장지도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절 예산 분석

1.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 규약(규정) 제4조에 명시된 사업내용은 ① 시민체육 보급 및 선수경기지도자 육성, ② 전국체육대회 등 대한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각종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③ 스포츠 과학의 진흥과 선수, 지도자의 경기기술 연구 촉진 사업, ④ 가맹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 지원·육성, ⑤ 각종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등 유치 및 개최, ⑥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개발 및 추진, ⑦ 국제 및 시도간 체육교류, ⑧ 체육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⑨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⑩ 기타 체육발전에 관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대전광역시체육회의 세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3,369백만 원으로 시(市) 지원금이 11,520백만 원과 대한체육 등 기타 1,849백만 원으로 있다(표 3-1).

표 3-1. 대전광역시체육회 2015년도 예산 규모(자원별)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시 지원			교육청 지원	대한체육회 지원	이자수입, 이월금 등
		소계	시비	기금			
계	13,369	11,900	11,520	380	50	292	1,127
일반회계	10,570	9,173	8,793	380	50	292	1,055
특별회계	2,799	2,727	2,727	-	-	-	72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계 기준 재정규모 전체 예산의 79.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보면 사무처 운영비 1,520백만 원, 각종대회 참가 및 운영비 2,956백만 원, 체육단체 및 선수육성 4,907백만 원, 기타 체육진흥 1,037백만 원, 예비비 150백만 원으로 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계 기준 재정 규모 전체 예산의 20.94%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시(市) 운동부 육성 2,280백만 원, 수상 레포츠장 운영 307백만 원, 체육회관 운영 148백만 원, 예비비 64백만 원으로 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2).

표 3-2. 대전광역시체육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총계	10,570,093	100.0%	10,285,201	100.0%	284,892	2.77%
010 사무처운영	1,520,398	14.38%	1,356,457	13.19%	163,941	12.09%
011 인건비	1,016,610	9.62%	840,617	8.17%	175,993	20.94%
012 물건비	365,752	3.46%	366,785	3.57%	-1,033	-0.28%
013 경상이전	43,000	0.41%	45,000	0.44%	-2,000	-4.44%
014 자본지출	-	0.00%	4,050	0.04%	-4,050	-100.0%
015 내부거래	95,036	0.90%	100,005	0.97%	-4,969	-4.97%
020 각종대회참가및운영	2,955,325	27.96%	3,201,012	31.12%	-245,687	-7.68%
021 동계체전참가	67,330	0.64%	63,534	0.62%	3,796	5.97%
022 소년체전참가	701,955	6.64%	461,450	4.49%	240,505	52.12%
023 전국체전참가	1,523,590	14.41%	1,794,390	17.45%	-270,800	-15.09%
024 기타대회 및 행사지원	662,450	6.27%	881,638	8.57%	-219,188	-24.86%
030 체육단체및선수육성지원	4,907,150	46.42%	4,425,285	43.03%	481,865	10.89%
031 체육단체육성지원	2266,577	2.52%	273,800	2.66%	-7,223	-2.64%
032 선수육성지원	1,623,185	15.36%	1,174,056	11.42%	449,129	38.25%
033 지도자육성	1,238,223	11.71%	1,198,264	11.65%	39,959	3.33%
034 직장운동부육성	1,779,165	16.83%	1,779,165	17.30%	0	0.00%
040 기타 체육진흥	1,037,220	9.81%	1,009,347	9.81%	27,873	2.76%
041 각종체육진흥지원	1,037,220	9.81%	1,009,347	9.81%	27,873	2.76%
050 예비비 및 기타	150,000	1.42%	293,100	2.85%	-143,100	-48.82%
051 예비비 및 기타	150,000	1.42%	293,100	2.85%	-143,100	-48.82%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총 액은 10,570,093천원으로 2014년도(10,285,201천원) 대비 2.77%(284,892천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사무처 운영비는 2015년에 1,520,39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63,941천원(12.09%)이 증가하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014년도에 840,617천원에서 2015년도 1,016,610천원으로 175,993천원(20.94%)이 증가한 반면, 물건비는 365,75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3천원(0.28%)이 감소, 경상이전은 43,000

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천원(4.44%) 감소, 자본지출은 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50천원(100.0%) 감소, 내부거래는 95,03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05천원(4.97%)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대회 참가 및 운영비는 2015년에 2,955,32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687천원 (7.6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15년도 동계체전 참가 예산은 67,33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796천원(5.97%) 증가, 소년체전 참가 예산은 701,95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505천원(52.12%) 증가, 전국체전 참가 예산은 1,523,59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800천원(15.09%) 감소, 기타 대회 및 행사지원 예산은 662,45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188천원(24.8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비는 2015년에 4,907,15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81,865천원(10.8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15년도 체육단체 육성 지원 예산은 266,57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223천원(2.64%) 감소, 선수 육성 지원 예산은 1,623,18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9,129천원(38.25%) 증가, 지도자 육성 예산은 1,238,22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59천원(3.33%) 감소, 직장운동부 육성 예산은 1,779,16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체육진흥(각종 체육진흥 지원)비는 2015년에 1,037,22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73천원(2.76%)이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은 2015년에 150,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100천원(48.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일반 세출 예산을 살펴 본 결과, 전년도(2014년) 대비 세출 예산이 상대적으로 급격한 증가한 항목은 사무처 인건비와 소년체전 참가, 선수육성 지원비인 반면 상대적으로 감소한 항목은 전국체전 참가와 지도자 육성, 대회 및 행사지원비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규약(규정) 제4조에 명시된 사업내용은 ① 구(區) 생활체육회 및 시(市) 종목별연합회의 관리·지원, ②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③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④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⑤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⑥ 시민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⑦ 청소년 생활체육 연구·보급, ⑧ 기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세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3,852,988천원과 특별회계 1,421,787천원을 합한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5,274,775천원으로 있다(표 3-3).

표 3-3.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2015년도 예산 규모(자원별)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합계		5,274,775	
일반회계	소계	3,852,988	
	시(市)비 보조금	3,803,216	
	소계	49,772	
	자체	이사회비	25,500
		회원단체 회비	15,300
		입회비	2,000
		기타수입	3,000
		이월금	3,972
특별회계	소계	1,421,787	
	국민생활체육회지원금	1,225,789	
	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금(대전거점체력센터)	171,998	
	지수체육공원 운영	24,000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계 기준 재정규모 전체 예산의 7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보면 시(市) 생활체육회 지원 1,144,516천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064,250천원,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206,590천원, 생활체육지도자 981,192천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370,640천원,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85,800천원으로 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계 기준 재정 규모 전체 예산의 2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국민생활체육회 지원 사업 1,225,789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사업 171,998천원, 지수체육공원 운영 24,000천원으로 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표 3-4.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총계		5,274,775	100.0%	4,190,026	100.0%	1,084,749	25.9%
소계		3,852,988	73.0%	3,481,588	83.1%	371,430	10.7%
일반회계	시(市)생활체육회지원	1,144,546	21.7%	1,111,812	26.5%	32,704	2.9%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참가	1,064,250	20.2%	830,477	19.8%	233,773	28.1%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206,590	3.9%	108,167	2.6%	98,423	91.0%
	생활체육지도자	981,192	18.6%	972,072	23.2%	9,120	0.9%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85,800	1.6%	88,900	2.1%	-3,100	-3.5%
소계		1,421,787	23.0%	708,438	16.9%	713,349	100.7%
특별회계	국민생활체육회지원사업	1,225,789	23.2%	536,130	12.8%	689,659	128.6%
	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사업	171,998	3.3%	148,308	3.5%	23,690	16.0%
	지수체육공원 운영	24,000	0.5%	24,000	0.6%	0	0.0%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총 액은 5,274,775천원으로 2014년도(4,190,026천원) 대비 25.9%(1,084,749천원)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자체예산 포함) 세출 예산은 2015년에 3,852,98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084,749천원(25.9%)이 증가하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市) 생활체육회 지원비가 2014년도에 1,111,812천원에서 2015년도 1,144,546천원으로 32,704천원(2.9%) 증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1,064,25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773천원(28.1%) 증가,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은 206,59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8,423천원(91.0%) 증가, 생활체육지도자는 981,19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120천원(0.9%) 증가한 반면 생활체육광장 지도자는 85,800천원으로 전년도 대

비 3,100천원(3.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15년에 1,421,78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13,349천원(100.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15년도 국민생활체육회 지원 사업 예산은 1,225,78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89,659천원(128.6%) 증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사업 예산은 171,99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90천원(16.0%) 증가한 반면 지수체육공원 운영 예산은 24,000천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해외사례

.....
제1절 미국의 사례

제2절 독일의 사례

제3절 프랑스의 사례

제4절 중국의 사례
.....

제 4 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사례

1. 스포츠 담당 기관

1) 중앙조직

(1)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의 연방정부 수준에서 운동·스포츠와 관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로 되며, 국가 전체의 스포츠 정책을 통할(統轄)하는 기관은 아니다.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각 주 정부에 위임되어져 있다. 정부 기관으로서 1956년 청소년의 체력문제를 계기로 행정부문의 하나로서 「청소년의 체력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가 창설되고, 그 후 스포츠를 그 대상에 추가해 발전해 왔다. 그리고 현재 이 기관은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예전의 대상에 더해 영양부문을 추가해서 「대통령 체력 스포츠 영양 심의회(President's Council on Fitness, Sports and Nutrition: PCFSN)」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되어져 있다. 그 목적은 국민에게 규칙적으로 체력 육성과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는 것에 의해 그 실천을 원조하는 것으로 있다. 현재, 이 심의회는 25명의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최근의 예산은 100만 달러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 정책이라기보다도 건강운동·체력육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기관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스포츠 정책과는 다르지만, 국무부·교육문화국(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에는 올림픽 등의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에 관여하는 창구로서 국제스포츠추진과(Director of International Sports Initiatives)가 설치되어 있다.

2) 지방조직

주요한 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혹은 군 단위 스포츠위원회(Sports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고, 이 외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전반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원·레크리에이션국(Park and Recreation Department)도 있다. 후자의 경우, 운동 및 스포츠는 그 일부의 기능으로서 간접적인 관계로 되며, 일반 사람들이 운동 및 스포츠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의미에서는 공원·레크리에이션국의 역할은 크다.

3) 그 외

(1) 미국올림픽위원회(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

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를 통할하고 있는 것은 연방법규로 있는 「아마추어 스포츠법(The Amateur Sport Act of 1978)」에 의해서 승인받았던 미국올림픽위원회(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로 있다. 동 위원회의 산하에는 국내 통할 단체 수준부터 스포츠 위원회까지 여러 가지 단체가 가맹하고 있다. 가맹단체로서 올림픽 및 범미(Pan-American) 경기종목 부문으로서 하계 37개 종목 경기단체, 동계 8개 종목 경기단체, 지역 올림픽 발전 프로그램 단체로서 6개 단체, 커뮤니티 파트너(Community Partners)가 10개 단체, 복합 스포츠 단체가 35개 단체(그 가운데, 지역기반의 스포츠 단체가 20개 단체, 장애인 스포츠 관련이 7개 단체, 학교 스포츠 관련이 4개 단체, 군대 스포츠 관련이 4개 단체), 총계 96개 단체가 회원으로서 가맹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의 통할기관으로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연방정부와의 관계가 깊고, 1991년부터는 수도 워싱턴DC에 정부 관계 연락사무소를 두고, 연방정부 및 의회와 제휴·정보 공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미국올림픽위원회와 가맹 경기단체는 국세청이 인정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있고, 단체에의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가 적용된다.

1978년 11월에 제정되었던 「아마추어 스포츠법」은 동 위원회에 널리 국민의 스포츠 참가를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USOC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및 지역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으나, 주로 엘리트 스포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있다.

(2) 전미레크리에이션·공원협회(National Recreation and Parks Association: NRPA)

시민 수준의 스포츠 진흥이라는 관점에서는 전미레크리에이션·공원협회(National Recreation and Parks Association: NRPA)의 역할도 크다. 동 협회는 국내 2만3,000의 지방 자치단체의 공원·레크리에이션 관계 기관을 비롯하여 민간단체, 학술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민간 비영리의 전국 통괄단체로 있고, 공원·레크리에이션 시설의 관리·운영, 또한 레저·레크리에이션 행정 등에 있어서 전국 수준 및 지역 수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공원·레크리에이션 행정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NRPA ANNUAL REPORT FY10」에 의하면 2010년도의 동 협회 총 수입은 13,119,715달러로 있고, 총 지출이 12,596,014달러로 있다.

2. 스포츠관련 법

1) 올림픽·아마추어 스포츠법(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 1998)

1975년, 당시의 포드 대통령은 올림픽대회에서의 성적 부진의 원인 구명과 그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각 스포츠 조직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림픽·스포츠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n Olympic Sports: PCOS)」을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상세한 보고서를 토대로 1978년에 「아마추어 스포츠법」이 제정되었다. 부제로서 「미국합중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활동을 추진·통합하고, 아마추어 경기자의 권리를 허가하고, 그리고 국내 통괄단체에 관한 논쟁 및 그 외의 목적 달성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로 부기되고, 1950년에 제정되었던 「미국합중국 올림픽협회를 통합하는 법률」을 수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에 의해서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아마추어 스포츠를 통할하는 중앙조직으로서 인정받아 올림픽, 범미(Pan-American)대회 등의 국제경기대회의 임원, 선수의 선발결정권을 전면적으로 얻어 아마추어 스포츠 활동의 추진과 경기조직간의 조정기관으로 되었다. 그리고 또한, 각 경기단체를 대표하는 국내 통괄단체를 허가하는 것에 의해 USOC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기구가 통일,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있다. 국제 경기력의 향상에의 대책이 당초 중심적인 과제로 있었으며, 법률의 규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목적 조항 안에 신체적·체력과 국민 참가의 추진·원조, 여성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 마이너리티 스포츠(Minority Sports)의 장려·원조 등이 열거된 점은 널리 스포츠 진흥을 대상에 넣어 그 제정을 후원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비정치성, 비영리성이 강조되었던 점, 올림픽위원회 명칭의 독점적 사용이 규정되었던 점 등도 현대적 과제로서 중요하게 있었다. 그 후, 1998년에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본 법은 파라림픽(Paralympic)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더욱이 선수 및 조직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조언하는 것이 가능한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수용, 올림픽·아마추어 스포츠법(정확하게는 제정에 공헌하였던 의원 이름을 붙여서 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으로 개정되었다.

2) 체육촉진법(Physical Education for Progress Act 2000)

1965년 제정의 초등·중등교육법의 제10편(Titl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1965). 유치원 아동부터 초등·중학생까지의 체육 프로그램을 확충,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교육부국(education agency)에 보조금을 각출(釀出)하는 것 등을 정하였던 것.

3) 타이틀 나인(Title IX of the Educational Amendment of 1972: 교육수정법 제 9편)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서 제정되었던 「Title IX」의 기본적인 목표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합중국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단순히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재정적 원조를 받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 참가를 거부당한다든지, 이익을 부정하게 된다든지 혹은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 즉,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원조를 받는 교육기관에 있어 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였던 교육의 기회균등 법으로 있다. 직접 체육·스포츠를 대상으로 하였던 법률은 아니며, 특히 성의 차이에 의해서 문제가 표면화하기 쉬운 체육·스포츠의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되었다. 1975년에 그 실시 규칙이 당시의 건강교육복지부에 의해서 작성되어져 있어 제34조에서 교과체육에 관해서, 제41조에서 과외스포츠에 관해서 각각 열거되어 있다. 이 이행은 70년대의 학교체육·스포츠 관계자의 가장 큰 과제로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약간의 현장 혼란은 있었긴 하지만, 이 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것으로 여성의 체육, 경기 스포츠는 크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그 후도, 이 체육·스포츠에서 남녀평등의 이념 기대는 교육기관에 그치지 않고 널리 스포츠에 영향을 주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4) 고령자법(Older Americans Act of 1965)

연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신체활동에 의해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1965년에 제정되고서 여러 회 개정을 거치고 있다.

5) 지방 재정 원조법(Local Fiscal Assistance Act of 1972)

1972년 제정. 주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에의 일반 재원 보조 제도를 정하였던 것.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8개의 우선 범주의 하나로, 각 자치단체에서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열거되어 있다. 스포츠 시설의 설치, 그리고 운영·유지를 위한 보조금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다.

6) 통일 대리인법(Uniform Athlete Agents Act (2000): UAAA)

스포츠 대리인을 규제하는 통일법으로 있고, 현재 40개 주(州)와 콜롬비아 행정구, 미국령 버진군도(Virgin Islands of the United States)에서 동 법이 적용되고 있다(연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의 유무는 각 주(州)의 자치에 위임되어져 있다).

대리인이 관여하는 학생선수의 물의(scandal)가 사회문제화 되고, 약 절반의 주에서 뭔가 스포츠 대리인 규제법이 제정되는 등, 각 주에서 대리인 규제의 움직임이 높아지는 가운데 1997년에 에이전트(agent) 제도를 미국 전토에서 통일적인 것으로 한다는 목표가 열거되어 통일 대리인법(Uniform Athlete Agents Act: UAAA)의 계획(project)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수용해서 통일주법(統一州法) 위원회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가 3년에 걸쳐 초안을 작성하여 2000년에 이 계획을 완성하였다. 동 법은 22개 조로 이루어져 있고, 대리인 등록(4조), 자격취소(7조), 학생선수의 권리(12조), 금지행위(14조), 형사민사행정상의 제재(15·16·17조) 등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대리인의 위법한 행위는 학생선수의 참가 자격을 상실시킨다든지, 정지시킨다든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팀 또는 대학에 대한 제재로도 이어진다. UAAA는 그러한 대리인의 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서는 학생 또는 팀, 대학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7) 스포츠 책임·신탁법(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 (2004): SPARTA)

스포츠 책임·신탁법(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 SPARTA)은 통일 대리인법(Uniform Athlete Agents Act: UAAA)의 동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연방법으로 있고, 대리인의 행위에 관해서 연방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보았던 대학기관은 동 법의 근거로 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SPARTA는 UAAA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주(州)에 관해서도 통일의 대리인 규제를 미치는 것으로 최대의 의의가 있다. 동 법은 8개 조

로 이루어져 있어 ①약식 명칭, ②정의, ③금지행위, ④미국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의한 법의 실시, ⑤주(州)에 의한 제소, ⑥학교교육기관의 보호, ⑦본 법 이외의 구제, ⑧각 주(州)에서 UAAA 적용의 장려에 관해서의 규정이 있다.

8) 커트 플러드법(An Act to Require the General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s to Major League Baseball, and for Other Purposes: Curt Flood Act 1998)

1922년, 1953년, 1972년의 미연방 대법원 결정에 의해 확립되었던 「야구에서의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의 적용 제외 법리(Baseball Exemption)」을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법률.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이란 미국에서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거래 제한 및 가격협정, 시장독점을 금지하는 3개의 법률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클레이튼법(Clayton Antitrust act)」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의 총칭으로 있고, 미국에서 독점 금지법으로 있다고 할 수 있다. 1994-1995년에 발발하였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ajor League Baseball: MLB) 역사상 최대의 노사분쟁 후, 선수회와 리그 쌍방의 의향에 의해 FA, 드래프트(draft), salary Cap(연봉의 총액에 일정의 제한을 두는 제도) 등, 선수시장의 제한에 관해서 나타난 「야구에서의 독점 금지법의 적용 제외의 법리(Baseball Exemption)」의 일부를 철폐하는 커트 플러드법(Curt Flood Act 1998)이 가결되었다. 다만, 1996년에 프로의 내셔널 풋볼 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NFL)의 거래제한을 둘러싸고 내려진 미연방 대법원 결정(Brown v. Pro Football, Inc., 518 U.S. 231 (1996))은 노사관계가 기능하는 한, 독점 금지법의 개입을 부정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선수회가 해산하는 등의 행위로 나가지 않는 한 독점 금지법에 근거하는 구제는 곤란하다는 것으로 된다.

9) 스포츠 방송법(TITLE 15 - Commerce and Trade Chapter 32 - Telecasting of Professional Sports Contests: Sports Broadcasting Act of 1961)

내셔널 풋볼 리그(NFL)의 방영권 관리, 즉 리그가 전체 팀의 방영권을 일괄관리 하고, 배타적 방영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에 관해서 연방 지방법원이 독점 금지법 위반이라고 하였기 때문에(US v. NFL, 196 F. 445(1961)), NFL이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이런 계약관행에 관해서 독점 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입법제정을 원했다. 그래서 내셔널 풋볼 리그(NFL),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LB), 전미프로농구협회(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BA), 내셔널 하키 리그(National Hockey League: NHL)의 4대 리그에 관해서 방영권의 일괄관리를 독점 금지법의 규제대상 외로 하는 스포츠 방송법의 제정으로 이르렀다. 이 스포츠 방송법에 의해 스포츠 방영은 그 배타성을 높이고, 스포츠 방영의 미디어로서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3. 스포츠 관련 예산, 자원, 세제

1) 스포츠 관련 예산

(1) 스포츠 관계 국가 예산

1978년의 아마추어 스포츠법 제정 당시, 올림픽위원회에의 국고 보조를 일부 인정하였던 시기는 있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통령 체력 스포츠 영양 심의회(PCFSN)의 체력 및 건강육성을 제외하면 연방정부로서 스포츠 진흥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다.

(2)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계 예산

미국은 건국당초부터 매우 지방분권이 왕성했던 나라로 있다. 따라서 각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스포츠에 대한 노력도 다양하게 있고, 예산의 방향성도 다양하게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활동영역이 있는 공원·레크리에이

선 분야가 행정상에서도 독립되어 있고, 이것이 일반 시민 수준의 스포츠 진흥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스포츠 진흥 관계 예산의 판별도 복잡하게 된다.

(3)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의 예산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의 2007년도 예산액은 1억8,111만 달러로, 총수입액 1억 4,668만 달러의 내역은 주로 사업수입 58%, 기부금 21%, 투자소득 17%로 되어져 있다.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예산액은 올림픽 개최 해에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고, 올림픽 개최 다음해에 감소한다는 주기적인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결산액도 전체적으로 증가 경향으로 있으며, 특히 하계 올림픽 개최 해에 지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동 위원회의 2009년도 예산액은 1억3,55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710만 달러의 삭감으로 되었다. 이것은 경제상황의 영향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의 재검토를 행하고, 고용자의 13%에 이르는 54명을 해고하였던 것이 요인으로 있다.

미국올림픽위원회 2009년도 연차보고(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2009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09년도에 프로그램 서비스로 해서 1억1,977만7,000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그 내역은 회원 서비스(국내 통괄단체 및 장애인 스포츠 단체, 선수 등)에 6,087만4,000 달러(50.8%), 올림픽 트레이닝센터에 2,085만5,000 달러(17.4%), 미국 패럴림픽에 1,242만8,000 달러(10.4%), 약물조절에 401만8,000 달러(3.4%), 방송에 399만8,000 달러(3.3%), 국제관계에 386만5,000 달러(3.2%), 국가적 행사(national event)에 273만9,000 달러(2.3%) 등으로 되어져 있다.

2) 재원

(1) 스포츠 복권 등에 의한 재원

미국 국내에서는 주정부의 관할에 있어 「State Lottery(주정부에 의한 복권)」이 발행되고 있는 경우는 많으나, 스포츠에 특화된 이른바 「스포츠 복권」과는 다르

다. 다만, 일반적으로 「State Lottery」에서의 수익은 복지관계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의미에서는 간접적으로는 있으나 시민 수준에서의 스포츠 진흥과 관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올림픽재단(The United States Olympic Foundation: USOF)

1984년의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의 경우에, 미국올림픽위원회(USOC)가 얻었던 기념주화 매상금 및 대회 수익금의 가운데에서 1억1,100만 달러를 출자해서 설립되었다. 미국 국내의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의 진흥을 위해서 미국올림픽위원회에 대해서 자금 원조를 행하고 있다. 2000년, 동 재단의 이사회에 의해 미국올림픽위원회, 국내 통괄단체, 국내 복합스포츠단체 및 가맹 스포츠단체에의 연간 조성배분은 동 재단의 최신 12분기의 순자산의 평균 5%를 기본으로 하는 방침이 채택되었다. 2007년도의 운영 수입은 3,067만 달러로, 자산총액은 2억2,072만 달러로 있다. 또한, 조성 액은 19만4,000 달러(2005), 951만3,000 달러(2006), 2,060만7,000 달러(2007)로 대폭적인 증가 경향으로 있었으나, 2009년은 1,063만1,000 달러, 2010년은 977만1,000 달러로 감소로 전환하고 있다.

(3) 민간자금

스포츠의 진흥에는 민간자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특히,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이후는 민간에서의 자금 원조가 크게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민간자금의 활용에 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다. 그러나 조정활동적인 부분에서는 정부도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2009년도의 미국올림픽위원회(USOC) 수입의 21%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로 되어져 있다.

3) 세계

(1) 스포츠 진흥에 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는 내국 세입법전(Internal Revenue Code) 501 (c) (3) 및

IRC 501 (j)에 의해 연방법인 소득의 면세와 기부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동 법의 단체에 해당하는 스포츠 단체는 면세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로 되고, 또한 이런 단체에의 기부에 대해서 기부제공자는 손금(損金)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국 세입법전 501 (c) (3)는 자선사업, 종교, 교육, 문학, 동물보호, 국내외의 스포츠 진흥 등의 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세제상의 우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스포츠 단체에 대해서는 ①자선사업, ②교육사업, ③국내외의 스포츠 진흥사업 등을 행하는 비영리 단체의 어딘가에 해당하고 있다면 면세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된다. 또한, ③에 대해서는 시설 및 도구의 제공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어, 이 요건으로 배제되는 스포츠 단체도 적지 않다. 다만, 1982년 동 법전에 501 (j)이 추가되어 동 조(條)에서 말하는 「특정 스포츠 조직(qualified amateur sports organizatio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도구의 제공 유무에 관계없이 세제상의 우대는 주는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미국올림픽위원회 등의 단체는 501 (j) 「특정 스포츠 조직」으로서 면세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위를 얻고 있다. 그 요건으로서 ①오로지 국내외의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경우, ②주로 스포츠의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 출장하는 아마추어 선수의 원조,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대학 스포츠에 관해서는 비즈니스화가 가속되고,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 비추어 세제의 우대에 관해서 재검토론도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공표하였던 2009년의 “Tax Preference for Collegiate Sports”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적되고 있다. 「대학 스포츠에 관해서는 미국 풋볼과 농구는 프로를 능가하는 수익을 올린다. 예를 들면 전미대학경기협회(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의 남자 농구 토너먼트만으로 1억4,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미국 풋볼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으로 있다. 일반 대학에 적용되는 세제상의 우대를 주어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프로 스포츠에 관해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St. Louis Cardinals)의 산하에 있

는 마이넨 리그 야구(Minor League Baseball: MiLB) 트리플 A의 팀을 운영하는 Memphis Redbirds 재단(The Memphis Redbirds Baseball Foundation)만이 프로 팀 운영단체의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면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세제상의 우대를 받기에 이르렀다. 동 단체는 그 계획(mission)을 스포츠, 교육, 내부지향형의 약자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을 모두 「야구를 도시로 되돌리는 계획(Returning Baseball to the Inner City: RBI)」 및 「공교육 제도로 야구를 되돌리는 계획(Sports Teams Returning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STRIPES)」로 환원하고 있는 것 등에 의해 1998년에 내국 세입법전 501 (c) (3)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2) 프로 스포츠의 운동장(체육관)·공연장 건설에의 공금 지출

프로 스포츠 팀의 운동장(체육관) 건립, 운영에 관해서는 각 도시에서 세제 혹은 재정지원의 상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제의 우대 혹은 고액의 재정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메이저리그 야구(MLB) 및 내셔널 풋볼 리그(NFL)에서는 1990년부터 2009년의 사이에 41건의 운동장(체육관)이 건설되었으나, 이 경비 182억100만 달러에 대해서 59.4%의 108억1,244만 달러의 공금이 지출되고 있다. 1건당의 평균은 2억6,371만 달러로 되어져 있다. 다른 한편, 전미프로농구협회(NBA) 및 내셔널 하키리그(NHL)가 소유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38건이 신설되고 있고, 경비가 92억7,616만 달러, 그 가운데 50.2%에 이르는 46억5,953만 달러가 공급으로부터의 지출로 되어져 있다. 또한, 1건당의 평균은 1억2,261만 달러로 있다. 지방도시에 의한 메이저 스포츠(MLB, NFL, NBA, NHL) 팀의 유치 접전이 과열하고 있어 구단 측이 이 상황에 편승해서 운동장(체육관) 혹은 공연장 건설을 둘러싼 좋은 조건을 지방도시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이것이 고액의 공금이 운동장(체육관) 건설에 투입되는 배경으로 되어져 있다(Charles Santo and Gerard Mildner, Sport and Public Policy, 2009 at 68 도표 참조).

4. 스포츠 기본계획

미국에서 직접적인 연방정부 기관에서의 스포츠 기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역할은 미국올림픽위원회의 시책에 위탁된 형태로 되어져 있다. 다만, 정부 수준의 넓은 건강에 관한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련의 「healthy people」 및 전미신체활동계획(The U.S. National Physical Activity Plan)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을 위한 전미신체활동계획(National Physical Activity Plan for United States)」 등을 들 수 있다. 주로, 이런 것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장애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각각 큰 범주의 가운데 하나로 「신체활동과 체력」 혹은 「공원, 레크리에이션, 체력과 스포츠」로서 항목을 열거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다음의 생활스포츠 진흥 시책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1) 생활스포츠 진흥 시책

(1) 스포츠 참가 촉진 시책

① Healthy People 2020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는 1979년 이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관해서 10년마다 국민의 목표를 정하였던 「Health People」을 발표하고 있다. 「Healthy People 2020」에서는 38개의 범주 각각에 있어서 간명한 목표 설정이 되어져 있다. 보건복지부의 관할로 있는 대통령 체력 스포츠 영양 심의회(President's Council on Fitness, Sports and Nutrition: PCFSN)는 홍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또한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관계를 중시해서 청소년 및 성인 각 연령층의 스포츠 참가를 포함한 정기적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 부는 각 연대 및 성별 혹은 장애마다 권장되는 신체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국민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2008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mericans)」를 발표하고 있다. 추가해서 보건복지부내의 부국으로 있는 국립만성병예방건강추진센터(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는 사춘기의 청소년 및 젊은 층의 성인 건강개선의 캠페인을 위해서 학

교, 주(州), 커뮤니티들에게 「Healthy youth」 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② 미국을 위한 전미신체활동 계획(National Physical Activity Plan for United States)

2010년, 앞에서 설명한 조직 「전미신체활동계획」은 모든 미국인이 매일 신체활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 일, 오락 및 스포츠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던 「미국을 위한 전미신체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조직과 그 계획은 전미(미합중국 전체)의 건강, 체육, 스포츠, 영양, 의학 등의 주요 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파트너로 해서 공중위생, 건강 케어, 교육, 비즈니스와 산업, 매스미디어 등 8개의 사회적 섹터의 가운데 하나로 「공원, 레크리에이션, 체력과 스포츠」 부분을 열거하고, 프로그램, 시설에의 활동의 기회 추진, 프로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 대학 스포츠의 지역 스포츠에의 이용, 재원 확대 등의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③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Active Lifestyle Program)

대통령 체력 스포츠 영양 심의회(PCFSN)의 스포츠·체력 진흥에 관한 특징적인 활동에는 운동·스포츠 참가를 촉진하는 사업 「대통령 도전(Presidential Challenge)」의 프로그램으로서 「Active Lifestyle Program」 등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가 표창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동 심의회는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 규칙적인 스포츠 참가 및 실시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것으로, 누구나 참가하여 일정 수준의 실시 기준을 충족한 자를 표창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지금부터 운동·스포츠를 시작하는 초심자(Beginner)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8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1일에 60분, 성인은 30분의 운동·스포츠를 최저라도 1주일에 5일, 6주간 계속하는 프로그램으로 있다.

④ Physical Fitness Test/Health Fitness Test

전국 규모의 체력·운동능력 테스트로서는 대통령 체력 스포츠 영양 심의회(PCFSN)의 청소년들의 체력 테스트 및 표창 프로그램 「Physical Fitness Test」

「Health Fitness Test」가 있다. 이 테스트는 6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체력테스트의 내용은 1마일 달리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매달리기 등의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소년의 근력, 지구력 및 유연성을 높이고자 고안되어져 있다. 체력테스트의 득점에 따라 개인이 표창을 받는 제도가 있어 체력향상의 동기부여로도 이어지고 있다.

2) 학교체육 시책

학교체육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관할로 있고, 주(州)마다 다르게 있는 것이 실상으로 있다. 따라서 학교체육의 실시 상황도 주(州)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파악은 어렵다. 그러나 전미(미합중국 전체) 50개 주(州) 가운데 3개 주(州)를 제외하고 47개 주(州)에서 학교체육의 실시에 관해서 뭔가의 법적인 의무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체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리노이(Illinois)주로, 초등·중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매일 의무 부여되고 있다.

이런 사업은 많은 협찬기업의 협력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에 특징이 있고, 그 내용은 정말로 다양하게 있고, 동시에 계획되고 있다.

3) 국제 경기력 향상 시책

(1) 경기력 향상 시책

① 최고 운동선수의 지원 시스템

최고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미국올림픽위원회(USOC)가 담당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최고 수준의 경기 경력을 적어도 연장하는 것, 경기성적을 향상시키는 것 및 은퇴 후의 생활에의 준비를 시키는 것으로 있다. 동 위원회는 단기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림픽 해(Olympic year)를 주기로 하는 4개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07년도 동 위원회가 행하였던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있다.

■ 직접적 재정 지원

1,228명의 운동선수에 대해서 1,191만3,000 달러가 지급되었다. 그 가운데, 179만 달러가 「메달 성적 보장금(Operation Gold Awards)」로서 약 370명의 운동선수에게 지급되었다. 2009년도는 1,256만9,000 달러가 지급되었다.

■ 엘리트 운동선수 건강보험(Elite Athlete Insurance Program)

999명의 운동선수 보험료로서 약 500만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였다. 2009년도는 373만2,000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 하이 퍼포먼스(high performance)·서비스&지원

14,000명 이상의 운동선수가 개인 부담 없이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등의 거점에서 트레이닝을 행하였다. 이것에 관계되는 비용은 약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있고, 그 가운데에는 운동선수를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에 장기 합숙시켜 집중적인 트레이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운동선수 상주 프로그램(athletes resident program)」도 포함되어져 있다.

■ 올림픽 고용 기회 프로그램(Olympic Job Opportunities Program)

245명의 운동선수가 주택 리폼 소매 체인 「홈 디포(Home Depot)」에서 고용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경제 불황에 의해 주택 홈 디포에서의 본 프로그램 실시는 종료하였다.

■ 운동선수 직업 서비스 프로그램

694명의 운동선수가 USOC와 인재파견회사 「ADECO」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진로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 광고(Commercial) 출연

올림픽 출전선수(olympian)와 장애인 올림픽 출전선수(Paralympians)가 공식 스폰서의 광고에 출연하였다. 출연료는 약 80만 달러에 해당하였다.

② 운동선수에의 수업료 조성금 및 장학금 제도

상기 이외에, 학생의 운동선수에 대해 수업료의 조성금 및 장학금 제도 등도 있다. 수업료의 조성금으로서 연간으로 약 7만 달러가 충당되고 있다. 조성 금액의 폭은 500 달러 미만에서 최고 5,000 달러까지로, 운동선수의 경기 경력 및 조성금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현 시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직접적 재정지원 수령

자나 엘리트 운동선수 건강보험의 수급 권리자 혹은 양쪽에 있는 것이 응모의 조건으로 있고, 중복 수급이 가능하게 있다.

③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시스템

주정부가 직접적으로 경기자에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다. 그러나 몇 개의 주(州)에서는 주(州) 스포츠 기관(State Sport Authority) 등으로 일컫는 비영리조직을 설립하고, 경제 과급효과를 목적으로 주(州)내에서의 프로 스포츠, 대학 스포츠, 올림픽 스포츠 등의 이벤트 유치와 개최에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어 기회제공이라는 면에서 간접적으로 경기자의 지원을 행하고 있다.

미국올림픽위원회가 운영하는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시스템에 있어서는 각 센터와 그것이 소재하는 자치단체가 밀접하게 연계해 있어 그 자치단체가 재정 면에서 지원을 행하고 있는 예가 많다. 이 지원에는 시설 제공 이외에, 운동선수의 거주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최고 스포츠의 이벤트 등의 유치에 적극적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외곽단체로서 컨벤션 전담기구(Convention Visitors Bureau; 이벤트 등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 조직) 및 스포츠 위원회 등이 존재하고 있어 유치 및 개최의 중핵조직으로서 역할을 맡고, 기회제공이라는 면에서 간접적으로 경기자의 지원을 행하고 있다.

(2) 스포츠 지도자 관련 시책

올림픽 운동선수의 양성에 종사하는 코치를 지원하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의 코칭 교육부(USOC Coaching Education Department)는 스포츠 퍼포먼스부문(USOC Sport Performance Division)에 소속한다. USOC 코칭 교육부의 사업은 주로 가맹경기단체의 코칭 프로그램 개발의 보조, 올림픽을 위한 엘리트 코치의 교육기회의 제공, 그리고 최고 코치표창의 3가지로 짜여 있다.

또한, 가맹경기단체의 국가대표팀 수석코치(head coach), 보조코치(assistant coach), 기술진(technical staff), 트레이너 등의 고용 형태에 관해서는 단체마다 다르다. 이런 코치로 취임하기 위한 종목 횡단적인 자격 및 인정에 관해서 미국올림

픽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 동 위원회는 각 국내 총괄단체에 대하여 선수를 코치에 의한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코치 선출의 경우에 경력 조사(Background Check)를 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 외에 국가대표 팀의 코치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의 코치 경력, 코칭 자격, 양호한 건강상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passport)의 소지 등이 필요하게 되는 경기가 많다.

① 미국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American Sport Education Program: ASEP)

청소년기에 질 높은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는 속에서, 학교체육의 수업 및 과외활동에서 운동·스포츠 지도자의 존재는 중요하게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스포츠 지도자에 관한 프로그램으로서는 「미국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American Sport Education Program: ASEP)」가 있다. 운동·스포츠 및 건강에 관한 출판사 「Human Kinetics사」가 1981년에 처음 동 프로그램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 청년 스포츠(youth sport)를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들의 프로그램
- 고교 및 대학 클럽 지도자들(銅 수준)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 심폐소생법(CPR)/자동체외식 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의 프로그램

내용으로서는 팀 관리, 스포츠 응급처치, 코칭이념 등을 열거되어 있다. 40개 주(州)의 고등학교협회, 200개의 대학, 13개의 국내 총괄단체에서는 지도자들에게 3단계(銅, 銀, 金)로 설정된 프로그램의 가운데 동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채택 또는 권장하고 있다.

② 질 높은 지도자·질 높은 스포츠: 운동·스포츠 지도자의 국가 표준(Quality Coaches-Quality Sports: National Standards for Sport Coaches)

전미(미합중국 전체) 스포츠·체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NASPE)는 「질 높은 지도자·질 높은 스포츠 운동·스포츠 지도자의 국가 표준(Quality Coaches-Quality Sports: National Standards for Sport Coaches) (2011년

2월 현재)」를 저술하고, 보다 질 높은 코칭 활동을 위해서 전국적인 기준의 설정을 행하고 있다. 코칭에 관한 8개의 분야(철학 및 윤리, 안전 및 장애예방, 신체 컨디셔닝, 발육발달, 코칭 및 커뮤니케이션, 조직 및 관리, 스포츠 스킬 및 전술, 평가)로 40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스포츠 관계의 모든 단체에서 적용 가능하게 있고, 코치의 자격인정 및 코치를 채용하는 경우의 표준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3) 국제 스포츠대회, 국제 스포츠단체의 유치에 관한 시책

미국올림픽위원회는 시카고시의 2016년 하계 올림픽대회의 유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동 위원회 내에는 시카고의 유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Chicago 2016」라는 부문도 설치되어 있었으나, 유치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주정부가 직접적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올림픽 및 범미대회 등의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에 관해서는 유치를 하였던 시와 연계해서 건설, 숙박, 교통의 면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주(州)가 행하였던 예는 있다.

USOC 가맹경기단체는 각 자치단체와 밀접하게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의 사이에 30개 이상의 국제대회가 미국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망으로 있다.

4) 스포츠의 보호관련 시책

(1) 도핑에 관한 시책

미국올림픽위원회는 세계 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관할에 가입해 있으며, 미국의 프로스포츠 단체는 미국 안티 도핑기구(The U.S. Anti-Doping Agency: USADA)에 가맹하고 있지 않아 WADA의 관할 외로 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LB)에서는 2007년 12월에 미첼 보고서(Mitchell Report)에 의해서 약물사용의 실태에 관한 내부조사 결과가 실명과 함께 공표되고, 전미(미합중국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연방의회도 동 보고서의 내용을 중하게 받아들여 2008

년 1월 미국의회 하원 정부개혁위원회(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가 당해 보고서의 사실에 근거해서 청취(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MLB 커미셔너(commissioner)의 Bud Selig씨와 선수회사사무국장의 Donald Furr씨를 소환하고, TV중계로 전미(미합중국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동 위원회는 MLB에 대해서 일련의 약물문제 해결을 위해서 곧바로 행동을 취하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이고 동시에 유효한 행동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가 MLB에 대하여 뭔가 조치를 촉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을 받아들여 2008년 5월, MLB와 메이저리그 선수회(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MLBPA)는 미첼 보고서의 제안의 거의 모두를 수용하는 형태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약물규제에 관해서는 MLB 사무국이 아니라 독립의 기관이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되었다.

5) 스포츠 산업 관련 시책

(1) 스포츠 산업 정책 관련 시책 및 계획

① 민간단체의 지도자 자격 인정 제도

미국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도자 자격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체력 관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다음의 인정 자격이 있다.

-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
 「Health Fitness Specialist: HFS」
 「Clinical Exercise Specialist: CES」
- Athletic Trainer 자격인정위원회(Board of Certification, Inc.: BOC)
- 전미(미합중국 전체) Aerobic Fitness협회(Aerobics & Fitness Association of America: AFAA)
- 국제 Dance Exercise협회(International Dance Exercise Association: IDEA)

대부분의 자격에 있어 계속 교육이 부과되어 있고, 자격 갱신의 경우에 요구되고 있는 계속교육 단위(continuing education units: CEUs 및 continuing education credit: CEC라고 불린다.)를 취득해야 한다. 이 계속교육 단위로 환산되는 것으로서 연차 총회에의 참가, 논문투고, 세미나에의 참가 등이 있고,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의 인정 자격

「Health Fitness Specialist: HFS」는 개인 및 단체를 위해서 운동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시키는 자격으로 있다. HFS의 주된 역할은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의 파악,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동기부여 등을 행하는 것으로 있고, 대학 및 지역, 기업 등 활약의 장은 폭넓다.

「Clinical Exercise Specialist: CES」는 운동내용의 평가, 트레이닝, 재활, 위험요인의 파악 등을 행하는 것 외, 심폐계·대사계의 질환이 있는 사람의 생활습관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주로 병원, 메디컬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동 의학회에서는 1975년부터 지금까지 45,000명 이상의 건강·피트니스 분야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Athletic Trainer 자격인정 위원회(Board of Certification, Inc.: BOC)의 인정 자격

「공인 Athletic Trainer Certified: ATC」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Athletic Training 교육인정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thletic Training: CAATE)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Athletic Training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Athletic Training 교육인정위원회의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그 후 최저 2년의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Athletic Training 교육인정위원회는 전미(미합중국 전체) Athletic Trainer's 협회(National Athletic Trainer's Association: NATA)에서 1989년에 독립하여 법인화되었던 자격인정 조직으로 있고,

Athletic Training 교육인정위원회는 동 협회에서 독립한 교육과정 인정 조직으로 있다. 2010년 12월 시점에서 동 협회의 회원은 33,698명으로 공인 Athletic Trainer가 37,521명(회원 및 비회원)으로 있다. Athletic Trainer의 규제는 각 주(州)에 따라서 다르며, 현재 48개 주(州)에서 면허제도 등의 규칙이 존재한다.

전미 Strength and Conditioning협회(The National Strength and Conditioning Association: NSCA)에 의한 인정 자격

「Certified Strength & Conditioning Specialist: CSCS」는 상해를 예방하고, 퍼포먼스(performance)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력·유연성·전신지구력의 조정을 행하는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실시하는 지식과 기능을 지닌 사람을 전미(미합중국 전체) Strength & Conditioning협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1985년에 제정되었던 자격으로 있다. 2007년의 시점으로 전세계에서 22,000명 이상의 인정자가 있다.

「NSCA 인정 Personal Trainer(NSCA Certified Personal Trainer: NSCA-CPT)」는 개인의 건강과 체력의 요구에 대하여 개별의 접근을 이용, 평가, 동기부여, 교육, 트레이닝 지도를 행하는 전문능력을 지닌 사람을 인정하는 것으로, 1993년에 제정되었던 자격으로 있다.

이런 자격인정 시험은 세계 각국(300여개국 이상), 5개 국어로 실시되고 있으며 52개국에서 약 30,000명의 회원이 있다.

② 체육계 대학 등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

이 외, 체육계 대학 등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있다. 기본적으로 각 주(州)에 있는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스포츠 및 체육관계의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체육관련(Kinesiology and Exercise Science,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Fitness 등)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약 835개의 4년제 대학이 전문 프로그램 및 전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기의 Athletic Trainer 자격인정위원회 및 전미(미합중국 전체) Strength & Conditioning협회의 자격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두는 대학도 많다. 학생은 이런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응시한다는 과정으로 되어져 있다.

(2) 스포츠 고용 관련 시책

① 건강관리 및 사회지원 사업(Healthcare and Social Assistance)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고용기회의 전망 핸드북 2010-2011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10-2011 Edition)」에 의하면 2008-2018년의 사이에 건강관리 및 사회지원 사업(Healthcare and Social Assistance)은 거대한 고용을 창출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고용이 확대하는 최대의 이유에는 국민의 고령화 및 평균 수명의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건강관리 및 사회지원 사업에는 민영 및 공영병원, 요양시설,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24%의 성장 또는 400만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고 예상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배경으로, 공인 Athletic Trainer(ATC)는 운동·스포츠의 분야만이 아니라 병원 및 진료소, 민간기업 등으로도 활약의 장을 넓히고 있다.

② Health SPA법안

1970년대에는 Fitness Club 등의 지도자에게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법 제도(「Health SPA법안」)가 의회에서 논의되었으나, 10년 후에 이 법안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인 의무부여가 의회에서 심의되었던 것이 업계의 위기감을 만들어내고, 이어서 그 후의 민간지도자 자격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보이고 있다. 앞항에서 열거하였던 민간지도자 인정제도의 질의 높이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있어 유자격자의 사회적인 평가도 매우 높다.

6) 그 외

① 자전거 이용 및 보행 장려 계획

국민의 운동부족이 염려되고, 워킹과 자전거에 의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0년 이후 보도와 자전거 도로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이런 교통관계의 인프라 정

비의 재원은 주로 연방 및 주(州)의 유류세로 있다. 또한 그 외, 자동차세, 자동차 등록료, 매각세, 소득세, 자산세도 재원으로 되어져 있다. 1991년의 종합 육상 효율화법(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ISTEA) 및 1998년의 21세기 교통최적화법(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TEA-21)의 제정 후 자전거 이용 및 보행 장려 계획에의 연방지출이 급증해 왔다. 하지만, 동 계획에의 지출은 지상 교통예산의 2%에 지나지 않는다. 2005년에 미국 육상교통 장기법(Safe, Accountable, Flexibl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SAFETEA-LU)이 제정되고, 재차 보행 및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시설 정비에 예산화가 도모되었다.

또한, 이런 시설 정비에 관해서는 주(州), 군(郡), 시(市)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오리건주(Oregon State)에서는 1971년에 제정되었던 법률에 의해 주(州), 시(市), 군(郡)은 주(州)의 Highway 수익 가운데 합리적인 금액을 자전거 및 보행자용의 도로에 소비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도로가 새롭게 건설되는 경우, 또한 재건설되는 경우에는 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설치를 의무부여하고 있다(Charles Santo and Gerard Mildner, Sport and Public Policy, 2009 at 123-125).

5. 스포츠 관련 단체 조직과 스포츠 정책의 관계

1) 국내의 스포츠 통괄단체

(1) 미국올림픽위원회(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

「아마추어 스포츠법」에 의해서 연방법으로 규정되었던 국내 올림픽위원회(미국 올림픽위원회(USOC))가 국내의 통괄단체로서 기능을 부여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올림픽종목 및 범미경기종목의 단체를 비롯하여 복합 스포츠 조직의 가운데 아마추어 경기연맹(Amateur Athletic Union: AAU), 미국체육학회, YMCA, YWCA 등의 지역 기반의 스포츠 단체 및 각종의 장애인 스포츠 단체 그리고 전미(미합중국 전체) 대학경기협회 및 전미(미합중국 전체) 고등학교연맹 등의

학교관련 스포츠 단체 게다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각 스포츠 단체가 그 산하로 편입되어져 있다. 이 통괄단체로서의 미국올림픽위원회는 각 스포츠 단체의 허가권한을 지닌 것에 의해 경기 스포츠에 관해서는 일원화된 종(縱) 구조로 되어져 있다.

더욱이 동 위원회는 애틀란타(Atlanta)시 소년소녀 클럽을 비롯한 지역올림픽발전 프로그램 단체(6개 단체) 및 Colorado Springs Sports Mission 등의 Community Partners(10개 조직)를 그 가맹단체로서 내포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2009년도 예산액은 1억3,55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710만 달러의 삭감으로 되었다. 이것은 조직의 재검토를 실시, 고용자를 해고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되어져 있다.

2) 그 외의 스포츠 조직

(1) 전미(미합중국) 대학경기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풋볼 시합중에 발생하는 부상 및 사망사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06년에 설립된 합중국대학간 경기협회(Inter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IAAUS)를 기원으로 하는 조직으로 있고, 1910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경기수준별로 부문(division) I 에서 III 의 구분을 마련해 놓고, 2011년 3월 현재에서 부문(division) I 에는 335, 부문(division) II 에는 302, 부문(division) III 에는 447의 대학 등이 재적하고 있다. 각 경기종목의 경기 장학금 및 선발의 규제 등과 함께 경기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한 학업성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있다.

동 협회의 2010년도 수입은 7억5,000만 달러로, 그 가운데 6억4,300만 달러가 방송권료와 마케팅 권리료로 있었다. 지출로서는 4억3,700만 달러를 부문(division) I 에 속하는 대학 등에의 배분 금으로, 1억1,600만 달러를 부문(division) I -III 의 대회 운영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2) 아마추어 경기연맹(Amateur Athletic Union: AAU)

1888년에 설립되었던 미국에서 최대급의 비영리 스포츠 조직으로 있다. 설립 당초는 올림픽에의 선수 파견도 행하고 있었다. 1978년의 아마추어 스포츠법 성립 후에는 「Sports for All, Forever」의 과제(mission)를 내세워 일반 대중의 스포츠(Grassroots Sports)의 보급 및 아마추어 스포츠의 발전, 체력프로그램(Fitness program)의 개발 등을 주로 행하고 있다. 전국에 56개의 지부가 있고, 매년 250개의 전국대회, 3만이 넘는 연령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96년에는 월트 디즈니(Walt Disney)사와 연계하여 플로리다주(Florida State)에 있는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Walt Disney World Resort)내의 ESPN Wide World of Sports Complex에서 40개 이상의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제2절 독일의 사례

1. 스포츠 담당 기관

1) 중앙조직

(1) 스포츠 행정 조직

독일의 스포츠 행정기관은 기본법의 제30조 「연방과 여러 주의 권한배분」 등에 따라 연방과 주(州)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자금이라는 관점에서 연방에서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 전체 국가를 대표하는 것(예를 들면,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세계농아인 올림픽, 세계 및 유럽선수권, 월드컵)
- 외교관계(스포츠의 촉진 원조도 포함하는)
- 국가적이지 않은 중심적 조직의 여러 방책의 조성(연방 전체로서 중요하게 있고, 한 개 주(州)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예를 들면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 스포츠 여러 연맹)
- 관할에 속하는 임무(예를 들면, 관할에 소속하는 연구계획 등)

연방정부 내에서는 연방 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이 다음에 열거하는 스포츠에 관계되는 연방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 최고 스포츠 ■ 장애자의 경기 스포츠 ■ 스포츠의학/스포츠과학
- 연방경찰의 최고 스포츠 ■ 젊은 이주자 ■ 외국인
- 경기 스포츠를 위한 스포츠장 건설의 조성 및 국제적인 사항
- 불리한 입장에 있는 독일 청소년의 스포츠에 의한 통합

연방 내무부에 부속하는 부국 및 직원 수는 다음과 같이 있다.

- 연방 내무부 스포츠국(53명) ■ 연방 스포츠과학연구소(33명)
- 응용스포츠과학연구소(102명) ■ 스포츠기자재연구개발연구소(50명)

①연방 내무부와 ②연방 교육연구부 외, 제12차 스포츠 보고서에 의한 연방정부 내에서는 8개의 부가 그 소괄 범위내에서 스포츠를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③ 외무부: 외교적 문화 정책에서 스포츠의 조성.
- ④ 연방 재무부: 스포츠의 세 문제, 연방세관의 독일 스포츠의 조성, 우편행정의 스포츠.
- ⑤ 연방노동사회부: 재활범위 내에서의 장애인 스포츠, 노동생활 속에서의 스포츠.
- ⑥ 연방국방부: 연방군에서 최고 스포츠의 조성, 직무 및 재충전(refresh) 스포츠.
- ⑦ 연방가정·고령자·주부·청소년부: 연방의 아동·청소년 정책 내에서의 청소년 스포츠, 주부·소년 스포츠, 가족 스포츠 및 고령자의 운동, 유희, 스포츠, 병역대체사회봉사에서 스포츠의 조성.
- ⑧ 연방보건부: 건강관리 범위내의 스포츠.
- ⑨ 연방교통·도시개발부: 철도직원 스포츠조합의 조성.
- ⑩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스포츠와 환경의 문제 및 언급되었던 영역에서의 계획 자금 조달; 연방 자연보호법과 같은 법적 규제.
- ⑪ 연방경제협력개발부: 현재 직접적인 스포츠 조성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빈곤과의 싸움, HIV의 계몽, 아동·청소년 활동, 사회복지활동(social work) 및 분쟁감소를 위한 계획을 위해 개발 정책적 협력의 범위내에서 스포츠의 사회적 통합적 요소를 이용한다.

또한, 2009년 연방정부의 스포츠 조성금은 약 2억2,903만 유로로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연방의회에서는 각 정당의 대표의원으로 이루어진 「연방의회 스포츠위원회」가 설치되어져 있어 스포츠 정책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고 있다.

2) 지방조직

연방공화제로 있는 독일은 16개의 주(Land)와 429개의 군(Kreis), 12,141개의 기초자치단체(Gemeinde)(2009년)로 구성되어져 있다. 기본법의 제30조 「연방과 여러 주(州)의 권한 분배」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정부는 자치권을 대폭으로 인정되어져 있고, 특히 문화, 교육, 복지행정에 관해서는 그 대부분이 주정부에 위임되어져 있다.

많은 주(州)에서는 내무부가 스포츠를 소관하고 있으나, 사회부 및 문부부가 스포츠를 관할하는 주(州)도 있다. 특별시로 있는 함부르크(Hamburg)에서는 문부·스포츠부가 스포츠를 관할하고 있다. 또한, 「연방의회 스포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주(州) 및 자치단체에도 의회 스포츠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3) 그 외

(1) 스포츠장관 회의

독일에서 1977년부터 관례로 한 해에 한 번 개최되고 있는 스포츠장관회의(Sport minister konferenz)는 각 주(州) 스포츠 담당 장관의 연락회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 장관회의의 과제는 특히 여러 주(州)에서 스포츠의 조성 조정,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스포츠 영역에서 여러 주(州)의 이익 유지에 있다. 연방공화제의 독일에서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관회의가 있다. 스포츠장관회의에는 주(州)의 대표뿐만 아니라 주(州)스포츠연맹,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 자치단체의 대표자 등도 참가하고 있다. 의장은 주(州)가 번갈아 맡는 것으로, 2년마다 교대로 있다.

2009년도의 스포츠장관회의의 주제는 ①어린 아이들의 빈곤과 스포츠, ②스포츠의 시설 정비, ③종합격투기, ④EU의 리스본(Lisbon)조약 등으로 있다. 작업 수준 으로서는 스포츠부국 담당자 회의가 있고, 스포츠장관회의를 준비하고, 그 결정을 실행한다. 이 회의의 상설위원회의 하나가 경기스포츠로 있고, 경기자의 세컨드커리어(Second Career) 및 학업지원도 중요한 주제로 되어져 있다. 또 하나의 상설위원회는 스포츠 시설로 있고, 그 외는 필요에 따라 설치되고, 역할을 마치면 해산한다.

스포츠 영역에서 자치단체와 신뢰관계가 있는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내무부는 스포츠장관회의,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 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와 함께 독일도시의회의 스포츠위원회에 상임 게스트로서 속해 있다. 그 외, 연방내무부는 독일 도시·자치단체연맹문화·학교·스포츠위원회의의 활동에 상임 게스트로서 들어가 있다. 이런 위원회에서는 주로 스포츠 영역에서 자치단체의 중심적인 주제 및 자치단체 수준과 연방의 사이에서 밀접한 조정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다루어진다.

2. 스포츠 관련 법

1)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독일에서는 종합적인 스포츠법(이른바 스포츠 기본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독일 민주공화국에서는 1950년의 「청소년법」에 스포츠에 관계되는 사항이 명기되고, 1956년에 종합적인 스포츠법 「독일 민주공화국에서 신체문화스포츠의 한층 촉진에 관한 결정」이 제정되었던 것과 다르다.

독일의 연방 공화국 기본법(1949년)에서도 스포츠에 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나, 스포츠의 권리에 관한 근거로 되고 있는 다음 2개의 조항이 중요하게 있다.

「인격의 자유, 개인의 신상 자유」(제2조1항):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시에 헌법적 질서 또는 도덕률(moral law)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 발전을 찾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결사의 자유」(제9조1항):

모든 독일인은 단체 및 결사를 결성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외, 제32조 1항 「대외관계」, 제91a조 1항 「대학부속 병원을 포함하는 대학의 확충 및 신설」, 제91b조 「협정에 근거하는 연방과 여러 주(州)의 협력」(교육 계획 및 과학의 진흥), 제104조(a) 4항 「연방 및 여러 주(州)의 지출 부담, 재정 원조」 등이 스포츠에 관계한다.

주정부 수준에서는 베를린(Berlin), 브레멘(Bremen),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등의 주(州)가 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2) 독일의 민법(Bürgerliches Recht)

독일에서 지역 스포츠 활동의 핵으로 있는 스포츠클럽(Sportvereine)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법 제9조에 의해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고, 또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독일의 민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비경제적(비영리)인 사회단체로서 취급되고 있다.

3) 그 외의 스포츠에 관련하는 법률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독일에서 스포츠에 관련하는 법률은 다양하게 있다. 예를 들면, 도핑 박멸에 관한 법적 기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약사법(Arzneimittelgesetz)
- 「스포츠에서 도핑의 박멸 개선에 관한 법령」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kämpfung des Dopings im Sport)
- 마약법(Betäubungsmittelgesetz)
-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그 외, 아래의 것이 있다.

-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의 규약(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Satzung) 2006
- 독일 안티도핑기구의 규정(Nationale Anti-Doping Agentur CODE) 2009
- 독일 스포츠중재재판소 규칙(DIS-Sport-SCHIEDGERICHTSORDNUNG) 2008

3. 스포츠 관련 예산, 자원, 세제

1) 스포츠 관련 예산

(1) 스포츠의 국가적 조성의 원칙

연방의 스포츠 조성은 연방 내무부에 의해 3개의 원칙에 근거해서 조정된다.

- ① 스포츠의 자치: 연방 내무부에 의해서 조정되는 연방의 스포츠 조성의 기본적인 원칙은 스포츠의 자치를 존중, 유지하는 것으로 있다.
- ② 조성세(Susidiarität): 스포츠 여러 조직이 실시하는 것으로, 연방의 정책에 합치하는 것에 관해서 부족한 부분을 연방이 보조금의 교부에 의해 조성한다.
- ③ 파트너쉽적 협력: 효율적인 스포츠의 조성은 국가와 스포츠에 책임 있는 기관·조직과의 밀접한 조절과 파트너쉽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2) 부처별 스포츠 조성금의 추이와 예산의 배분

다음의 <표 4-1>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방정부 부처별 스포츠 조성금으로 있다.

표 4-1. 연방정부의 스포츠 조성금(2006-2009) (단위: 천유로)

	2006	2007	2008	2009	합계
외무부	2,768	2,825	4,517	5,272	15,382
연방내무부	141,552	125,015	143,759	148,767	559,093
연방재무부	2,112	2,851	3,386	2,086	10,435
연방노동사회부	1,340	1,153	1,073	1,308	4,874
연방국방부	45,136	49,201	54,218	63,316	211,871
연방보건부	0	0	421	1,374	1,795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1,102	406	163	362	2,033
연방가정·고령자·주부·청소년부	6,568	6,751	5,904	5,801	25,024
연방교육연구부	474	548	478	751	2,251
합계	201,052	188,750	213,919	229,037	832,758

연방총액에서는 2006년의 약 2억105만 유로와 비교하면 2009년은 약 2억2,903만 유로 있고,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의 부처별에서는 최고 스포츠(엘리트 스포츠) 등을 담당하는 연방 내무부가 가장 많고(전체의 약 65%), 연방 국방부가 그 다음으로 많다. 후자는 올림픽대회 등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독일선수의 가운데에서 많은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에서 최고 스포츠(엘리트스포츠)의 구성에 연방 예산에서는 9억4,000만 유로가 준비되었다. 국가예산이 긴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에서 절대로 필요로 하였던 금액에 해당한다고 되어져 있다. 연방 내무부는 바꾸어 말해 DOSB에서의 요구에 따라 트레이너 급여의 증액, 트레이너 우편의 증대, 트레이너의 전문·계속교육의 개선에 몰두하였다. 게다가 최고 팀 간부의 트레이닝 및 경기방책이 확대되고, 최적인 트레이닝장이 정비되었다. 이런 자금의 효율적 투입에 의해서 최고 선수들은 올림픽지원거점(Olympiastützpunkt) 및 연방경기센터(Bundesleistungszentrum)에서 트레이닝 및 시합에 의해서 은혜(혜택)를 받았다고 한다.

최고 스포츠의 효율적인 조성은 과학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스포츠과학기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와 함께 라이프치히(Leipzig)의 응용 트레이닝 과학연구소(Institut für Angewandte Trainingswissenschaft)와 베를린(Berlin)의 스포츠기자재연구개발연구소(Institut für Forschung und Entwicklung von Sportgeräten)가 선수를 원조(조원)하였다. 2006년의 850만 유로에서 2009년의 1,170만 유로로, 이 2곳의 연구소에 연방 조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스포츠에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생각(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있다.

그 외의 스포츠 정책에서 중요한 분야, 예를 들면 장애자의 경기스포츠, 안티도핑연구소 및 도핑방지 등은 추가예산으로 원조된다.

(3) 주(州)의 스포츠 예산과 배분

독일의 스포츠에 관계되는 예산 재원은 각 주(州)에 따라 다르다. 주(州)간의 협정으로 각 주(州)에서 복권 등으로부터 630만 유로가 배분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있다. 그러나 쉘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와 같이 복권 등의 630만 유로만으로 일반회계에서 각출하지 않는 곳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와 같이 복권 등의 재원과 일반회계의 양쪽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쉘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에서는 최근 주(州)의 부담이 증가 경향이 있으나 630만 유로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스포츠 예산은 보합상태로 있다. 이 630만 유로는 90%가 주(州)스포츠연맹으로, 8%가 내무부로, 2%가 문부부로 배분되고 있다.

2) 재원

(1) 스포츠 복권 등에 의한 재원

① 독일스포츠원조재단(Stiftung Deutsche Sporthilfe)

독일스포츠원조재단은 1967년에 독일올림픽위원회와 독일스포츠연맹(DSB)(현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에 의해서 베를린에 설립되었다. 동 재단은 거의 모든 올

림픽종목, 올림픽종목 이외의 전통이 있는 스포츠종목, 그리고 장애자의 최고 스포츠 경기자를 원조한다. 설립 이후, 동 재단은 약 4만 명의 경기자에 대하여 약5,000만 유로를 원조하였다. 현재는 3,800명의 경기자에 대하여 1,000만 유로에서 1,2000만 유로를 원조하고 있다. 게다가 동 재단은 약 600명의 젊은 세대의 영재(Talent)를 엘리트 스포츠 학교 등에서 원조하고 있다.

사적(私的) 기관으로서, 동 재단은 국가적 재정 원조를 받고 있지 않다. 현재, 재정적 자금은 특히 기부, 이벤트, TV복권 「행복의 Spirale」 및 스포츠 우편 우표의 판매 수익으로 조달된다. 수익의 약 2/3은 재단의 후견인 및 찬동자(贊同者)로부터의 기부 및 이벤트 및 사업의 수익으로 있다. 지출의 대부분은 경기자의 원조를 위해서 사용되고, 약 6%만이 재단의 관리와 인건비로 사용된다.

② TV복권 「행복의 Spirale(GlücksSpirale)」

TV복권 「행복의 Spirale」은 1971년에 창시(創始)되었다. 당초는 1972년 뮌헨 올림픽대회 및 1974년의 독일 축구 월드컵대회의 재정 원조에 도움이 되었다. 그 후 도 여러 주(州) 내무장관의 허가에 의해서 계속되어 1990년까지 수익의 절반은 스포츠 및 복지 여러 연맹에 제공되었다. 1991년부터는 기념물 보호, 최근에는 환경 보호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2009년에는 스포츠 관련으로 1,590만 유로의 원조가 있고, 그 배분은 독일올림픽 스포츠연맹(DOSB)에 35%, 독일스포츠 원조 재단에 25%, 주(州)스포츠연맹에 40%로 되어져 있다.

③ 주(州) 독자의 스포츠진흥 자원

16개의 주(州)는 독자로 복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복권, 축구복권(toto)로부터의 수입은 문화, 사회, 스포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스포츠에의 비율은 주(州)에 따라서 다르게 있다. 그 외의 자원은 주정부가 실시, 운영하는 경마 등의 공영 도박으로 있고, 이 수익의 배분도, 각 주(州)가 독자로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헤센주(Land Hessen)에서는 복권, 축구복권, 경마 각각의 수익금의 3.75%가 주(州)스포츠연맹에 배분되고 있다. 다만, 연도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또, 축구복권 수익의 2%는 더욱이 헤센주(Land Hessen)의 축구연맹에 배분된다.

3) 세제

독일에서 스포츠에 관계되는 세금에 관해서, 여기서는 제12차 스포츠보고서를 자료로 하고, 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스포츠에 관계되는 세금의 규칙은 이제까지 현행대로 있으나, 그 한편으로 공익적 스포츠클럽(Sportvereine)에의 기부에 관계되는 세제상의 취급에 관해서 새로운 수정이 이루어졌다.

(1) 공익성에 관계되는 법률

스포츠클럽(Sportvereine)을 세제상에서 취급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법적근거는 조세통칙법(Abgabenordnung)에 있어 정해져 있는 공익성에 관계되는 법률로 있다. 개별의 세법으로 정해져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이 공익성에 관계되는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있다.

스포츠의 축진은 공익적 목적의 한 가지로 있다. 스포츠클럽은 그 규약과 실제의 업무집행에 따라 이 목적을 사욕 없이 전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축진하는 경우에만, 공익성이 있다고 승인된다. 또, 유상의 스포츠를 부분적으로 축진하는 것은 법률상의 예외 규정에 근거, 그 공익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목적사업¹⁾의 성질을 고려해서 조세통칙법 제67a조에는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 규정에 의하면 클럽(vereine)의 모든 스포츠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 매상세(賣上稅)를 포함해서 연간으로 3만5,000 유로를 넘지 않게

1) 목적사업은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는 것으로, 존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으로 조세통칙법의 제 65조가 포함되어져 있다. 특히 목적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저한 필요한 규모를 넘어 우대조치를 받지 못하는 유사사업과 경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사업은 그 사업이 공익적 활동의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만 있는 경우는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있다.

되면 스포츠 활동은 기본적으로 우대조치를 받는 목적사업으로서 처리된다(목적사업의 한도액-조세통칙법 제67a조 1항). 그러나 스포츠클럽은 목적사업의 한계액 적용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클럽 소속의 스포츠선수가 스포츠 활동에 무상으로 참가하거나 혹은 클럽이 클럽외부의 스포츠선수에게 클럽의 자기부담으로 혹은 제3자와 함께 보수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스포츠 활동은 목적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있다.

목적사업으로서 승인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치 못한 경제활동²⁾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클럽에도 통상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제활동은 예를 들면 클럽의 음식점, 교류행사,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음식물의 판매, 기업광고로 있다.

(2) 최근의 동향

국내의 모든 스포츠 여러 연맹은 동일 세금의 규정을 받고 있다. 이것은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50조 제4항의 규칙 적용에 관해서도 적합하게 있다.

공익적 스포츠클럽에 대한 과세, 공익적 스포츠클럽에의 기부에 관계되는 세금의 취급, 이른바 운동지도자의 공제액(소득세법 제3조 26항)에 관해서 과거 여러 해에 실시되었던 광범위에 걸친 개정은 아래에 열거한 새로운 조치에 의해 보충(補足)되었다.

2007년 10월 10일부의 시민 고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률, 또 2008년 12월 19일부의 2009년도 세제개정법에 의해 기부공익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으로 개정되었던 것에 의해 클럽, 기부자, 명예직원의 세제상 취급이 개선되고, 세법이 이 영역에서 매우 간소화되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들 수 있다.

2) 경제활동이란 소득 혹은 다른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고, 또 자산관리의 틀을 넘어서 독립된 지속적 활동으로 있다. 이익을 얻는다는 목적은 필요치 않다(조세통칙법 제14조). 경제활동은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받는 경우(목적사업) 혹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의 어느 하나로 있다.

1. 공익·기부에 관한 법률로 있는, 촉진하는 것에 어울리는 목적을 더욱 정확히 조정하고, 통일한다.
2. 예전 소득총액의 5% 또는 10%로 있었던 기부공제의 최고한도를 통일하고, 일률 20%로 인상하고, 기업으로부터의 기부를 대상으로 하였던 별도의 한도액을 인상하고, 총 매상고(賣上高)와 1월에서 12월까지의 1년간에 소비하였던 임금·급여 합계액의 0.2%에서 0.4%로 한다.
3. 기부금을 기한 없이 이월하기 때문에, 거액 기부의 기한부 이월과 반복, 재단법인당의 기부를 대상으로 하였던 부가적 최고액을 폐지한다.
4. 재단법인이 10년이내에 행하는 자본부여(자금의 기부)의 최고액을, 설립 해에 관계없이 30만7,000 유로에서 100만 유로로 인상한다.
5. 기부 설명서가 부정확하게 있고, 기부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던 경우의 손해보상액을, 기부되었던 액의 40%에서 30%로 인하한다. 더욱이 기부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사람의) 순번을 삽입한다. 이 경우, 기부금의 수령자를 위해서 행동하는(법인이 아닌) 자연인³⁾의 순번은 뒤로 된다. 책임을 지는 순번이 앞에 있는 것은 기부금의 수령자로 있다.
6. 공익법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과세 한도액, 스포츠 활동을 위한 목적사업의 한도액, 매상세(賣上稅)를 합산하는 경우의 매상 한도액을 각각 3만678 유로에서 3만5,000 유로로 인상한다.
7. 이른바 운동지도자의 공제액을 연간으로 1,848 유로에서 2,100 유로로 인상한다.
8. 공법단체 혹은 공익시설의 업무 또는 위탁을 받아 세제(稅制)상 우대되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개정되었던 세금 공제액, 연간 500 유로를 도입한다.
9. 법·관리의 간소화에 의해서 관료기구를 축소한다. 특히, 이전은 기부 1건당 100 유로까지로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대신해 기부 1건당 200 유로까지의 공익시설에의 기부금에 관해서(현금 지불의 증명자료, 금융기관의 기장 증명, 소득세 실시 조례 제50조 2항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였던 기부금 수령자의 증명자료에 의해서) 그 증명을 간소하게 한다.

(3) 법인세·영업세(Körperschaft- und Gewerbesteuer)

공익적 스포츠클럽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 영업세를 면제된다.

법인세, 영업세는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제활동의 소득이 매상세(賣上稅)도 포함해

3) 자연인이란 법률 용어로 「인간」인 것을 가리킨다. 법인(법률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단체)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으로 있다.

서 총액으로 연간 3만5,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익적 클럽에게는 징수되지 않는다(과세 한도액-조세통칙법 제64조 3항). 소득이 높게 되면 클럽은 과세대상의 경제활동으로 생기는 이익에 의해 법인세,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로 5,000 유로, 영업세로 5,000 유로의 공제액이 차감된다.

자산관리로 생기는 수익은 공익적 클럽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떤 조건하에서는 스폰서 소득도 면세로 된다.

(4) 매상세(Umsatzsteuer)

공익적 스포츠클럽이 보수와 교환으로 납품 혹은 그 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매상(賣上) 세법의 취지로는 사업주로 되고, 기본적으로는 매상세(賣上稅)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클럽은 매상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받고 있다.

소기업 규정의 적용, 공제 가능한 매상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부담 경감, 학술적 혹은 교육적 활동에 관해서 매상세 면제는 어떤 조건하에서는 이 우대조치에 속하는 것으로 있다. 학술적 혹은 교육적 활동이라는 것은 특히 스포츠 수업(교실)인 것으로 있고, 참가 요금(예를 들면 경기 참가비)이 보수로 되는 듯한 스포츠 활동의 실시, 육성할만하다고 간주되었던 스포츠클럽의 청소년부문에 의한 청소년 보호의 범위에서의 업무인 것으로 있다. 목적사업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과세 대상의 업무에는 기본적으로 7% 인하된 매상 세액이 적용된다.

(5) 스포츠클럽에의 기부

스포츠클럽에의 기부는 일정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 관해서 세금 공제가 가능하게 있다. 스포츠클럽의 회비는 우대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다.

(6) 부업으로서 운동지도자에 관계되는 세금

운동지도자는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의 제3조 26항에는 특히 운동지도자, 코치, 교육자, 주선 역할로서의 부업적인 일에 의해서 생기는 소득, 혹은 공익적 범위에서 동등의 부업적인 일에 의한 소득은 연간 총액 2,100 유로까지 면세로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

4. 스포츠 기본계획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에서 대중 스포츠에 관한 이른바 스포츠 시책을 열거하게 되면 독일스포츠연맹(DSB)에 의해 1959년에 제창(提唱)되었던 스포츠의 「제2의 길」과 1960년에 독일올림픽협회에 의해서 제창되고, 그 후 눈부신 전개를 보았던 「Goldener Plan」 및 1970년에 시작하여 정열적으로 추진되어 왔었던 「트림운동(Trimm Aktion)」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있을 것이다. 즉, 정부(관)와 스포츠단체(민)는 자동차의 양 바퀴와 같이 서로 제휴해서 스포츠 정책을 수행해 간다고 하는 소위 「파트너쉽」의 원칙하에 「제2의 길」은 연령·성·직업 및 능력에 따른 스포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활동계획으로 있고, 2번째의 「Goldener Plan」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1956년에 공표되었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기본 구상을 토대로 하였던 장대한 시설 건설계획의 보고로 있고, 3번째의 「트림운동(Trimm Aktion)」은 앞의 2개의 계획을 토대로,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포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작용하였던 소위 독일스포츠연맹에 의한 「국민스포츠운동」으로 있었다.

독일에서는 대중스포츠 축진의 한편으로, 동경올림픽하계대회 직후의 1965년부터 세계의 스포츠계와 나란하게 가기 위해서 선수의 강화에 관해서 거국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방침이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독일 민주공화국에 대한 독일의 경기력 저하도 관련하고 있다. 독일과 독일민주공화국은 1956년부터 1964년까지 양국(동독과 서독)에서 선수선발 후, 통일 독일 팀을 결성하여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었으나, 1964년의 동경올림픽하계대회의 통일 독일 팀으로, 독일은 독일민주공화국보다 많은 선수를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있다. 그리고 1968년에 독

일스포츠연맹의 안에 「경기력향상연방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제까지 주(州)마다로 위임되어 있었던 선수강화책, 계획, 입안, 제안이 본격적으로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되도록 하게 되었다. 하지만, 1972년에 독일에서 개최되었던 뮌헨올림픽 하계대회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이 각 종목에서 독일을 압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은 독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되었다. 그 때문에 여론은 이전보다 한층 더 「드림으로는 올림픽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한 풍조로 되고, 독일의 스포츠계는 이제까지의 대중스포츠의 촉진과 동시에 다시 경기스포츠의 촉진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었다.

1977년에는 「최고 경기에 대한 기본선언」이 채택되고, 최고 경기 스포츠 촉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 1983년에는 1977년에 채택되었던 기본선언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독일스포츠연맹과 독일올림픽위원회에 의한 합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합동위원회에서는 경기력향상 위원회, 경기선수, 코치, 스포츠 의사 등에 의해서 현재 상황 분석이 이루어지고, 1983년 말에 새롭게 「최고 경기 스포츠에 대한 기본선언」이 동 연맹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1977년의 선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에 의해서 경기 스포츠의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있었다.

1985년 6월에 개최되었던 동 연맹이사회에서는 각 경기연맹 및 주(州)스포츠연맹과의 「경기력 향상 위탁사업」의 설명에서 특히 이후의 방향성으로서 「개별의 스포츠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의 실시」가 강조되었다. 이 정신은 동 연맹이 직접 관계를 가진 해당 국립연구기관, 독일올림픽위원회, 독일스포츠원조재단 등과 교섭하는 경우에서도 바로 계승되고, 그것에 동반된 조치가 강구되었다. 또한, 당시의 연방 내무장관이 이후 한층 스포츠를 촉진하는 것을 약속하였던 「스포츠에의 노력」은 모든 스포츠 관계자에 의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환영하였고,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후 예산의 취급에 관해서는 각 경기연맹과 주(州)스포츠연맹과 지역기관에 의해서 운영해 가는 것이 약속되었다.

1) 생활스포츠 진흥 시책

(1) 스포츠 참가 촉진 시책

① 골든 플랜(Goldener Plan)의 계속

독일의 「제2의 길(Zweiter Weg)」은 1959년 독일스포츠연맹(DSB)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스포츠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필요성 및 성·연령·능력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으로 있다. 「제1의 길」이 챔피언을 지향하는 엘리트 선수의 것으로 있다고 한다면 「제2의 길」은 스포츠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시민 및 어린 아이들, 주부, 고령자, 신체장애자에 대한 기회 제공으로 있었다.

한편, 「Goldener Plan」은 1960년에 민간단체로 있는 독일올림픽협회가 연방정부, 연방의회, 주정부의회, 자치단체의회에 대하여 행하였던 지역사회에서 「보건·유희·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시설」 건설계획의 권고로 있다. 그 골자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장, 운동광장, 체육관,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 등 필요하게 되는 시설 수를, 지역의 인구 규모에 근거해서 1인당의 기준치(면적)와 표준 규모를 제시하고, 더욱이 수요 예측 조사에 의해 현재 어떤 시설이 각 자치단체, 주(州)에 어느 정도 부족하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기준치를 목표로 한 수치에 이르기까지의 시설 건설을 15개년에 걸쳐 행한다는 장대한 계획으로 있었다.

이 건설 자금의 부담은 연방정부가 10분의 2, 주정부가 10분의 5, 자치단체가 10분의 2의 비율로 있었다. 「Goldener Plan」에 의해서 1975년까지의 15년간에 투자되었던 시설 정비비는 약 173억8,400만 마르크로 된다고 되어 있다.

독일 재통일 후, 구 독일민주공화국의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 지역의 「Goldener Plan」으로서 「Goldener Plan Ost」가 1992년 독일스포츠연맹총회에서 채택되고, 15년에 걸쳐 동부 지역에서 늦어지고 있는 일상 권역의 스포츠 시설 정비를 진행하는 방침이 수립되었다.

1976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는 이른바 「제2차 Goldener Plan」의 시기에 해당, 중핵시설의 시설부족에 대한 조정적 정비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기준의 이루어진 하였으나 국가적인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 상황의 변화

(다양화, 국제화, 정보화 등)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던 2000년부터 새로운 스포츠 시설 건설계획으로 있는 「Goldener Plan」이 시작되었다. 이 「Goldener Plan」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시설 정비가 가능한 지침을 되어져 있다. 이것에 의해 전국 일률적인 시설의 양적 증축을 목표로 하였던 「Goldener Plan」에서 다양한 요구 및 환경에 대응한 종합적인 지역·도시 계획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② 트림운동(Trimm Aktion)

독일스포츠연맹이 「제2의 길」의 연장선상에서 트림운동을 계승하였던 것은 1970년 무렵으로 있다. 트림운동이 「제2의 길」을 위시로 하는 그때까지의 국민 스포츠 운동과 다른 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작용한다는 수단, 방법을 전개하고, 전략적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있다. 즉, 이제까지 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 및 지도자가 없더라도 또 스포츠클럽에 소속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의 친숙한 장으로, 가지각색인 신체활동을 스스로 진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의 수단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있다.

독일스포츠연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일 최대의 광고 대리업자 「20세기사(世紀社)」에 캠페인 활동의 모두를 위탁하고, 마치 신제품을 홍보(promote)하는 듯한 형태로, 트림운동의 표어(slogan) 및 방침, 전략을 결정하고, TV 및 신문 등의 대중매체(mass media)를 모두 활동해서 철저한 PR전략을 전개하였다. 캠페인 활동과 함께 여러 스포츠의 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한 팸플릿(pamphlet)의 무료 배포, 트림상의 제정, 트림을 위한 레코드 제작, 「Trimm Trab」로 칭하는 조깅의 지도와 코스의 설치, 트림대회의 개최, 공원 등에 설정하였던 「땀을 흘리는 코스」 「산림의 트림 코스」 및 자동차 전용 도로(Autobahn)의 주차장(parking area)에 마련한 「Trimm Station」의 설치 등, 여러 갈래에 걸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가정 및 공동체(communitiy)의 그룹 참가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왔다.

트림운동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추가해서 민간기업이 스폰서로서 협

력해 왔던 것도 간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Volkswagen Audi사 및 Adidas사 등의 독일 주요한 기업 120개사의 협력을 트림운동의 시작 때에 얻어냈다. 기업의 협력, 원조는 금전 기부에 의한 경우는 적고, 대부분이 필요한 자료, 물품, 설비 등을 스폰서 자신이 제작하여 제공한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스포츠의 보급을 위한 국민운동에의 원조 및 기부에는 국가에 의한 면세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현재는 「Trimm 운동」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스포츠」의 보급 계발 캠페인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2의 길」 및 「Trimm 운동」의 이념을 계승하였던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③ 스포츠 배지 테스트(Deutsches Sportabzeichen)

독일 국민의 체력수준 및 운동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스포츠 배지 테스트」의 역사는 옛날 스웨덴의 「스포츠 테스트(Idrotts Marke)」가 그 근원으로 있다고 되어져 있다.

1993년부터 일상생활의 친숙한 장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배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거점으로 한 「스포츠 배지 테스트의 모임(Sportabzeichen-Traff)」가 도입되고 있다. 이 모임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정된 스포츠 시설(스포츠클럽 등)에서 소정의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스포츠의 기능을 높이는 「스포츠 배지 테스트」를 받는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있다.

「스포츠 배지 테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영과 도약, 달리기, 근력, 지구력의 5개 종목에 관해서 연령별, 성별로 목표 기준치가 설정되어져 있고, 이 기준치에 도달하게 되면 금, 은, 동의 배지가 수여된다.

① 아동 스포츠 배지 테스트

- ◆ 동 배지: 8-10세 대상
- ◆ 은 배지: 11세, 12세 대상
- ◆ 금 배지: 동, 은 배지를 취득하고, 게다가 다시 2회 테스트에 합격한 자

② 청소년 스포츠 배지

- ◆ 동 배지: 13세, 14세 대상
- ◆ 은 테두리 동 배지: 15세, 16세 대상
- ◆ 은 배지: 17세, 18세 대상
- ◆ 금 배지: 동, 은 배지를 취득하고, 게다가 2회 테스트에 합격한 자

③ 성인 스포츠 배지 테스트

- ◆ 동 배지: 18-29세까지 대상
- ◆ 은 배지: 30-39세까지 대상
- ◆ 금 배지: 40세이상 대상, 금 배지에는 5세마다 개별의 등급이 마련되어져 있다.

성인의 금 배지에는 5회, 10회, 15회, 20회 이상으로 검정 횟수에 따라 「합격 횟수의 숫자 입력의 특별 표창」이 있다.

그룹 1: 수영 중심 그룹 2: 도약 중심 그룹 3: 달리기 중심
그룹 4: 근력 중심 그룹 5: 지구력 중심

그룹 1을 제외하고 다른 그룹에서는 복수의 종목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그룹의 가운데 1개 종목, 계 5개 종목을 원칙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합격해야 한다. 2008년의 스포츠 배지 테스트의 취득자는 100만 4,341명으로 있고, 10년간으로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④ 특별 조성 프로그램 「Goldener Plan Ost」

1992년 독일스포츠연맹(DSB) 총회에서 채택되었던 「Goldener Plan Ost」의 전개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나, 연방정부는 1999년 스포츠 시설 프로그램 「Goldener Plan Ost」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구 독일민주공화국에서의 새로운 5개 주(州) 및 동 베를린에서 대중 스포츠 시설 부족의 극복 내지 종래의 11개 주(州)와의 동화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있었다.

대중 스포츠 조성은 주(州) 및 자치단체의 우선과제로 있으며, 연방은 그 때문에

1999년부터 2009년까지에서 약 7,100만 유로를 각출하였다. 동부 여러 주(州) 및 동 베를린에서 특별 조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중 스포츠 조성을 위한 528개의 방책이 총액 4억 유로 이상을 가지고 실행되었다. 2009년에 특별 프로그램은 종료하였으나, 연방정부는 이 중지에도 의해서 중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다. 통지에 의해서 여러 주(州)는 2011년 말까지로, 별개의 협정으로 약 6억 유로를 최고 스포츠 및 대중 스포츠 시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있다.

(2) 어린 아이들의 스포츠 진흥에 관한 시책

① 종일제 학교에서 클럽과 연계한 스포츠 활동의 전개

반일제의 학교제도가 주류로 있었던 독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생의 학습도달도 조사(PISA)」에 의해서 분명하게 되었던 학력저하 문제를 받아들여 2000년 이후 1주에 최저 3일, 각각 최저 7시 한도의 오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일제 학교」의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종일제 학교의 대부분은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에의 참가 의무 없이(즉 수업이 실시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유 참가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예를 들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州)에서는 2010년에 초등학교 전체의 86%가 자유 참가형의 종일제 학교로 되어져 있다). 자유 참가형의 종일제 학교는 오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 학교 밖 조직과의 연계·협력에 근거해서 전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스포츠는 가장 빈번하게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 가지로 있고, 여기에는 지도자 파견을 위시로 하는 클럽에 의한 적극적인 협력이 보인다. 예를 들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州)의 조사에 의하면 자유 참가형의 종일제 초등학교의 51.7%에서 실질적으로 클럽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종일제 학교가 보급하기 시작하였던 당초는 종일제 학교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클럽에서 스포츠 활동의 수요가 저하하고, 그 시설 이용도 제한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 클럽 측의 큰 경계감이 있었다. 그렇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여러 경기단체의 시책에 의해서 그러한 위기감이 급속하게 희석되어 가고, 클럽은 종일제 학교의 스포츠 프로그램의 전

개에 협력하는 경우로, 청소년회원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영재의 발굴·육성, 스포츠 시설·설비의 개선 등이라고 한 클럽에 있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얻는 것으로 되었다. 총괄조직으로 있는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도 현재 클럽에 의한 종일제 학교에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종일제 학교에서 클럽과 연계한 스포츠 활동의 전개가 클럽 스포츠의 한층 더 발전을 촉진한다는 의식이 있다.

(3) 학교체육 시책

독일의 학교체육 방향을 알린 전국 규모의 권고·행동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학교체육 촉진권고(1956년)
- 학교스포츠 촉진권고(1972)
- 제2차 학교스포츠 촉진권고(1985년)
- 학교스포츠에 있어 건강교육 분석과 요강(1986년)
- 독일스포츠연맹(DSB) 지침(2000년)

독일의 학교체육에 해당하는 단어는 「Schulsport」, 교과로서의 체육은 「Sport」라고 부르고, 1970년 초에 「스포츠과(Fach Sport)」가 학교교육 교과목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독일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은 주(州) 단위로 공포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 공포되었던 학습지도요령에는 이제까지의 스포츠 종목의 실천 중시의 내용으로, 건강 및 환경, 협조 등의 학습영역을 설정한 속에서 스포츠 종목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독일의 스포츠과 수업 시수는 유럽의 가운데서는 많은 편은 아니다. 더욱이 주 3시간의 스포츠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있는 주(州)는 감소하고 있고, 제2차 학교스포츠 촉진권고(1985) 이후의 15년간에서 4분 1의 수업이 시간 할애에서 삭감해 버리고 있다고 보고되어져 있다.

2) 국제경기력 향상 시책

(1) 경기력 향상 시책

1990년의 독일 재통일 이후, 올림픽대회에 참가하였던 독일선수에서는 일정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구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이적인 국제경기력을 지탱하였던 아동·청소년스포츠학교 출신의 선수가 많다고 하는 것으로 있다. 이것은 특히 독일민주공화국의 유산을 계속 이어 받았던 1990년대에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재통일 후의 아동·청소년 스포츠학교의 개혁·재편을 단서로 해서 만들어진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 인정의 엘리트 스포츠학교 출신 선수의 비율이, 바뀌어 말해 최근의 올림픽대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에 의해서 발굴되어 입학하였던 주로 제5학년에서 10학년(거의 10세에서 15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영재가 미래의 최고 운동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① 「엘리트 스포츠학교」에서의 스포츠 영재의 육성

엘리트 스포츠학교란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이 주로 10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영재에게 학교교육과 기숙사에서 거주를 보장하면서 강화종목에 관한 수준이 높고 뛰어난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던 교육시서로 있다(인정 제도의 시작은 1997년). 현재 독일에는 39개의 엘리트 스포츠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제각기 지역성 및 전통이 반영되었던 강화 종목이 설정되어져 있다. 각 엘리트 스포츠학교는 하계 및 동계올림픽대회가 종료할 때마다, 해당하는 강화종목에 따라 인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약 11,300명의 스포츠 영재가 엘리트 스포츠학교에서 육성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학교의 운영 형태는 스포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소위 「스포츠 강화 학교」의 가운데에서 트레이닝, 학교교육, 기숙사에서 거주의 3가지 기능을 집중시키는 「단일 학교형」과 올림픽지원 거점으로 트레이닝과 기숙사에서 거주의 2가지 기능을, 또한 그 근교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교육의 기능을 담당케 하는 「포괄 시설형」으로 크게 구별된다. 전자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아동·청소년 스포츠

학교의 후속 시설로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동부 독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보인다. 근교에 위치하는 경기력이 높은 클럽과의 연계 하에서 오전의 수업시간 내와 오후의 방과 후에 트레이닝을 실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있다. 후자는 기본적으로는 재통일 전의 독일 전료제(全寮制; 학생이 모두 기숙사에 거주하게 하는 제도) 스포츠학교의 운영형태를 계속하고 있고, 따라서 서부 독일지역에서 많다. 스포츠 영재는 올림픽지원 거점에 있어 항상 최고 수준의 코치에 의한 지도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양자 모두 학교교육을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중시하고 있어, 이것에 의해서 학업을 우선하여 스포츠 경력(sports career)을 단념하는 스포츠 영재가 이전보다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올림픽선수에서 차지하는 엘리트 스포츠학교 출신자의 비율은 높고, 예를 들면 2008년의 북경올림픽 하계대회에서는 29%, 또 2010년의 밴쿠버올림픽 동계대회에서는 51.3%에 이르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엘리트 스포츠학교가 독일의 경기 스포츠 시스템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육성 시설로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② 챔피언 스포츠를 위한 파트너 대학

1999년에는 「챔피언 스포츠를 위한 파트너 대학」 제도도 시작되고, 현재 약 90개의 파트너 대학에 재적하는 약 1,200명의 학생 운동선수가 트레이닝에 의해서 생기는 학업부담의 보상지원을 받으면서 스포츠와 고등교육 수료의 이중 경력(double career)의 현실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경기스포츠 프로그램

최근의 경기스포츠 조성에 관한 연방 내무부의 지침으로서는 2005년 9월의 경기 스포츠 프로그램(Programm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zur Förderung des Leistungssports sowie sonstiger zentraler Einrichtungen, Projekte und Maßnahmen des Sports auf nationaler und internationaler Ebene mit Rahmenrichtlinien)이 있다.

④ 이중 경력(Double Career)

최고 스포츠에서 엄격성을 늘리는 국제적 경쟁으로 있고, 독일에서도 선수로서의 경력과 직업 인생 서계를 양립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져 있다. 2001년에 시작하였던 「이중 경력」으로 있고, 독일스포츠원조재단은 후속 영재 및 최고 스포츠선수의 스포츠 경력과 직업 경력과의 결합을 원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독일스포츠원조재단이 중소기업에서 활동하는 스포츠선수의 휴업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있다. 시작 이후, 8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350명 이상의 스포츠선수가 전문훈련을 받는다든지, 고용된다든지 하고 있다.

(2) 스포츠지도자 관련 시책

①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및 자격인정 제도

독일의 지도자 자격인정에 관해서는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원(volunteer)에서 직업으로서의 지도자까지 광범위에 걸친 양성 프로그램 및 자격인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은 스포츠 지도자의 종류와 지도 내용으로 있다.

- ① C급 트레이너(C-Trainer/innen): 특정의 종목에 관해서 기초적 지도, 경기력 향상으로 이끈다.
- ② B급 트레이너(B-Trainer/innen): 특정의 종목에 관해서 전문적 지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한 선수의 발굴.
- ③ A급 트레이너(A-Trainer/innen): 특정의 종목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경기력 향상의 지도를 행하고, 각 개인의 수준이 높고 뛰어난 기술 지도를 행한다.
- ④ Diplom-Trainer/innen: 국제급 선수의 트레이닝의 계획, 실시, 평가, 기술지도자 및 코치에 대한 지도, 조언을 행한다.
- ⑤ 전문지도자(Fachübungsleiter/innen): 특정의 종목에 관해서 기초적 지도를 행하고, 생활스포츠 활동의 추진을 도모한다. 각 스포츠 종목에서 초보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⑥ 지도자(Übungsleiter/innen): 스포츠 종목 전반의 기초적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스포츠의 추진을 도모한다.
- ⑦ 예방·재활스포츠 지도자(Prävention-Rehabilitationsleiter/innen): 장애인 등의 특별한 트레이닝 및 연습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 ⑧ 청소년 지도자(Jugendleiter/innen): 생활스포츠에서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작성과 실시 및 여가교육, 청소년 시책에 관해서 스포츠 이외의 이벤트와 프로그램 작성 및 그런 실시를 행한다.
- ⑨ 스포츠 이학요법사: 최고 운동선수에 대해서 치료를 시행한다든지, 해외원정, 경기대회에 수행하고, 치료를 담당한다.
- ⑩ 조직 매니저(Organisationsleiter/innen): 스포츠클럽의 운영관리 업무에 종사한다.
- ⑪ 조직 매니저: (전문양성 1-4) 전문 양성
 - 1. 스포츠클럽에서 지도와 법률의 업무 전문양성
 - 2. 스포츠클럽에서 기획과 운영 전문양성
 - 3. 스포츠클럽에서 재정, 세금, 보험전문 양성
 - 4. 스포츠클럽에서 홍보활동, 선전 및 마케팅
- ⑫ 조직 매니저 A(A-Organisationsleiter/innen):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관계 단체 책임자로서 총괄, 지도, 운영관리를 행한다.
- ⑬ 스포츠 경제전문 면허장(diploma): 조직 매니저의 최상급 자격으로 있고, 사회과학적 분야의 지도적 입장에 서는 인재로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한다.

지도자의 인정서는 교부의 날짜로 발효하고, 유효기간의 마지막 해의 12월 31일로 실효한다.

이런 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각종 강습회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州)

스포츠연맹과 주(州)전문(경기)연맹은 협력하고, 스포츠 지도자 양성기관을 정비하고 있다. 「스포츠학교(Sportschule)」로 알려져 있는 이 전문시설은 각 주(州)에 대략 1개 학교(여러 개 학교를 가진 주(州)도 있다)를 마련하고, 매우 상세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욱이 숙박연수 시설 등을 지역에 여러 개 확보하고 있다. 대상이 주로 사회인을 위해서 수강자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배려에 애쓰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① 4년간 유효 인정증: C급 트레이너, 전문지도자, 지도자, 청소년지도자, 조직 매니저, 조직 매니저 A, 예방·재활스포츠지도자, 전문양성을 받았던 조직 매니저, 스포츠 이학요법사
- ② 3년간 유효 인정증: B급 트레이너
- ③ 2년 유효 인정증: A급 트레이너

(3) 스포츠 시설 정비, 강화거점 등 계획

① 지원 거점 시스템

독일에는 정점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트레이닝센터는 없으나, 그 기능을 각 지역의 스포츠클럽으로 분산하고, 경기연맹의 강화거점으로 발전시켜 막대한 성과를 거두어 왔던 것이 「지원 거점 시스템」으로 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국가트레이닝센터(NTC) 및 강화 거점 시설」에서 소개한다.

(4) 국제스포츠대회, 국제스포츠단체의 유치에 관한 시책

독일은 축구 FIFA 월드컵(2006년), 하키남자세계선수권(2006년), 승마스포츠세계선수권(2006년), 핸드볼세계선수권(2007년), 육상세계선수권(2009년) 등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 등에 적극적으로 있다. 그것은 이런 개최가 각각의 스포츠 종목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방정부의 인식 등에 근거하고 있다. 게다가 스포츠의 큰 행사 개최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현재의 중심적 관심사의 한 가지는 2018년 올림픽 동계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에 뮌헨의 입후보로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국제적위원회에서의 독일스포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진력하

고 있다. 현재, 독일의 11개 국제적 사무총장이 연방 내무부의 조성금을 이용하고 있다.

(5)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에 관한 시책 및 법령

①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의 기본방침

최근 스포츠 조직·단체의 거버넌스에 관해서 종종 논의되고 있으나,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은 2008년에 연맹의 기본방침(Richtlinien der Verbandsführung des Deutschen Olympischen Sportbundes-Corporate Governance-Codex des DOSB)을 총회에서 결의하고 있다. 이 전문에 의하면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3) 스포츠의 보호관련 시책

(1) 도핑에 관한 시책

1999년에 설립하였던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도핑 박멸의 흐름 속에서 독일은 철저한 도핑의 박멸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들고, 청결하고 조작이 없는 스포츠를 연방, 주(州), 자치단체에 의한 스포츠 조성의 전제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WADA, 독일 안티도핑기구, 국내·국제수준에서 도핑 박멸에 관계되는 자주적인 스포츠 여러 단체를 원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여러 법률의 속에 도핑의 박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약사법에서는 이미 1998년 이후 도핑약품의 다른 사람에게의 「처방」 「사용」 및 「유통」은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트레이너, 코치, 의사, 의료 보조자가 도핑 위반에 의해서 처벌되는 법적 기초가 만들어져 있었다.

현재, 독일에서 도핑 박멸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독일안티도핑기구(Nationale Anti-Doping Agentur Deutschland: NADA)로 있다. NADA는 2002년에 설립되어 독립된 사법상의 단체로 있고, 2003년 1월부터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활동

하고 있다. NADA에 의한 가장 새로운 규정은 2006년의 것을 수정한 2009년의 것으로 있다(NADA CODE 2009).

연방정부는 국제수준에서는 기회동권의 관심에 있어 WADA 규정의 수용과 이행, 국내수준에서는 NADA 규정의 즉시 이행 및 감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2) 스포츠 분쟁 해결 제도

스포츠 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는 IOC에 의해서 1984년에 설립되었다. 스포츠에서 일어난 분쟁을 재판소가 아니라 스포츠계의 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재기구로 있다. 1994년에 IOC로부터 독립하였다.

독일에서 이와 같은 스포츠의 중재에 해당하는 기관이 1992년에 설립되었던 독일중재협회(Deutsche Institution für Schiedsgerichtsbarkeit)로, 현재 850명 이상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스포츠 여러 연맹·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고, 독일의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의 것은 2008년 1월의 규칙으로 있다(DIS-SPORT-SCHIEDSGERICHTSORDNUNG).

(3) 윤리적·도덕적 보호·성희롱(sexual harassment)·폭력방지 등에 관한 시책

연방정부에서의 현재 계획 및 장래 계획에서는 아동·청소년 스포츠에서 성적 폭력의 예방, 스포츠내·스포츠에 의한 폭력의 예방에 공헌하는 기관, 단체, 조치(initiative)의 원조, 스포츠에서 극우주의 박멸을 위한 계획의 수행 등이 명기되어져 있다. 또한,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도 2010년 3월에 이런 건에 관계되는 방침 설명서(POSITIONSPAPIER)(PRÄVENTION UND BEKÄMPFUNG VONSEXUALISierter GEWALT UND MISSBRAUCH AN KINDERN UND JUGENDLICHEN IM SPORT)를 출판하고 있다.

4) 스포츠산업 관련 시책

(1) 스포츠산업 정책 관련 시책 및 계획

스포츠 시설 건설은 독일 건설 투자의 약 1.1%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공헌하는 것, 스포츠 용품(스포츠웨어, 스포츠신발, 스포츠용구 등)의 수출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 스포츠 시설 및 클럽(체력센터를 포함하는)에서는 사회보험 의무가 있는 고용이 상당히 있는 것,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의 행사 및 경기에 관한 보도, 선전이 많이 되어져 있는 것 등으로 명백해진 것처럼, 스포츠의 경제적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독일에서도 다른 EU구성 국가에서도 한정된 범위에서 밖에 부하에 견딜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연방정부는 확실한 데이터를 토대로, 모든 경제 영역에서 스포츠 경제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전제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미디어에서 스포츠 관계의 광고, 스폰서, 보도의 부분을 조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5. 스포츠 관련 단체조직과 스포츠 정책의 관계

1) 국내의 스포츠 총괄단체

(1)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DOSB)

① 설립배경·특징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의 전신(前身)으로 있는 독일스포츠연맹(DSB)은 1950년 12월 10일 하노버(Hannover)에서 설립된 독일 최대의 스포츠조직으로 있고, 「독일의 체육·스포츠 여러 단체 및 스포츠기관의 자유로운 연합으로 있다」고 규약에 정하고,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여 정치적으로는 중립의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과제로서, 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모든 방책에 대한 협력, 가맹조직의 의지 통일, 국내외에서 독일스포츠 발전에 관한 포괄적인 문제의 해결 등을 내세우고, 구체적으로는 학교 및 대학의 체육·스포츠를 위시로 해서 경기스포츠 및 대중스포츠의 진흥 내지 스포츠과학의 진흥(과학적 연구의 체육·스포츠 분야에의 도입 등)을

중점사항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의사결정 기관은 연방의회 및 평의위원회로 있고, 집행기관은 간부 회의로 8 부문(재정 문제, 스포츠소년단, 여성스포츠, 대중스포츠, 경기스포츠, 과학과 교육, 지도자 양성, 법적·사회적 문제)에 걸쳐 과제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1990년의 동서 독일 통합에 있어서, 독일스포츠연맹은 독일민주공화국의 스포츠 총괄기관으로 있었던 독일체조·스포츠연합 산하의 스포츠 여러 조직·단체를 편입하였다.

한편, 독일올림픽위원회는 1949년 9월 본(Bonn)에서 창설되고, 1951년 5월 빈(Wien)에서 IOC에 의해서 승인되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는 가맹단체총회와 간부회의가 있었다. 긴밀한 인적교류 및 실질적인 공동 작업은 독일올림픽협회 및 독일스포츠원조재단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 동 위원회는 독일민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결합하였다.

2006년 5월 20일, 독일스포츠연맹(DSB)와 독일올림픽위원회는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합병하여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으로 되었다.

이 합병의 이유에 관해서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 규약의 전문에서는 「독일에서 조직화된 스포츠를, 하나의 총괄단체의 기본, 개인의 생활형성에 있어서 표출로서, 사회적 관계의 원천으로서 강화하고, 그 문화적, 사회적 및 정치적 중요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다고 되어져 있다.

규약의 일반 규정은 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명칭, 소재, 법 형식에 관한 것으로 있고,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은 등기사단, 그 소재는 프랑크푸르트 마인(Frankfurt Main)으로 정하고, 소재지의 사단(社團)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조는 목적과 권한에 관한 것으로 있고,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1.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은 그 과제의 범위 내에서 모든 현상 형태의 독일스포츠를 조성·조정하고, 연맹 및 전문을 초월한 사항으로, 그것을 사회, 국가 및 내외의 중심적 스포츠·그 외 여러 기관에 대하여 대표한다.
2.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은 IOC 및 올림픽현장에 위임되어 있는 것처럼, 국내 올림픽위원회의 모든 권한, 권리, 의무를 책무로 한다. 바꾸어 말해, 올림픽대회에서의 독일의 참가를 보장하고, 또 올림픽대회 개최를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를 결정한다.
3. 그 규약과 규칙에 준해서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은 그 구성원에 배려하는 것을 책무로 한다.

제3조는 과제에 관한 것으로 있고,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격발달에의 조성, 아동·청소년에의 조성(특히, 청소년의 획득), 학교에서 스포츠, 유희, 운동의 조성, 스포츠를 통하여 교육에의 조성, 자주성을 고려한 그 과제 범위 내에서 구성원에의 조성, 국내 수준에서 스포츠를 관할하는 여러 기관, EU, 국제적 범위 내의 파트너, 경제 및 그 외의 사회적 그룹과의 조정, 상응의 기관을 통한 올림픽근본 원리와 올림픽 교육의 촉진, 스포츠의 연맹 및 전문을 초월한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의 유지, 스포츠 과학, 스포츠의학 및 그 여러 기관에의 조성, 그 책무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그 견실한 분배, 장애인 스포츠의 조성, 스포츠 장 및 스포츠 공간에의 지속적으로 수요에 따른 조성, 환경, 자연, 경관의 원조와 보호 및 환경에 대응한 스포츠의 투입, 모든 조직, 위원회에서 남녀 동권(同權) 참가의 조성, 사회 및 공공의 의식에 있어서 포괄적인 스포츠 이해에의 조성과 강화.

제4조는 공익성에 관한 것으로 있고, 그 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은 조세통칙법(「세적(稅的) 우대 목적」의 장)의 의미에 있어 오로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그것은 사심이 없이 종사하고, 첫 번째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6조는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있고, 구성원을 올림픽종목의 경기연맹, 주(州)스포츠연맹, 올림픽종목 이외의 경기연맹, 특별한 과제를 맡은 스포츠연맹, 국제적인 관계가 없는 스포츠연맹, 독일IOC위원 및 개인구성원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서 그 기관은 구성원 총회와 간부회로 규정되고, 제13조에서 구성원 총회는 최고결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투표권을 지닌 조직의 대표자, 간부회의 구성원 및 개인 구성원과 심의권만을 지닌 그 외의 멤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간부회의 구성은 제16조로 회장, 경기스포츠의 부회장, 대중스포츠/스포츠 축진의 부회장, 경제와 재정의 부회장, 교육과 올림픽교육의 부회장, 여성과 남녀 동권(同權)의 부회장, 경기자의 대표, 독일의 IOC위원, 사무총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31조는 재정에 관한 것으로 있고, 그 1항에서는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은 회비, 공적사적 기부, 상품판매 이익, 그 외 업무로 출자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② 조직 구성

2010년 8월 현재, 16개의 주(州)스포츠연맹, 61개의 경기연맹(34개의 올림픽종목의 경기연맹과 27개의 올림픽종목이 아닌 경기연맹), 20개의 특별한 과제를 맡은 스포츠연맹, 15인의 개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개의 특별한 과제를 맡은 스포츠연맹의 가운데에서 회원 수가 많은 것은 독일 카톨릭계 스포츠연맹(DJK-Sportverband, 약 55만명), 독일 기업스포츠연맹(Deutscher Betriebssportverband, 약 29만명), 독일 경찰스포츠관리기관(Deutsche Polizei Sportkuratorium, 약 24만명)으로 있다.

③ 예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 최고 스포츠의 조성에 연방 예산에서는 8억4,000만 유로가 준비되었다. 국가예산이 긴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에서 절대로 필요로 하였던 금액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 큰 부분이 연방 내무부의 비용으로 있다. 이 기간에 있어 연방 내무부는 바꾸어 말해 DOSB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트레이너 급여의 증액, 트레이너 우편의 증대, 트레이너의 전문·지속교육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더욱이 최고 팀 간부의 트레이닝 및 경기방책이 확대되고, 최적의 트레이닝장이 정비되었다.

2) 그 외의 스포츠 조직

(1) (연방) 경기연맹(Bundesfachverband, Spitzenverband)

스포츠종목별의 연방 수준에서의 경기연맹으로 있고, 그 주된 임무는 해당종목 독일선수권의 개최를 비롯하여 유럽선수권 및 세계선수권(올림픽대회를 포함하는)의 대표 선발 및 독일스포츠조성단체의 실무대행 등으로 있다.

(2) 주(州)스포츠연맹(Landessportbund)

연방은 16개 주(州)로 이루어지며, 모든 주(州)에 주(州)스포츠연맹이 있고, 주(州)의 교육스포츠의 의지 대표, 체육지도자 및 주니어 지도자 내지 관리자의 양성, 지도자에 대한 보수 원조, 트레이닝 시설 건설 보조 등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3) 주(州)스포츠경기연맹(Landesfachverband)

(연방) 경기연맹 및 주(州)스포츠연맹의 아래에 위치하고, 그 구체적인 과제로서는 영재의 발굴, 육성 및 선별, 주(州)경기센터에서 강습회의 개최 등이 있다.

(4) 연방경기스포츠위원회(Bundesausschuß Leistungssport)

경기스포츠진흥 정책에 관한 조언 및 조정을 행하고, 경기연맹을 원조하는 것과 함께 올림픽참가자 선발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5) 경기스포츠 조성에 관한 협력체제

1968년 이후, 연방정부(내무부), 독일 스포츠연맹경기력향상위원회, 주정부(스포츠 관계 부), 주(州)경기연맹이라고 한 중앙과 지방의 조직 간에 의한 협력체제가 확립되었다. 협력체제는 연방정부와 동 경기력향상위원회와 중앙경기연맹을 거의 같은 라인으로 한 중앙에서 협력체제 뿐만 아니고 제각기 연방정부에는 주정부, 동 경기력향상위원회에는 주(州)경기력향상위원회, 중앙경기연맹에는 주(州)경기연맹이라고 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협력체제가 확립되었다. 또한, 지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로 주정부와 주(州)경기력향상위원회 및 주(州)경기연맹에 있어 주(州)에 의한 거의 같은 라인의 협력체제가 확립되었다. 즉, 중앙과 지방에서 제각가의 중(세로)과 횡(가로)의 조직간 협력의 관계가 구축하도록 되었다.

3) 스포츠 단체 또는 클럽

(1) 스포츠클럽

독일의 스포츠클럽은 학술단체 및 사교단체·자선단체와 마찬가지로, 독일 민법 제 21조(1896년 제정, 1900년 시행)에서 규정하는 「비경제적 사단(社團)」, 즉 경제적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결사(結社)로서 취급되고 있다. 그 점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등의 「경제적 사단(社團)」과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민법 제55조에서 59조에 의하면 비경제적 단체는 최소 7인의 설립회원이 존재하고, 목적, 명칭과 소재지, 이사회의 구성, 회원총회의 소집·의결의 방법, 회비, 회원의 가입탈퇴(入退會)에 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있게 되면 구 재판소의 사단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에 의해서 「등기 사단(Eingetragener Verein = e.V.)」으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 비경제적 사단(社團)은 등기 사단으로 되는 것에 의해서 각각의 회원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획득하고, 사회적 지위 및 신용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한다. 획득한 재산 및 권리는 클럽에 속하고, 그 책무가 회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시설 건설·개수(改修)를 위한 기채(起債; 빚냄) 및 신용의 취득이 용이하게 되고, 면세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특전 외, 자치단체 등과의 교섭에 있어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유효하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경제적 단체만이 사단 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해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등기를 끝낸 사단(社團)이 그 정관에 반해서 비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거래활동에 관계되는 것이 분명하게 될 때 관청에 의한 처분을 통해서 그 사단(社團)으로부터 권리능력이 박탈된다(권리능력의 박탈). 다만, 주된 목적이 중요하게 있는 것으로, 스포츠의 사단은 스포츠의 개최에 의해 해당 수입을 얻을 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지고 있는 장소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임대할 때에도 역시 비경제적인 사단(社團)으로 있다.

(2) 스포츠 단체 등

독일의 축구 리그로 있는 분데스리가(Bundesliga)에 참가하는 허가 클럽(분데스리가에서 경기하는 것을 독일축구연맹으로부터 허가받았던 클럽)의 대부분은 고액의 자산과 자금을 운영하고, 중간 규모의 영리기업과 같은 정도의 경제활동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법 형식은 9만을 초과하는 보통의 스포츠클럽과 마찬가지로 비경제적 사단(社團) 내지登記 사단(社團)으로 있다. 독일의 축구를 통괄하는 독일축구연맹도 그것이 리그전을 넘어서 비경제적인 주된 목적으로서 축구의 촉진에 기여하는 한, 실무적으로는 경제적인 사단(社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예(보루시아 도르트문트(Borussia Dortmund))가 나타내는 것처럼, 분데스리가의 운영을 위해서 주식회사의 법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의 클럽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상장을 달성한 클럽으로 되었다.

제3절 프랑스의 사례

1. 스포츠 담당 기관

1) 중앙조직

(1) 스포츠부(Ministère des Sports)

프랑스에서는 1963년에 청소년·스포츠처(Secrétariat d'Etat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1966년에 청소년·스포츠부(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가 설치되어 이후, 그 명칭 및 권한관할이 변화하긴 하지만, 상시적으로 스포츠를 담당하는 부 또는 처, 이른바 스포츠 담당부(Ministère chargé des sports)가 설치되어 있다. 스포츠담당 부는 독립해서 설치되는 경우와 국민교육부의 아래에 설치되는 경우, 수상(총리)의 아래에 설치되는 경우, 건강담당 부의 아래에 설치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스포츠담당 부는 스포츠만을 임무로 하는 경우 외, 청소년 또는 비영리사단활동에 관한 임무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2010년 11월의 프랑스정부 조직에 의하면 「스포츠부(Ministère des Sports)」는 15개의 부의 하나로서 독립해서 설치되어 있다. 그 때문에, 도핑대책 및 스포츠맨의 건강 보호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보건담당부」와의 연계가, 대학 및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는 「국민교육부」와의 연계가, 청소년 및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민중교육·비영리사단활동 담당부국」과의 연계가 도모되고 있다.

스포츠담당부의 조직은 중앙행정부국, 지방행정부국 및 공공시설법인으로 나뉘어져 있고, 2011년 1월 5일 현재, 스포츠부의 중앙행정부국은 스포츠국, 재무·법무·업무국 및 인사국의 3개 국, 관방과, 감사과, 방위고관, 홍보과로 구성되어져 있다.

(2) 스포츠국의 조직과 임무

① 스포츠국의 조직

스포츠담당부의 명칭은 역사적으로 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내부 부국(部局)으로 있는 스포츠국은 계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소장하고 있다. 스포츠국의 조직은 청소년·스포츠·비영리사단활동담당부의 중앙행정 국 및 준국(準局)의 조직에 관한 2005년 12월 30일의 부령(2010년 10월 11일 개정 버전)에 의하면 연맹활동·고수준 스포츠 준국(sous-direction de la vie fédérale et du sport de haut niveau), 지역활동 준국(sous-direction de l' action territoriale) 및 고용·연수교육 준국(sous-direction de l' emploi et des formations)의 3개의 준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청소년·스포츠·비영리사단활동담당부의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2005년 12월 30일의 법령(政令) 제2005-1795호(2010년 9월 6일 버전)에 의하면 스포츠국은 프랑스의 국내적 및 국제적인 민간의 스포츠에 관해서 관할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학교 및 대학의 스포츠에 관해서는 교육 및 고등교육담당부와 연계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② 스포츠국의 임무

스포츠국에는 다음의 임무가 있다.

- ① 높은 수준 스포츠에서 모두의 스포츠까지의 스포츠 정책의 책정 및 실시.
- ② 스포츠 정책의 평가.
- ③ 스포츠연맹 및 프로스포츠 실천에 있어서 관리 규칙의 책정.
- ④ 국제적인 스포츠관계의 발전에의 공헌 및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
- ⑤ 모든 시민의 스포츠 활동에의 접근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 및 그런 활동의 안전 확보 내지 스포츠의 사회적 교육적 기능을 가치부여 하는 활동의 실시.
- ⑥ 자연스포츠의 개발 감시.
- ⑦ 스포츠연맹의 후견적 감독 및 그런 공공 역무의 임무 준수 감시.
- ⑧ 스포츠에 관한 지방부국의 활동 추진과 조정 내지 스포츠담당 장관의 감독 하에서 설치된 공공시설법인에 의한 스포츠의 분야에서 활동에 관한 방침의 결정.
- ⑨ 건강담당 장관의 부국(部局)과 특히 연계해서, 스포츠에 있어서 건강정책의 책정(스포츠맨의 건강 보호, 프랑스 도핑대책 기구와의 연계, 도핑대책 및 도핑에 관한 국제적 활동에의 참가).
- ⑩ 스포츠에 관한 법령의 제정과 그 실시의 감시.
- ⑪ 청소년·민중교육·비영리사단활동국과 연계해서 애니메이션(추진), 스포츠 및 비영리사단활동의 발달을 위한 정책.
- ⑫ 지방 부국(部局) 및 스포츠담당 장관의 감독 하에서 설치된 공공 시설법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 및 연수교육을 위한 활동의 추진 및 조정.
- ⑬ 청소년·민중교육·비영리사단활동국과 연계해서 애니메이션(추진)과 스포츠의 실천을 발달시키기 위한서 필요한 전문직업의 지식과 자격의 분석 및 전국 수준에서 적용되는 지침의 결정.
- ⑭ 청소년·민중교육·비영리사단활동국과 연계해서 스포츠, 애니메이션(추진) 및 비영리사단활동의 분야에서 전문직업의 면허증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칙의 책정.
- ⑮ 전국 수준에서의 시험 조직 추진과 지식경험의 평가 절차 실시.
- ⑯ 교부된 여러 종류의 자격·면허증의 질 인증.
- ⑰ 외국의 자격·면허증의 동등성 확인.
- ⑱ 관할하는 공공 시설법인의 감독
- ⑲ 전문적 자문적인 법무.
- ⑳ 관할하는 분야에서 재판권에 대한 장관의 대리.
- ㉑ 관할하는 예산 및 재무

이상과 같이, 프랑스에서는 스포츠부 및 그 내부 부국(部局)으로 있는 스포츠국에 의해서 스포츠에 관련하는 시책이 종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3) 스포츠담당부의 인원 규모

스포츠담당부의 인원 규모에 관해서는 2008년의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데이터에 의하면(표 4-2), 청소년·스포츠 중앙행정 조직의 직원은 합계로 586명으로 있고, 풀타임의 정직원의 비율이 높고, 또 남성보다도 여성의 직원 쪽이 많다. 더욱이, 청소년·스포츠담당부의 지방 부국(部局) 직원은 합계로 1,696명, 국가 트레이닝센터 등의 국립 연수교육시설 및 스포츠연맹에 소속하는 고수준 스포츠의 지도 관리자 등을 포함하는 고등스포츠교육·고수준 스포츠관련의 직원이 3,537명, 민중교육·스포츠센터(CREPS)의 직원이 905명이다. 고수준 스포츠관련의 직원은 파트타임(part time) 및 비정규직의 비율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2. 프랑스의 스포츠담당부의 직원수(2008)

(명)

		남녀 합계		남성		여성	
		풀타임+파트타임	풀타임	풀타임+파트타임	풀타임	풀타임+파트타임	풀타임
모든 국가공무원	합계	2,922,362	2,472,484	1,376,858	1,282,577	1,545,504	1,189,907
	정직원	2,169,129	1,957,511	1,066,892	1,041,773	1,102,237	915,738
	비정직원	753,233	514,973	309,966	240,804	443,267	274,169
모든 부처	합계	2,105,233	1,872,694	1,032,234	998,206	1,073,440	874,488
	정직원	1,904,928	1,725,221	924,456	906,776	980,472	818,445
	비정직원	200,746	147,473	107,778	91,430	92,968	56,043
청소년스포츠 중앙행정 조직	합계	586	531	233	227	353	304
	정직원	489	444	190	187	299	257
	비정직원	97	87	43	40	54	47
청소년스포츠 담당부 지방 부국	합계	1,696	1,349	534	486	1,162	863
	정직원	1,536	1,254	480	458	1,056	796
	비정직원	160	95	54	28	106	67
고등 스포츠 교육 고수준 스포츠	합계	3,537	2,932	2,721	2,304	816	628
	정직원	2,745	2,634	2,122	2,083	623	551
	비정직원	792	298	599	221	193	77
민중교육·스포츠센터 (CREPS)	합계	905	833	494	480	411	353
	정직원	827	775	455	449	372	326
	비정직원	78	58	39	31	39	27

출전: Insee, Fichiers de paie agents de l' Etat au 31 décembre 2008.

2) 지방조직

프랑스의 지방행정구획은 주(région), 광역자치단체(département), 기초자치단체(commune)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여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광역연합체도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공공단체 개혁에 관한 법률(2010년 12월 제2010-1563호)에 의해서 도시권에서 대도시(métropol;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역연합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지방분권 개혁 및 중앙지방정부관계의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고, 특히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에 의해 주(州) 수준과 광역자치단체 수준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해지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 스포츠담당부의 지방 부국

(部局)조직도 2010년에 조직 개편되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각 지방공공단체에는 각각 스포츠관련의 담당 부국(部局)이 설치되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스포츠담당과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

프랑스의 중앙부처에는 지방의 출장지 기관이 있어 지방행정 구획과 대응해서 설치되고 있다. 스포츠담당부의 주(州)수준 지방 부국(部局)에는 법령(政令)(2009년 12월 제2009-1540호)에 근거, 22개의 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주국(directions régionales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cohésion sociale; DRJSCS)가 있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부처간광역자치단체국(directions départementales interministérielles: DDI)에 관한 법령(2009년 12월 제2009-1484호)에 근거, 스포츠정책을 담당하는 부국으로서 대도시에 설치되는 50개의 사회통합광역자치단체국(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cohésion sociale: DDCS), 또한 인구 40만 명 이하의 광역자치단체 대도시에 설치되는 46개의 사회통합·인구보호광역자치단체국(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a protection de la population: DDCSPP)가 있다. 더욱이 해외 광역자치단체에는 4개의 청소년·스포츠·광역자치단체국(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DDJS)(2011년에 DRJSCS을 신설)이 있다.

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주국은 스포츠담당부의 스포츠에 관한 권한관할에 근거해서 다음의 관련하는 시책을 선도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행한다.

- ① 스포츠 실천의 접근
- ② 고수준 스포츠 및 프로 스포츠
- ③ 신체활동 또는 스포츠 활동의 분야에서 연수교육 및 자격인정
- ④ 자연스포츠의 억제된 개발
- ⑤ 스포츠의(医)의 발달
- ⑥ 도핑의 예방 및 도핑물질의 부정거래 대책
- ⑦ 스포츠 시설의 조사와 계획
- ⑧ 스포츠에 있어서 무법적인 행동의 예방 및 폭력대책

또한, 사회통합광역자치단체국 및 사회통합·인구보호광역자치단체국은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 ①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촉진
- ②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시설, 그 활동을 행하는 교육자, 스포츠 실천의 안전 감독
- ③ 자연스포츠의 억제된 개발
- ④ 스포츠에 있어서 무법적인 행동의 예방 및 폭력대책

3) 그 외의 기관

스포츠부에는 중앙행정조직 및 그 외 지방 출장지기관 외에, 행정적 공공시설법인(établissement public administratif: EPA)이 설치되어 있어 스포츠 직업을 위한 연수교육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국립 스포츠·전문기술·경기력향상 학원

(Institut national du sport, de l' expertise et de la performance: INSEP)

국립 스포츠·전문기술·경기력향상 학원(Institut national du sport, de l' expertise et de la performance: INSEP)은 1975년에 국립 스포츠연구소와 체육·스포츠교육사범학교가 통합되어서 국립 스포츠·체육연구소(Institut national du sport et de l' éducation physique: INSEP)로서 설치되어 있었던 기관이 법령(2009년 11월 제 2009-1454호)에 의해서 조직 개편되었던 정부의 기관으로 있다. 법률상, 교육법전 제L.717-1조에서 정하는 특별고등교육기관(grandétablissement)로 있고, 대학과는 달리 과학, 문화, 전문직업 등에 관해서 특별한 교육기관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었던 공공시설법인으로 있다.

국립 스포츠·전문기술·경기력향상학원은 최고 수준 스포츠에 관련하는 지도자 양성 및 연수교육을 행하는 것과 함께, 프랑스의 스포츠 강화거점(pôleFrance)이 부설되어져 있고, 높은 수준의 스포츠맨을 모으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선수를 양성하는 국가트레이닝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동 학원의 안에는 스포츠생물의학·역학연구소(Institut de recherché biomédical et d' épidémiologie du sport: IRMES)와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준비부문(Préparation olympique et

paralympique: POP)이 병설되어 있다.

그 외, 국립 마술학교(École nationale d' équitaion), 국립 요트·수상스포츠학교(École nationale de voile et des sports nautiques) 및 국립 스키·등산학교(École nationale de ski et d' alpinisme)의 3개의 국립 학교가 있다.

(2) 민중교육·스포츠센터(Centres d' éducation populaire et de sport: CREPS)

민중교육·스포츠센터(CREPS)는 각 주(州)에 설치된 공공시설법인으로 있다. 임무는 주(州)수준에서의 스포츠 진흥, 높은 수준의 스포츠맨 트레이닝, 지방공공단체의 관계 관리(공무원)의 연수, 조사연구, 사회통합 등이 있다. 2004년 시점으로, 동 센터는 24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0년 1월 시점에서는 18개 시설로 되어져 있다. 이것은 몇 개의 센터를 폐지하는 정책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으로 있고, 예를 들면 프랑쉬 콩페(Franche-Comté)에 있는 민중교육·스포츠센터의 폐지를 수용, 동 시설에 부설되어 있었던 국립 노르딕스키센터가 국립 스키·등산학교로 통합되었던 예 등이 있다.

(3) 국내 자원 거점(pôles ressources nationaux: PRN)

스포츠담당부에 의한 스포츠 정책을 실시하고, 특히 모든 시민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보급하여 그 안전을 확보가 위해서 「국내 자원 거점」이라는 특별한 거점시설이 설치되어져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 국내 자원 거점은 민중교육·스포츠센터(CREPS)를 기반하고 있다. 국내 자원 거점으로는 생트레(Saintré)주의 민중교육·스포츠센터의 안에 있는 「스포츠와 장애」 거점,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Provence-Alpes-Côtes d'Azur)의 센터 안에 있는 「스포츠 교육 통합 시민권」 거점,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Provence-Alpes-Côtes d'Azur: PACA)의 안에 있는 「자연스포츠」 거점, 오베르뉴(Auvergne)의 센터 안에 있는 「스포츠와 건강」 거점이 있다.

(4) 국립 스포츠박물관(Musée National du Sport: MNS)

국립 스포츠박물관은 2006년 3월 2일에 제정되었던 법령에 의해서 행정적 공공 시설법인으로서 설립되었다. 국립 스포츠박물관은 2008년에 스포츠담당부의 청사에 개설되고, 약 300점의 전시를 행하고 있다.

2. 스포츠 관련 법

1) 스포츠법전

프랑스의 스포츠에 관한 법률의 역사는 오래됐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미 몇 개의 스포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로 되면 스포츠비영리단체, 리그, 연맹 및 단체의 활동에 관한 법령(ordonnance, 임시입법)(1945년 8월 8일 제정)과 학교 및 대학의 스포츠조직에 관한 법령(ordonnance, 임시입법)(1945년 10월 12일 제정)이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1948년의 산악가이드에 관한 법률, 1948년의 스키교육에 관한 법률, 1951년의 수영시설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1955년의 유도 및 유술의 교수 직업내지 이런 격투 스포츠의 교육을 맡고 있는 도장의 개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런 법률은 특히 위험성이 높은 스포츠 종목에 관해서 지도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자 자격을 국가면허로 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더욱이, 1963년에 체육 또는 스포츠 교육의 교육자 직업 및 해당 직업이 행할 수 있는 학교 또는 시설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위의 4가지 법률에서 정하는 스포츠 종목 이외의 스포츠 종목에 관해서도 지도자 자격을 국가면허로 하는 것이 정해졌다.

그리고 이런 법률을 통합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최초의 스포츠에 관한 기본법으로 있는 체육 및 스포츠의 발전에 관한 법률(1975년 10월 제75-988호)이 제정되고, 새롭게 신체적 및 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촉진에 관한 법률(1984년 7월 84-610호)이 제정되었다. 1984년의 스포츠 기본법은 제정 후도 개정이 반복되었다. 특히 2000년에 교육법전이 제정되면 1984년 법의 규정 가운데 체육·스포츠교육, 직업교육, 연수 등 교육에 관련하는 규정이 교육법전의 안에 규정되는 것으로 되었다.

다른 한편, 프랑스에서는 법령의 법전화 정책이 추진되어 법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2004년 12월 제2004-1366호) 제84조에 의해서 스포츠법전의 편찬이 정해졌다. 그리고, 이제까지 스포츠를 규율하는 주된 3개의 법률, 즉 ①공중위생법전의 도핑에 관한 법률, ②교육법전의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교과로서의 교육내지 교육시설에 관한 법률, ③수정이 반복되어 왔던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조직 및 촉진에 관한 법률(1984년 7월 16일 제정), 이른바 스포츠 기본법 등이 스포츠법전에 정리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스포츠법전의 법률 부에 관한 법령(ordonnance, 임시입법)이 2006년 5월 23일에 제정되었다.

스포츠법전의 법률 부는 제1편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조직, 제2편 스포츠의 중요성(acteurs), 제3편 스포츠 실천, 제4편 여러 규정의 4편으로 구성된다. 더욱이, 스포츠법전에는 법령의 부와 부처령의 부가 있다. 프랑스 스포츠법의 특색으로서는 제1에 스포츠회사, 프로스포츠 리그, 스포츠 행사의 영업, 스포츠 대리인 등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2에 스포츠 비영리단체, 스포츠연맹, 스포츠회사, 프랑스 올림픽스포츠위원회 등 스포츠의 단체 조직에 관한 규정이 정리되어져 있다. 제3에 스포츠연맹의 표준 정관의 채용(사용), 스포츠 지도자의 면허소지의무,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의 보험가입 의무 등 다양한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위반한 경우의 제재 또는 벌칙 등의 규정이 있다. 제4에 자연스포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의 개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법전은 스포츠법이 하나의 특수한 법체계로서 정리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핑법의 형성

프랑스에서는 옛날부터 도핑에 관한 특별한 법률이 제정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최초의 도핑법은 「스포츠 경기대회에서 흥분제의 사용 단속에 관한 법률(1965년 6월 제65-412호)」로 있다. 더욱이, 스포츠 경기대회 및 행사에서 도핑물질의 사용 예방 및 단속에 관한 법률(1989년 6월 제89-432호), 스포츠맨의 건강 보호 및 도핑 대책에 관한 법률(1999년 3월 제99-223호), 도핑대책 및 스포츠맨의 건강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 4월 제2006-405호)이 제정되고, 도핑법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 후, 도핑에 관한 법률은 2006년에 편찬되었던 스포츠법전의 안에 편입되었으나, 도핑에 관한 조문은 거듭 개정이 반복되었다. 특히, 2007년 1월 31일의 법률에 의해 프랑스정부가 유네스코의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의 방지에 관한 국제규약을 추진하였던 것에 동반하여 프랑스의 국내법을 유네스코 규약에 조화시킬 필요가 생겼다. 게다가,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 규약이 2007년에 채택되고,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 프랑스정부도 새로운 WADA 규정에 국내법을 조화시킬 필요가 생겼다.

이 때문에, 첫 번째로 2008년에 도핑물질의 부정거래 대책에 관한 법률(2008년 7월 제2008-650호)이 제정되고, 도핑의 부정거래 및 도핑물질의 소득에 관한 형법상의 새로운 범죄에 관한 규정이 정해졌다.

두 번째로, 병원 개혁내지 환자, 건강 및 지역에 관한 법률(2009년 7월 제2009-879호)이 제정되고, 도핑에 관한 새로운 법 규정을 정부가 채택하는 것이 임시조치로서 인정되었다.

세 번째로, 스포츠맨의 건강 및 WADA 규정의 원칙을 스포츠법전에 합치시키는 것에 관한 법령(임시입법)(2010년 4월 제2010-379호)이 제정되고,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원칙을 스포츠법전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정해졌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도핑법은 옛날부터 국내법에 의해서 정비가 진행되어 왔으며, 유럽, 유네스코, 세계도핑방지기구 등에 의한 세계적인 안티도핑정책의 영향을 받아 도핑에 관한 국내법을 국제법에 조화시킬 조치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3. 스포츠 관련 예산·재정·세제

1) 스포츠 관련 예산

(1) 예산조직법에서 스포츠 예산의 구조

프랑스에서는 2001년의 예산조직법(LOLF: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s finances)에 의해서 예산제도 개혁(비용분석회계), 공공회계제도, 업적관리, 정책평가 개혁 등이 이루어지고, 의회에 의해서 예산심의의 실질화와 업적(연차 업적보고서:

PAP와 연차 업적계획서: PAP에 의한 업적평가)에 근거하는 행정관리방법(목표의 설정, 시책의 책정, 예산편성, 계획의 실행, 성과의 검증, 차기 정책에의 예산 반영)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예산구조는 조직별·비목별의 구조가 아니고, 미션(예산의 의결 단위), 프로그램(예산배분 단위) 및 액션(비용분석 단위)의 과목 구분으로 나뉘어져 정책 목적별로 구조화되었다. 이것에 의해서 프랑스에서는 정책체계·예산체계·평가체계의 일원화가 도모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연차 업적계획서에 의하면 스포츠에 관한 예산구조는 미션: 스포츠·청소년·비영리사단활동, 프로그램 219: 스포츠, 액션: ①최대 다수를 위한 스포츠의 진흥, ②높은 수준 스포츠의 발전, ③스포츠에 의한 방지와 스포츠의 보호, ④스포츠의 직업 진흥에 구조화되고 있다.

(2) 국립 스포츠진흥센터(CNDS)

프랑스에서는 1976년의 재정법에 근거해서 스포츠발전국가기금(FNDS)가 설치되고, 동 기금으로부터 지방공공단체 및 스포츠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해 왔다. 또한, 이 기금의 재원으로서 ①프랑스복권공사의 복권 및 축구복권의 판매, ②스포츠행사의 방영권료, ③장의 승마투표 부금의 일부가 충당되었다. 그러나 이 기금은 2005년의 예산조직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되며, 지방공공단체 및 스포츠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스포츠 발전 국가기금의 업무를 계속하는 형태로, 국립 스포츠진흥센터(CNDS)가 공공시설법인으로서 설치되었다. 국립 스포츠진흥센터는 스포츠단체에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스포츠의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 스포츠시설의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국토의 정비에 공헌하는 것, 프랑스의 스포츠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특히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대중지구, 특히 문제가 있는 도시의 지구주민 및 장애자의 스포츠 활동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3) 그 외의 예산

그 외의 스포츠관련 예산으로서는 연대, 사회로의 편입, 기회의 균등 임무를 지지하기 위한 여러 시책 및 사업이 있고, 이런 것에 배분되고 있는 예산의 가운데에도 스포츠와 관련하는 예산이 있다.

(4)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스포츠 예산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스포츠예산은 <표 4-3>과 같이 있다. 스포츠관련 예산은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하면 프로그램 219: 스포츠, 국립 스포츠진흥센터 예산 및 그 외의 세출 모든 항목에 있어 증액 경향으로 있다.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비율로 6.6%의 증가로 되어져 있다. 또한, 프로그램 예산보다도 국립 스포츠진흥센터의 예산 쪽이 많게 되어져 있다. 스포츠의 프로그램에 있어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서는 스포츠연맹에 대한 지원(7,700만 유로), 높은 수준 스포츠의 발달로서 국립 스포츠·전문기술경기력향상학원(4,500만 유로), 국립 학교 및 민중교육스포츠센터의 쇄신(1,600만 유로), 프랑스 도핑대책기구(780만 유로), WADA(60만 유로) 등이 있다.

표 4-3. 프랑스의 스포츠 정책에 배분되었던 예산 총액(2010-2011) (단위: 유로)

	2010	2011
프로그램 219: 스포츠	233,049,402	216,565,118
국립 스포츠진흥센터	252,992,400	295,784,500
스포츠정책에 기여한 그 외의 세출	326,451,732	354,152,529
합계	812,495,526	866,502,147

출처: Les moyens consacrés à la politique du sport en 2011

2010년도의 업적계획서에서 스포츠의 프로그램에의 지불 허용비(credits de paiement)를 액션(비용분석 단위)별로 살펴보면, 총액 2억2,723만4,201 유로의 가운데 ①최대 다수를 위한 스포츠의 진흥이 1,013만4,000 유로, ②높은 수준 스포츠의 발전이 1억8,276만5,201 유로, ③스포츠에 의한 방지와 스포츠의 보호가 1,592만 9,000 유로, ④스포츠의 직업 진흥이 1,840만6,000 유로로 있었다. 경향으로서는 높은 수준 스포츠에 약 80%가 지출되고 있고, 스포츠담당부가 직할해서 행하는 사업으로서는 높은 수준 스포츠가 중시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5) 업적 계획과 업적 지표

2010년도 연차업적계획서에는 상기의 스포츠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의해서 달성되는 정책 목표 및 정책 지표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관련하는 예산은 이와 같은 정책 지표에 근거 그 성과가 매년도 국회에서 평가되어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

- | |
|--|
| <p>목표 1 장애가 있는 시민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면서 스포츠 실천을, 특히 클럽에서 증가하게 한다.</p> <p>지표 1.1 스포츠연맹에 의해서 교부된 등록증: 수와 장애가 있는 시민의 비율.</p> <p>지표 1.2 해당액에 따른 CNDS의 지방부문의 보조금 배분.</p> <p>지표 1.3 장애가 있는 시민에게 해당되는 CNDS의 지방부문의 예산비율.</p> <p>목표 2 스포츠연맹의 재무 엄정과 유효성을 촉진하는 것.</p> <p>지표 2.1 불안정하고 악화된 재무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연맹의 수.</p> <p>지표 2.2 스포츠연맹의 자기자금의 비율.</p> <p>목표 3 전국 스포츠 시설의 균형 있는 배분에의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 및 구조화된 시설의 실현을 촉진하는 것.</p> <p>지표 3.1 지방에서 스포츠 시설의 배분.</p> <p>지표 3.2 설비를 정비하고 있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에게 주어지는 CNDS의 시설 보조금의 비율.</p> <p>목표 4 스포츠 대국의 안에서 프랑스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p> <p>지표 4.1 프랑스의 스포츠 지위.</p> <p>지표 4.2 시설의 네트워크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비율.</p> <p>목표 5 스포츠에서 윤리의 준수를 강화하는 것 및 스포츠맨의 건강을 지키는 것.</p> <p>지표 5.1 높은 수준 스포츠맨 및 기대(espoir)의 총 수가 보고되는 해에 완전한 의학상의 추적조사의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 높은 수준 스포츠맨 및 기대의 비율.</p> <p>지표 5.2 안티도핑의 통제와 분석의 전체 평균 비용.</p> <p>지표 5.3 경기대회 외의 통제 수/통제의 총 수.</p> <p>목표 6 직업의 진전을 위한 연수를 채용하는 것 및 공무원의 임무에 관한 시설에 의한 연수의 제공을 개선하는 것.</p> <p>지표 6.1 면허증의 교부 후에 취득한 자격과 대응해서 유효하게 고용하여 종사하고 있는 면허증 소지자의 비율.</p> <p>지표 6.2 특정 환경에서 활동 및 긴장이 있는 부문에 대응해서 시설의 네트워크 속에서 확보되는 연수의 비율.</p> <p>지표 6.3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직업에의 편입 비율.</p> |
|--|

(6) 국립 스포츠진흥센터(CNDS)의 예산

2010년 스포츠부의 스포츠 수치 데이터에 의하면 국립 스포츠진흥센터의 예산은 <표 4-4>와 같이 과거 5년간 2억 유로대로 추정하고 있다. 2011년의 동 센터 예산의 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복권의 수익 1.8%의 과징금 1억7,010만 유로, UEFA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 2016의 개최를 위한 스포츠 시설을 위해서 5년간 적립되어 있는 복권의 수익 0.3%의 과징금 2,400만 유로, 스포츠 복권 수익의 1.5%의 과징금 3,390만 유로, 스포츠 행사 및 경기대회의 방영권 수입 5%의 분담금 4,340만 유로로 되어져 있다. 이런 과징금 등의 비율은 연도마다 변경이 있으나, 동 센터 재원의 대부분은 프랑스 복권공사가 행하는 복권, 스포츠 복권 등의 수익으로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4. 국립 스포츠진흥센터의 예산(2006-2011)

(단위: 100만 유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예산	213	236	268	211.7	227.6	271.4
그 안에서 복권 및 스포츠 복권*	173	196	226	165.6	184.3	228

출처: Ministère des sports, Les chiffres-clés du sport, Décembre 2010

* 스포츠 복권: 축구, 테니스, 럭비 등 여러 스포츠가 대상으로 되고 있다.

2) 재원

프랑스에서 스포츠 지출을 지출 단위별로 보면 <표 4-5>와 같게 있다. 2004년부터 2008년에 있어 정부의 스포츠 지출은 30억 유로에서 32억 유로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의 스포츠 지출은 86억 유로에서 106억 유로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지출의 늘림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스포츠 지출의 비율과 증가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총 스포츠 지출액의 증가율을 국내총생산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2004년 및 2005년에는 총 스포츠 지출의 정도가 높았으나, 2006년 이후는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의 쪽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총 스포츠 지출의 비율은 1.7%에서 1.8%로 대략 그 일정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스포츠 지출에 있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의 지출로 있고, 그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스포츠가 일정한 가계 소비를 새로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표 4-5. 스포츠 지출(2004-2008)

(단위: 10억 유로)

지출의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가계	14.7	15.2	15.8	16.5	16.8
지방공공단체	8.6	9.1	9.6	10.2	10.6
기초자치단체	7.6	8.0	8.4	9.0	9.3
광역자치단체	0.7	0.7	0.8	0.8	0.8
주	0.4	0.4	0.4	0.5	0.5
정부	3.0	3.0	3.0	3.2	3.2
기업	2.5	3.1	3.1	3.2	3.3
후원	1.6	1.7	1.7	2.0	2.1
방송권	0.9	1.4	1.3	1.2	1.2
총 스포츠 지출	28.8	30.3	31.7	33.1	33.9
연간 증가율(%)	5.5	5.2	4.6	4.4	2.4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7	1.8	1.8	1.7	1.7
국내 총생산(PIB)	1,660.2	1,726.1	1,807.5	1,892.2	1,950.1
PIB의 연간 증가율	4.1	4.0	4.7	4.7	3.1

출처: Comptes économiques du sport, DJEPVA-Mission des Etudes de l' Observation et des Statistiques.

3) 세제

프랑스에서는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는 세제 조치에 관해서는 프랑스 조세 일반 법전(Code general des impost(CGI))에 관련하는 여러 규정이 있다.

(1) 스포츠맨의 과세대상 이익 및 그 공제(CGI 제100조의 2 및 CGI 제84A조)

스포츠의 실천으로 생긴 과세 대상 수익은 신고제도에 근거 납세자가 청구하는 것에 의해서 과세연도 또는 그 전 2년의 수입 평균에서 해당 해의 지출 평균을 공제해서 결정된다. 또한, 스포츠 실천의 자격으로 금전을 받았던 스포츠맨의 과세 대상 임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스포츠 사업·조직에 기부 또는 납부에 대한 감세(CGI 제200조 및 제238조의2)

스포츠의 성질을 지닌 일반 수익사업 또는 조직을 위해서 납세자가 행하였던 기부 또는 납부에 대응한 과세대상 소득의 20%를 한도로 해서 그 총액의 66%에 해당하는 소득이 감세의 대상으로 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는 기업이 마찬가지로 납부하였던 경우에는 총 거래액의 0.5%를 한도로 해서 그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세의 대상으로 된다.

(3) 지역진흥을 위한 스포츠 행사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세(CGI 제207조)

스포츠의 집회 등 공적인 행사를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하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비영리사단이 얻었던 수익은 그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과 합치하고 있고, 경제적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에 따라서 일정한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4) 개인의 스포츠교실 및 비영리 스포츠단체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CGI 제261조)

학생으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고 있는 자유업자로 있는 개인이 행하는 스포츠교육에 관한 레슨 및 일반 수익을 위한 단체로 있는 법률상 비영리의 조직이 행하는 스포츠의 성질을 지닌 사업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5) 스포츠 방송권 양도 수익에 대한 분담금의 징수(CGI 제302조의 2ZE)

스포츠 행사 또는 경기대회의 방송권을, 정보전달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의 제2조 및 제2-1조의 의미에서의 TV사업의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담금(cotisation)을 지불해야 한다. 이 분담금은 방송권의 양도 수익 가운데 그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고, 세율은 영수액의 5%로 정해져 있다. 이 스포츠 방송권료에 대해서 징수되었던 분담금은 국립 스포츠진흥센터의 재원으로 되고, 스포츠의 진흥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 분담금은 인터넷 등에 의한 스포츠중계방송사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

해서도 부과된다.

(6) 스포츠행사의 흥행세를 일정의 흥행수입까지 면제(CGI 제1561조)

CGI 제1560조에서 정하는 흥행세(impôt sur les spectacles)는 관할권한을 지닌 장관에 의해서 인가되었던 1901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스포츠 비영리 사단 또는 스포츠법전 제L.122-1조에서 정하는 스포츠회사가 조직하는 스포츠의 집회 또는 행사의 수입이 3,040 유로까지는 면세된다.

4. 스포츠 기본계획

1) 스포츠 종합 서비스 계획(schema de services collectifs du sport: SSCS)

국토 정비·개발에 관한 기본법(1995년 2월 제95-115호) 및 국토의 지속적 정비 개발을 위한 기본법(1999년 6월 제99-533호)에 따라 2002년에 스포츠 종합 서비스 계획(schema de services collectifs du sport: SSCS)이 책정되었다. 이 계획은 전 국토에서 스포츠 실천에 관한 서비스, 시설, 공간, 사이트 및 코스에의 접근을 발달시켜 시민의 사회적 통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정하고, 우선 개인 지역을 특정(特定)하고, 전국적 국제적인 스포츠 강화 거점의 배치계획을 조정하고, 구조화된 서비스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있다.

스포츠 종합 서비스 계획은 I 「현재 상황 및 문제」, II 「스포츠 종합 서비스 계획의 목적」, III 「정부의 전략적 선택」, IV 「스포츠 종합 서비스 계획의 조사 및 평가」 내지 보충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1) 현재 상황 및 문제

우선, 스포츠의 현재 상황과 문제가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 확인되고 있다. ①실천자의 증가, ②연맹의 발달과 자율적인 실천의 발달, ③스포츠에의 여성 진출, ④생활시간의 연장, ⑤스포츠의 경제적 중요성, ⑥기술혁신, ⑦여가 및 자연에서 스포츠 활동의 비약적 발전, ⑧높은 수준 스포츠의 전문화, ⑨방영권료, 미디어, 경제시

장에서 프로 스포츠의 재정구조의 변화, ⑩지방공공단체, 기업, 비영리 사단 등 행위자의 다양화, ⑪스포츠 시설, ⑫프랑스 국토의 전례가 없는 풍요함과 다양성, ⑬스포츠의 진흥을 승인한 국가의 입장과 역할 등에 관해서, 데이터에 근거 분석되고 있다.

또한, 문제로서 ①사회적 불평등, ②국토의 불평등, ③스포츠종합 서비스의 제공 불평등, ④시설의 제공 불평등, ⑤자연에서 스포츠 개발의 억제, ⑥행위자의 다양성, ⑦스포츠의 사실 인식의 수단 결여, ⑧현대 스포츠의 잠재적인 편향 등에 관해서, 데이터에 근거 분석되고 있다.

(2) 스포츠종합 서비스계획(SSCS)의 5가지 목적 및 달성목표

목적 1: 신체적 및 스포츠 활동에의 모든 사람의 접근 장려와 스포츠의 교육적 측면의 보강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①국토 전체에서 학교스포츠의 의무화를 실시하는 것, ②스포츠에서 진정한 동등을 확보하는 것, 스포츠에의 평등한 접근의 조건을 장애자에게 확보하는 것, 노동계에서 스포츠를 발달시키는 것, 기존의 스포츠 시설을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시켜 쇄신하는 것에 의해서 스포츠 실천에의 접근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 ③우선 개입지역에서 비영리 사단활동을 발달시키는 것, ④모든 사람들의 건강 및 사회적 통합의 요소로 있는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발전내지 스포츠 실천의 다양한 수준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의 촉진에 노력하는 것에 의해서 최대 다수의 행복과 건강에 공헌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목적 2: 국제적인 무대에서 프랑스의 지위와 위세(威光)의 확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①올림픽 및 세계선수권 등의 기본으로 되는 경기대회에서 스포츠의 성적을 신장시켜 증대하게 하는 것, ②높은 수준 스포츠의 양성과 정에서 융합(integration) 및 사회적 통합 등의 인간적 민주적 개념을 촉진하는 것, ③기업의 기술정보에 의해서 연구를 지원하는 것에 공헌하는 것, ④스포츠를 통해

서 프랑스의 언어 및 문화를 보급시키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목적 3: 국토의 지속 가능한 형성과 개발의 논리 속으로 스포츠의 편입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①행정조직과 스포츠 실천의 관할 지역을 유기적으로 관계 부여하는 것, 스포츠 정책의 횡단화를 조장하는 것, 지역의 스포츠 및 지역거점의 정착에 공헌하는 국제적 전국적인 수익으로 되는 종목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서 국토의 형성과 개발의 논리 속에서 스포츠 정책을 구상하는 것, ②유럽적 국제적인 사명을 지닌 스포츠의 개발 지역거점을 강화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목적 4: 스포츠에 의한 자연 공간·농촌 공간의 고가치화 및 연락의 촉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①환경과 그 보호에 관해서 교육하는 것, ②유럽 및 국경을 초월한 차원에서 프랑스의 지역 자연 공간 및 농촌공간에 의해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 ③자연 공간 및 농촌 공간 이용의 새로운 목적을 정하는 것, ④이런 공간의 이용에 동반하는 분쟁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그 지역에서의 협의 형태를 개선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목적 5: 연수교육 및 고용에 의한 스포츠 조직의 구조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①국토의 지속적인 개발의 가능성으로서 연수교육 및 고용, ②자원봉사의 활동 및 비영리 사단활동의 비약적 발전에 맞추어 불가결한 투자로서의 연수교육 및 고용, ③고용 및 지역생활 뿐만이 아니고 스포츠 운동 조직의 통일 및 연맹의 임무 수행에 맞추어 불가결한 투자로서 스포츠의 기술지도 관리자의 전문직업화가 제시되어 있다.

(3) 정부의 전략적 선택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서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관한 전략적 선택, 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전략적 선택 및 우선 개입 지역의 3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관한 전략적 선택

스포츠 종합 서비스 계획(SSCS)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서 관련 하는 모든 스포츠 행위자의 스포츠정책에서 연계와 네트워크화를 도모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州) 수준에서는 ①각 주(州)에 국토공간정비추진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②스포츠 시설의 주(州) 조사를 실시하는 것, ③높은 수준(엘리트)스포츠주(州)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국토의 지속적인 정비 개발을 위한 기본법(1999년 제정)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1999년 7월 제99-586호)에 근거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스포츠정책을 연계시켜 합리화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 수준에서는 2000년 7월 6일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었던 신체적 및 스포츠적활동전국평의회에 의해서 모든 스포츠 행위자의 연계와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동 계획의 목적에 관해서 정부의 몇 가지 계약에 의한 행동계획 및 개입 조치를 수정하여 중심에 두는 것이 열거되어 있다. 이 때문에, ①주(州)영역 사업계획통일문서 (documents uniques de programmation régionale), ②정부-주(州)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Etat-région; CPER), ③스포츠연맹과 여러 해의 목적 협정, ④학교스포츠 시설 협정 등으로 스포츠 시설에 관한 계약에 의한 주(州)영역 정책, 도시계획을 진행해 가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② 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전략적 선택

우선, 프랑스 국민에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열거되어 있다. 이 때문에, ①지역에서 고용의 가능성 및 새로운 요구에 대응한 연수교육을 채용하는 것, ②스포츠의 지역 실천자 및 행위자의 요구에 가능한 한 엄밀하게 대응하는 것, ③민중교육 스포츠센터의 지방 배치 및 네트워크화를 더욱 조직화하는 것, ④청소년 정보 (information jeunesse)의 네트워크 및 새로운 정보기술을 청소년에게 잘 정보 제공하는 것, ⑤스포츠 이용자의 안전을 개선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①주(州) 수준, ②광역자치단체 수준, ③스포츠담당부의 중앙행정 수준에서 스포츠 종합서비스 계획의 실시를 정부의 업무 운영내용에 도입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③ 우선 개입 지역

①인근지역(territories de proximité), ②주(州)영역, ③주(州)간 및 국경간의 협력이 필요한 지역, ④해외 광역자치단체로 나뉘 정책과제가 열거되어 있다.

(4) 스포츠 종합 서비스 계획(SSCS)의 조사 및 평가

스포츠 종합서비스계획(SSCS)의 조사로서 ①국토정비주(州)계획(schémas régionaux d'aménagement du territoire)의 책정의 경우에 스포츠를 포함하는 것, ②동 계획의 목적을 정부·주(州)계획계약(CPER)에 합치시키는 것, 또한 동 계획의 집행 평가로서 ①국토의 공공정책의 평가, ②국토정비평의회단에 의한 정보제공이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정부가 정하였던 스포츠종합서비스계획의 내용은 정부의 스포츠정책 방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계획은 지방에서 스포츠정책의 실시 참고 지침으로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게다가, 이 계획의 내용은 스포츠법전의 체계, 스포츠행정조직의 구성, 스포츠정책의 실시, 스포츠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스포츠예산에 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예산조직법(LOLF)에 의해서 의회에 의한 각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심의와 업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연차업적보고서(RAP)와 연차업적계획서(PAP)가 작성되고, 스포츠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지표가 구조적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스포츠예산에 관한 업적계획서의 정책목표와 스포츠종합서비스계획과는 유사의 정책목표가 열거되어 있다. 또한, 스포츠종합서비스계획의 실시는 의회의 정책평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더욱이, 정부 및 지방의 국토정비계획의 안에 스포츠기본계획이 편입되어 실시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 데이터 등의 수집에 노력하고 있고, 더욱이 계획의 실시에 관해서도 조사 및 평가를 행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 증거에 근거하는 정책의 결정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법전 제L.111-2조에 의하면 스포츠종합서비스계획은 자연·농촌구역 종합서비스계획(schema de services collectives des espace naturels et ruraux)와의 적합성

(整合性)을 도모하면서, 국토의 전체에서 스포츠 실천에 관한 서비스, 시설, 공간, 사이트(장소) 및 코스(도로 등)에의 접근을 발달시키고, 시민의 사회적 통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로 있다고 정해져 있다. 위의 목적으로, 스포츠종합서비스계획은 우선 개입지역을 특정하고, 계획 실행의 진전과 형성되어 있는 수요(besoins en formation)를 고려해서 모든 필요한 방안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또한, 본 계획은 전국적 국제적인 사명을 지닌 스포츠강화 거점(poles sportifs)의 배치 계획을 조정하고, 구조화된 서비스 및 시설의 배치 지침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공적인 정책 및 스포츠 시설의 최적 이용을 위한 준거로 되는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있다고 정해져 있다. 게다가, 본 계획에는 지역, 경제, 관광 및 문화의 개발 정책과 관계하는 스포츠 실천의 발달과 관계하는 여러 가지 공공 의무(services publics)의 조정을 장려하는 것, 기존의 네트워크에 근거하는 스포츠의 서비스, 시설 및 실천에 관한 국민에의 정보제공과 정보 및 통신의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확보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정부, 지방공공단체 및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스포츠 비영리 사단의 사이에서 맺는 계약은 이 스포츠종합서비스계획의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2) 생활스포츠 진흥시책

(1) 국내 자원거점의 정비책

프랑스에서는 특정의 활동을 위한 연수교육, 정보조직의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국내 자원 거점(PRN)을 정비하는 것이 시책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동 거점에서는 「스포츠·교육·혼성·시민권」 거점(pôle<sport, éducation, mixtés et citoyenneté>), 「스포츠와 장애」 거점(pôle<sport et handicaps>), 「스포츠와 자연」 거점(pôle<sport de nature>), 「스포츠와 건강」 거점(pôle<sport et santé>)이 있다.

「스포츠·교육·혼성·시민권」 거점(pôle<sport, éducation, mixtés et citoyenneté>: PRN-SEMC)은 Provence Alpes Côtes d'Azur의 민중교육·스포츠센터(CREPS)에 위치하고 있다. 「스포츠·교육·혼성·시민권」 거점은 이제까지 있었던 「스포츠·가족·여성실천」 거점과 「스포츠·교육·통합」 거점이 통합되었던 것으로 있다. 「스포츠·교육·혼성·시민권」 거점은 최대 다수의 사람을 위한 스포츠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으로

로 있고, 특히 스포츠 실천에서 가장 멀게 있는 시민에게 직접 작용하여 스포츠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 스포츠, 스포츠단체에서 여성 책임자의 접근 촉진, 가족에게 있어서 스포츠, 스포츠에 있어서 차별대책 및 폭력대책, 스포츠 활동에 의한 교육 및 사회통합, 중재 등에 관한 활동을 행하고 있다.

「스포츠와 자연」 거점(pôle<sport de nature>)은 Provence Alpes Côtes d'Azur(PACA)의 민중교육·스포츠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이 스포츠와 자연거점은 억제되었던 개발과 자연 스포츠의 교육적 역할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야외활동의 분야에서 법적, 기술적, 교육적 지원을 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각 주(州)국에서 자연 스포츠에 관한 기술교육직원이 지명되어 있고, 각 주(州)를 중핵으로 한 자연 스포츠에 관한 광역자치단체의 담당 부국(部局)의 직원, 자연 스포츠에 관계하는 스포츠연맹의 기술지도관리자, 스포츠담당부의 국립 교육시설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행하고 있다.

「스포츠와 건강」 거점(pôle<sport et santé>: PRNSS)은 Auvergne의 민중교육·스포츠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스포츠와 건강」 거점은 건강의 요소로서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을 발달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건강관련의 조직과도 연계해서 활동을 행하고 있다.

(2) 자연 스포츠(sports de nature) 시책

스포츠종합서비스계획(SSCS)에 따라 자연 스포츠에 관한 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자연 스포츠란 정비 또는 미정비의 자연, 농촌, 산림, 바다, 하늘 등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을 의미하고, 사회적 교육적인 스포츠 실천 및 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규칙의 습득을 나타내는 용어로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연에서 다양한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다양성의 질이 준비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그 활동의 범위는 매우 넓다. 또한, 스포츠 행정만이 아니고 환경, 여가, 관광 등과의 관련 있는 영역으로 된다. 자연공간은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장으로 있는 것과 동시에 프랑스의 미와 참됨의 특별한 유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스포츠담당부는 시민이 자연 및 자연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연 스포츠의 실천이 안전하게 행하는 것, 환경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 스포츠 시설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는 것, 자연 스포츠에 관계하는 자격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 등을 행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자연 스포츠 국내 스포츠 거점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의 자연 스포츠의 실천을 계획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자연 스포츠의 관계자로 편성되는 지방협의기관으로서 자연 스포츠에 관한 Commissions Départementales des Espaces, Sites et Itinéraires: CDESI를 설치하고, 자연 스포츠 광역자치단체계획(plan départemental des Espaces, Sites et Itinéraires: PDSI)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스포츠법전 제L.311-3호).

(3) 스포츠와 교육 및 사회로의 동화책

프랑스에서는 스포츠는 사회생활, 개인의 자기실현 및 개화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으로 있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에 있는 사회적 교육적 기능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시민을 위한 스포츠 실천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정책과제로서 전략을 정하고 있다.

첫째로,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민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신체적 등의 이유에 의해 활동에의 접근이 곤란한 시민의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을 발달시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단체가 문제가 있는 교외(Quartiers sensibles)의 청소년을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교외 출신의 청소년을 위해서 「스포츠연락조정」이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2006년부터 2008년에 330개의 스포츠 전문직의 임무가 할당되었다.

둘째로, 사회혼성(mixité sociale)을 장려하고 있는 스포츠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연맹은 정부와의 사이 목적 협정에 근거해서 관련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로, 사춘기 및 사춘기전의 청소년 스포츠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의 스포츠 실천이 사회성을 기르고, 인격을 형성하고, 개인 및 집단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의 학교 휴업·방학기간 중의 여가활동에의 접근을 장려하는 「도시·생활·방학(ville-vie-vacances: VVV)」 조치, 교외 집단주택 지구(quartiers populaires)의 주민을 위한 「교외 희망계획(plan espoir banlieue: PEB)」에 의한 스포츠에의 접근을 위한 조치, 그 외 인적 재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게다가, 스포츠담당부와 사회보장담당부는 고령자,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스포츠의 주말」이라는 전국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가족이 주말에 스포츠를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스포츠맨 수첩을 발행하고, 청소년에게의 스포츠 정보의 제공 및 청소년과 그 가족, 교육자 및 지도자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4) 여성 스포츠에 관한 시책

2007년 4월 11일부의 건강·청소년·스포츠부(Ministere de la Sante de la Jeunesse et des Sport)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프랑스의 여성 스포츠의 스포츠 실시율은 1968년의 9%에서 2007년의 48%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및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낮기 때문에, 남녀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1999년에 헌법 제3조가 개정되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원직과 공직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접근을 조장하는 것이 정해졌다. 또한, 2000년에 「남녀 동수법」이 제정되고, 실제로 선거제도개혁이 실시되었다. 더욱이, 스포츠담당부는 2003년에 남녀 평등을 위한 헌장의 책정에 참획(參劃)하고, 2004년에 공직에서의 여성 접근의 보장을 시책으로서 열거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에 28.8%로 있었던 스포츠담당부의 여성 직원의 비율이 2004년에는 47.6%로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스포츠담당부에서는 공무원직에서의 남녀 평등한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의 스포츠담당부의 여성 직원의 비율을 보면, 여성의 쪽이 남성보다 직원 수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스포츠연맹의 등록증 소지자의 남녀 비율은 2대 1로 되고 있다. 국가대표코치는 2006년의 10%에서 2009년의 11.1%,

국가대표기술총괄(DTN)은 2006년의 4%에서 2009년의 5%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아직 여성의 스포츠 운동 조직에서 지도적 입장의 사람으로서의 참가 비율은 높지 않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스포츠, 교육·혼성·시민권」 국내 자원 거점이 설치되고, 여러 시책이 행하여지고 있다. 더구나, 2010-2012년의 스포츠 여성 진출 및 책임자에서의 여성 접근을 위한 행동계획이 책정되고 있다.

(5) 학교체육·스포츠에 관한 시책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체육·스포츠교육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국민교육장관의 관할로 되어져 있다. 교육법전 제L.312-1조는 정부가 국민교육담당장관의 관할 하에서 체육·스포츠교육의 교과로서 교육을 행할 책임이 있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전 제L.312-3조는 체육·스포츠교육의 교과로서의 교육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육 시설 및 기술교육 시설로 실시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더욱이 고등교육 시설에서도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교육을 받는 것이 정해져 있다(교육법전 제L.624-1조). 또한, 교육법전 제L.121-5조는 체육·스포츠교육 내지 학교 및 대학 스포츠가 교육의 공공 역무의 목적 및 임무로서 교육제도의 개혁, 낙제대책 및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의 축소에 공헌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과의활동으로서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에 관해서는 교육법전 제L.552-1조는 학생에 자발적인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이 학교스포츠 비영리 사단에 의해서 교육 시설에 있어 조직되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비영리사단이 모든 중등교육 시설에 설립되는 것,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각 초등교육 시설에서 학교스포츠 비영리사단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 학교스포츠 비영리사단이 정부의 원조 이익을 받는 것, 지방공공단체가 스포츠시설에의 접근을 장려하는 것에 의해서 학교스포츠 비영리사단의 발전에 협력하는 것, 학교스포츠 비영리사단이 국무원(내각)의 논의를 거친 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의무적 정관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교육법전 제L.552-2조).

학교에서의 높은 수준 스포츠(엘리트 스포츠)의 실천에 관해서는 중등교육 시설

이 높은 수준 스포츠의 스포츠 실천을 위한 학생의 준비를 인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교육법전 제L.312-2조). 또한, 고등교육 시설이 높은 수준 스포츠맨에 대해서 그 조직의 필요한 조정에 의해서 스포츠의 경력을 추적하는 것 및 그 연구의 진전을 인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교육법전 제L.611-4조).

교육시설 관계의 전국적인 연맹으로서는 초등교육스포츠연합(USEP), 전국학교스포츠연합(UNSS) 및 전국대학스포츠연맹(FNSU)이 있다.

3) 경기스포츠 시책

(1) 경기력 향상 시책

프랑스는 올림픽 메달 획득 수에 있어 2000년의 시드니대회 6위, 2004년의 아테네대회 7위, 2008년의 북경대회 10위로, 항상 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대 올림픽의 조직과 개최에 힘을 쓴 쿠베르탱 등 올림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것이 1960년의 로마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였던 경험으로, 경기력 향상에 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가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어느 일정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는 경기력 향상에 관한 장기적인 여러 시책의 전개와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프랑스에서는 높은 수준 스포츠맨(sportifs de haut niveau)에 관한 등록과 양성제도가 정비되어져 있고, 스포츠담당부,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CNOSF), 국립 스포츠전문기술경기력향상학원(INSEP) 및 경기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높은 수준 스포츠 전국위원회(CHSHN)가 각 경기단체에서 추천된 선수의 가운데에서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등록자로서 높은 수준 스포츠맨, 23세이하 아마추어 선수(espoir⁴), 트레이닝 파트너의 범주로 나눠 리스트를 수정하고 있다. 더욱이,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범주는 다음의 것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①jeune: 3-4년후의 국제대회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 ②senior: 직전의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유

4) espoir란 높은 수준 스포츠맨(엘리트 운동선수)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대표 기술총괄자가 유망선수로서 그 능력을 인정한 선수인 것으로 있다.

럽선수권 등)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 ③elite: 국제대회에서의 실적이 이미 있는 선수(2년간의 기간), ④전직(Career Transition; 경력전환): 4년간 시니어로 혹은 1년간 엘리트로 등록되었던 선수. 또한, 전직의 해당자는 직업훈련 및 취직 가이드스 등의 특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높은 수준 스포츠맨은 트레이닝 기간중 및 대회기간중의 학업, 취업 등에 관한 보장 및 각종 우대조치, 조성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리스트에 등록되는 것에는 개인 종목의 경우 세계 개인순위 20위 이내로 있는 것이 요구되고, 연간 순위 발표 당일로부터 1년간 등록된다. 또한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소정의 성적을 거둔 당일로부터 2년간 등록된다. 높은 수준 스포츠맨은 국립 스포츠전문기술경기력향상학원(INSEP) 및 그 외의 강화 거점에서 대회에의 트레이닝을 행하는 것으로 된다. 2010년의 스포츠연맹별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분포 상황은 <표 4-6>와 같이 있고, 장애인올림픽 관계의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높은 수준 스포츠맨도 187명이 인정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스포츠연맹별의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분포(2010)

	합계	여성 비율(%)	평균 연령
	7,191	37	22세
육상경기	395	39	23
유도	374	46	20
사이클	310	27	22
스키	305	40	23
축구	305	51	19
수영	299	50	19
럭비	254	37	21
체조	248	54	19
농구	240	50	20
배구	238	47	19
요트	213	25	28
장애인 스포츠	187	21	34
핸드볼	173	46	21
카누 카약	160	28	23

출처: Ministère des Sports-Direction des Sports, Les chiffres-clés du sport, Décembre 2010

선수의 양성에 관해서는 높은 수준 스포츠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이 정비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특히 높은 수준 스포츠 선수를 젊은 층부터 양성하고, 그 학업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스포츠의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것으로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 스포츠의 전문교육 과정으로서는 1974년부터 1984년에 스포츠교육과정학과(sections sport-études)가 설치되었다. 1984년부터 1995년에는 트레이닝 연수교육 상설센터(Centres Permanents d'Entraînement et de Formation)가 설치되었다. 게다가 1995년부터는 높은 수준 스포츠 전문과정(filière d'accès au sport de haut niveau)이 설치되었다. 이 스포츠교육과정이 경기 거점(pôle)에도 설치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의 우수자에 대해서는 보장금이 지불된다. 예를 들면, 2008년의 북경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에 관해서는 올림픽의 금메달 5만 유로, 은메달 2만 유로, 동메달 1만3,000 유로, 장애인올림픽 금메달 1만2,000 유로, 은메달 7,200 유로, 동메달 4,800 유로로 있었다.

(2)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프랑스에서는 국제적인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정책으로서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프랑스 본토에서 행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를 동반하고, 관련하는 스포츠클럽의 경제적인 발전을 조장하고, 인프라의 현대화를 동반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 대규모 이벤트의 유치 및 개최의 임무를 부처를 횡단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부처간 대표(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DIGES)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2016년의 UEFA유럽선수권의 개최를 결정하고, 각 지역에 운동장의 신설 및 보수(改修)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10년의 펜싱세계선수권, 2011년의 유도세계선수권 등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동계 올림픽을 프랑스의 안시(Annecy)에서 개최하는 것을 입후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1992년의 알베르빌(Albertville) 동계 올림픽대회의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올림픽의 유치활동에 관해서는 이 외에도 2012년 및 2008년에 장애인올림픽의 유치활동을 행하고 있다.

4) 스포츠지도자 관련 시책

(1) 스포츠지도 관리자의 전문직화

스포츠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 공무원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1996년에 스포츠담당부의 설치 이후, 스포츠담당부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스포츠연맹 등으로 나가서 스포츠연맹의 감시 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이런 스포츠전문의 기술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총칭해서 기술지도관리자(cadres techniques) 또는 스포츠전문기술고문지도원(onseillers techniques sportif: CTS)이라고 한다. 스포츠전문기술고문지도원은 2010년 합계 1,683명이 있다. 대부분의 스포츠연맹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직원의 채용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스포츠전문기술전문지도원 제도가 발달하고, 행정이 스포츠연맹에 대해서 인적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되었다. 또한, 동 지도원은 스포츠담당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 스포츠 운동조직과 중개적 역할을 맡아 연수교육, 안티도핑, 스포츠 진흥 등의 업무도 행하고 있다. 지도 관리자에는 다음의 직이 있다.

① 국가대표기술총괄자(Directeurs Techniques Nationaux: DTN)

국가대표기술총괄자는 수준이 매우 높고 뛰어난 전문적인 스포츠의 기술을 지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종목의 선수권 보유자(titleholder)로 있는 자가 관계하는 스포츠연맹으로부터 지명 받고, 스포츠담당 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그 직에 취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 총괄자의 주된 임무는 국가대표 팀의 지휘, 전국적인 연수회의 개최, 전국적 및 국제적인 경기대회의 개최 등이 있다. 또한, 스포츠연맹의 회장을 보좌하는 관리직적인 능력도 필요하게 된다.

② 주(州)전문기술고문지도원(Conseillers Techniques Regionaux: CTR)

주(州)전문기술고문지도원은 주(州)수준에서 스포츠담당부의 공무원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스포츠담당부가 채용하고, 스포츠담당부의 주(州) 국장의 감독 하에 두게 된다.

③ 국가대표 코치(Entraîneurs nationaux: EN)

국가대표 코치는 전국적 국제적인 경기대회를 위해서 국가대표 팀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④ 국가전문기술고문지도원(Conseillers Techniques Nationaux: CTN)

스포츠법전 제R.131-16조에 의하면 국가전문기술고문지도원은 전국 수준에서 관계하는 연맹의 지도관리자의 연수교육, 연구, 조사, 분석, 활동의 조직 및 발전, 스포츠맨의 지도 등을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이상의 국가대표기술총괄자, 주(州)전문기술고문지도원, 국가대표 코치, 국가전문기술고문지도원을 스포츠전문기술고문지도원(CTS)이라고 한다. 게다가 다음의 직이 있다.

⑤ 올림픽준비를 위한 행정계약 공무원(préparation olympique: PO)

⑥ 스포츠담당부에 스포츠의 기술 및 교육지도를 행하는 행정계약 공무원

⑦ 광역자치단체전문기술고문지도원(Conseillers Techniques Départementaux: CTD)

(2) 스포츠 지도자의 직업 면허 자격제도

스포츠 지도자 자격 및 면허제도가 발달해 있고, 특히 법률에 근거해 자격 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유상으로 스포츠 지도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자격 지도를 행하였던 경우에는 형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유상의 스포츠 지도자로서는 스포츠담당부가 교부하는 다음의 자격 면허증이 있다.

- ① 스포츠교육자 국가면허(Brevet d'Éducateur Sportif: BEES)
- ② 청소년·민중교육·스포츠직업 면허(Brevet Professionnel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u Sport: BPJEPS)
- ③ 청소년·민중교육·스포츠국가 면허(Diplôme d'État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u Sport: DEJEPS)
- ④ 청소년·민중교육·스포츠고등국가 면허(Diplôme d'État Supérieur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u Sport: DESJEPS)
- ⑤ 청소년·스포츠전문추진원조수직업적성 면허(Brevet d'Aptitude Professionnelle d'Assistant Animateur Technicien: BAPAAT)
- ⑥ 추진·개발계획 총괄자 국가면허(Diplôme d'État de Directeur de Projet d'Animation et de Développement: DEDPAD)
- ⑦ 추진직 국가면허증(Diplôme d'État relatif aux Fonctions d'Animation: DEFA)
- ⑧ 민중교육·청소년전문추진원 국가면허(Brevet d'État d'Animateur Technicien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jeunesse: BEATEP)

※ DEDPAD, DEFA, BEATEP는 2010년에 폐지.

① 스포츠교육자 국가면허(BEES)

1972년부터 통일된 국가면허제도로 있고, 스포츠교육자 초급 국가면허(BEES1), 스포츠교육자 중급 국가면허(BEES2) 및 스포츠교육자 상급 국가면허(BEES3)가 있다. 본 면허는 각 스포츠종목의 지도에 대응한 국가면허로 있고, 2010년 시점에서 61개 종목의 국가면허 자격이 있다. 초급(BEES1)은 스포츠의 추진 및 입문지도를 위한 면허, 중급(BEES2)은 스포츠의 기술 지도를 위한 면허, 상급(BEES3)은 스포츠교육자의 최상급 자격으로 전문가·연구자 등 한정된 사람이 지니는 면허로 있다. 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체육학·스포츠과학의 공통하는 전문지식, 각종 스포츠 종목에 관한 전문지식, 논문 및 외국어의 시험이 부과된다. 양성과정에서 소정의 이수과정을 수료한 후로, 각 주(州)에서 최종시험이 실시된다.

② 청소년·민중교육·스포츠직업 면허(BPJEPS)

2001년에 설치된 레벨Ⅳ의 면허증으로 있고, 추진원의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필수의 직업능력의 소지를 증명하는 면허증으로 있고, 취득한 전문 범위내에서 추진원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본 면허는 특정의 활동 또는 스포츠 종목마다 교부된다. 현재 15개의 특정 활동부문이 준비되어 있다. 더욱이, 스포츠교육자 초급 국가면허(BEES1) 및 민중교육·청소년전문추진원 국가면허(BEATEP)는 청소년·민중교육·스포츠직업 면허로 바뀌는 것으로 되었다. 이 자격의 변경은 스포츠 교육자로서의 면허에서 직업으로서의 면허로 크게 면허의 성질로 전환하는 것으로 있다.

③ 청소년·민중교육·스포츠 국가면허(DEJEPS)

취득한 분야의 범위내에서 기술 코디네이터 또는 코치의 직업에 종사하는 속에서 능력의 소지를 증명하는 면허증으로 있다. 본 면허의 가운데 스포츠의 기술 향상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은 54개 종목으로 있다.

④ 청소년·스포츠전문추진원조수직업적성 면허(BAPAAT)

사회문화 및 스포츠부문으로 공통해서 레벨 V(CAP, BEP, BEPC 등)로 인증되는 국가 면허증으로, 사회문화 활동(여가활동) 및 스포츠 활동의 추진 및 지도 관리를 위한 초급 수준의 자격으로 있다. 본 면허자격 소지자는 스포츠단체, 사회센터, 휴가 또는 관광조직에서 고용되고, 상급의 레벨 자격(청소년·민중교육·스포츠 직업 면허, 청소년·민중교육·스포츠 국가 면허 및 청소년·민중교육·스포츠고등국가 면허)을 소지하고 있는 지도 관리자의 책임 하에서 추진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자격의 준비 양성은 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 주(州)국에 의해서 인가된 연수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스포츠 지도자 자격 면허는 <표 4-7>와 같이 I에서 V의 레벨로 나뉘고, 각각의 대응하는 직업과 자격 면허간의 동등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 4-7. 직업의 레벨과 자격 면허의 대상관계

레벨	정의	면허증	대응하는 직업
V	직업교육 면허증(BEP) 또는 직업적 성 자격(CAP)의 연수교육과 동등 내지 성인 직업교육 자격(CFPA)와 동격의 레벨 연수교육을 요구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BAPAAT	보좌의 추진원 (Assistant Animateur)
IV	직업자격(BP), 기술면허(BT), 직업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또는 기술 바칼로레아와 동등의 사람.	BPJEPS BEES1	사회문화 추진원 사회·문화·스포츠 추진원, 스포츠 추진원
III	기술단기대학학부 수료 면허증 (DUT) 또는 고등기술 면허(BTS) 레벨의 연수교육 또는 고등교육 제1 과정 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DEFA DEJEPS	조직기구의 총괄자 추진지도 관리자
II	학사 또는 석사와 비교 가능한 레벨의 연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DESJEPS DEDPAD BEES2	지도 관리자, 직업 훈련관, 높은 수준 트레이너 계획 총괄자
I	석사 이상의 레벨 연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BEES3	전문가 또는 연구자

출처: http://www.drdfs-franche-comte.jeunesse-sports.gouv.fr/rub_generale_02/DIPLOME_PRO.htm

각 스포츠지도자 자격 면허의 2005년부터 2009년에 교부되었던 수는 <표 4-8>와 같이 있다. 스포츠교육자 초급 국가 면허(BEES1)가 감소하고, 그것으로 교체하는 면허로서 청소년·민중교육·스포츠직업 면허(BPJEPS)가 증가하고 있다.

표 48 스포츠담당부에 의해서 교부된 「스포츠청신년비영리 사단생활」 부문의 전문 면허증의 수

면허증의 성격과 레벨		2005	2006	2007	2008	2009*
스포츠 면허증	레벨	10,069	10,072	10,108	10,468	11,444
BEES1 초급*	IV	7,814	6,624	6,684	5,383	4,627
BPJEPS** 스포츠전문	IV	1,643	2,798	2,996	4,347	4,775
DEJEPS 전문: 스포츠기술향상	III	0	0	2	156	1,467
BEES2 중급***	II	612	650	426	567	486
DESJEPS 전문: 스포츠퍼포먼스	II	0	0	0	15	89
STAPS****, 학사(licence) 이상	II 및 I	10,387	10,808	7,947	7,145	nd
사회스포츠 면허증		1,144	245	949	899	912
BAPAAT	V	1,138	1,241	924	876	901
DEDPAD	II	6	4	25	23	11
추진 면허증		3,275	3,501	3,679	5,275	4,218
BEATEP	IV	2,397	2,005	1,192	676	0
BPJEPS** 전문: 사회·문화추진	IV	537	1,178	2,162	2,596	2,884
DEJEPS 전문: 사회·문화추진	III	0	0	42	1,214	878
DESJEPS 전문: 사회·문화추진	II	0	0	12	543	263
DEFA		341	318	271	246	193

출처: Ministère des Sports-Direction des Sports et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diplômes STAPS)

※: 2011년 1월 28일에 수집된 데이터. nd: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음.

* 중간 정도 등산 동반자 레벨 IV 국가 면허(2009년에 교부된 286개의 면허증)를 포함한다.

** BPJEPS는 레벨 IV의 모든 면허증, 즉 BEES1 초급 및 BEATEP로 교체된다.

*** 산악가이드 견습 레벨 II 국가 면허(2009년에 교부된 38개의 면허증) 및 고산 가이드 국가 면허(54개 diplômes délivrés en 2009)를 포함한다.

**** STAPS 면허증은 고등교육·연구부에 의해서 교부되고 있다.

이런 스포츠 지도자의 국가 면허에 관해서는 사회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2002년 1월 17일 제정)에 근거해서, 자격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 이제까지 전문적인 경험에 의해서 습득되었던 지식능력을 인증하는 제도, 경험획득유효인증(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VAE) 제도가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노동법전 및 교육법전에서 인정되었던 권리로 있고, 조건에 따른 심사를 충족시키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스포츠 지도자에 관한 국가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다. 스포츠 관련 자격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국립 스포츠·전문기술경기력향상학원(INSEP) 면허증 및 젊은 수습 실습생이 스포츠 부문에서 임금노동자로서 활동하면서 수습연수센터(centre de formation d'apprentis: CFA)에서 전문의 직업

면허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3) 스포츠 지도자의 비직업 자격제도

스포츠 지도자의 비직업 자격으로서 추진원직 적성 면허(Brevet d' Aptitude aux Fonctions d'Animateur: BAFA), 총괄자직 적성 면허(Brevet d' Aptitude aux Fonctions de Directeur: BAFD), 사회교육추진 적성 면허(Brevet d' Aptitude à l' Animation Socio-Éducative: BASE)가 있다. 이런 3개의 면허 가운데 추진원 적성 면허가 그 대부분으로 있고, 약 5만 명에게 교부되고 있다. 직업 면허보다도 비직업 면허의 쪽이 많이 교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외에, 국립대학의 체육·스포츠전문의 학부로서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과학·기술(Sciences et Techniques des Activités Physiques et Sportives: STAPS)이 대학의 교육연구 단위로서 학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학부 수준의 학사뿐만 아니라 대학원 수준의 석사 및 박사도 수여하고 있다.

5) 스포츠 시설 및 환경정비 시책

(1) 전국 스포츠 시설 수 조사(Recensement des Equipements Sportifs: RES)

지역 스포츠 시설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스포츠 시설의 지역간 격차의 시정 및 정책 실시의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 전국스포츠시설조사(RES)가 실시되고 있다.

2010년 10월 25일의 전국 스포츠 시설 수 조사에 의하면 스포츠 시설의 수는 전체적으로 259,012개 시설이 있고, 운동경기장이 가장 많다.

(2) 스포츠 시설의 정책과제와 시책

스포츠 시설에 관해서 스포츠의 다양성 확보, 안전의 확보, 접근하기 쉬운(accessibility) 대책, 국토에 있어서 평등한 개발, 지속적인 개발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되어져 있다.

첫째로, 공중에 공개되는 행사에 이용되는 스포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서, 스포츠 시설장내의 인가제도가 있다. 지방의 소규모 스포츠 시설에 관해서는 안전·접근하기 쉬운(accessibility) 광역자치단체자문위원회(Commission consultative départementale de sécurité et d'accessibilité: CCDSA)가 수용인원 8,000명 이상의 국내 스포츠 시설 및 3만 명 이상의 실외스포츠 시설에 관해서는 스포츠장내 안전 전국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sécurité des enceintes sportives: CNSES)가 심사하고 있다.

둘째로, 권한을 위임받은 스포츠연맹은 스포츠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법률에 근거 위임되어 왔으며, 스포츠 시설의 관객 수용 능력, TV 방영권 등의 상사적인 규칙에 관해서 규정이 명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포츠 시설에 관계하는 스포츠연맹의 규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해서는 스포츠시설연맹규칙 심사위원회(Commission d'examen des règlements fédéraux relatifs aux équipements sportifs: CERFRES)의 의견에 근거하는 평가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셋째로, 장애자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 참가 내지 시민권에 관한 법률 제 2005-102호는 신체적, 감각, 인지, 정신 또는 정신의 어떠한 장애의 타입이라도 공중을 받아주는 시설(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RP)의 건축 배치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로 되어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동 법의 스포츠 시설에의 적용이 도모되고 있다.

6) 스포츠의 보호 관련 시책

(1) 도핑에 관한 시책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건강 및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규약의 원칙을 스포츠 법전에 합치시키는 것에 관한 임시입법(ordonnance; 2010년 4월 14일 제정)에 근거, 국내법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규약에 조화시키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2005년에 채택되었던 스포츠에서 도핑에 대한 국제규약의 추진을 허가하는 법률(2007년 1월 31일 제정)에 근거, 유네스코 규약을 추진하고, 국내법을 유네스코 규약과 조화시키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도핑에 관한 시책은 크게 단속과 예방으로 나뉜다.

스포츠 선수가 도핑검사로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도핑금지 행위에 위반한 경우, 또는 도핑통제의 거부 및 거주 장소 정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스포츠연맹으로부터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받는다. 또한, 금지물질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조직적으로 도핑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스포츠 선수에게 금지물질·금지방법을 투여한다든지 양도한다든지 이용을 권유한 경우, 금지물질·금지방법을 생산, 제조, 수출입하고,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제재처분을 받는다.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우선 스포츠연맹이 행한다. 도핑의 통제, 검체의 분석, 처분의 심리, 제재까지의 절차에 관해서는 독립·중립기관으로 있는 프랑스도핑대책기구(Agence française de lutte contre le dopage: AFLD)가 행한다. 특히 동 기구는 ①제재의 대상으로 되는 사람이 스포츠연맹의 등록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②스포츠연맹이 내린 제재처분을 변경하는 경우, ③스포츠연맹이 제재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 ④스포츠연맹이 내린 제재처분을 다른 스포츠연맹의 제재로 확장하는 경우에 처분을 심사한다. 게다가, 프랑스도핑대책기구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소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스포츠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포츠맨의 의학적인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선수는 스포츠연맹에 등록하는 경우 또는 스포츠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의료 진찰시에 도핑의 징후를 발견한 의사는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도핑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도핑예방 의료소(antennes médicales de prévention du dopage)가 설치되어 있다.

(2) 스포츠 분쟁 해결

스포츠연맹, 그 가맹단체 및 등록증 소지자의 사이에서 생긴 분쟁에 관해서 여차피 당사자 일방의 제기에 근거해서 조정(Concilia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스포츠 조정은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CNOSF)에 위탁되고, 사법상의 모든 불복 제기에 앞서 이루어진다. 스포츠 조정은 분쟁 당사자의 누군가 일방의 제기에 의해서 가능하고, 조정전치주의가 채택되어져 있는 것으로, 조정 건수가 매우 많아지게

된다. 게다가,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라도 행정제재소에 상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행정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에 근거해서 스포츠연맹이 내린 결정은 행정행위로 간주하고, 행정재판소의 관할로 되어져 있다.

2009년의 경우에는 240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다. 이 가운데 37건이 불수리로 되고, 수리되었던 203개의 조정 사안의 가운데 31건이 조정안의 제시 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172개의 조정안 가운데 95건이 합의되고, 65건이 거부되었다. 조정에 의해 해결에 이른 분쟁이 63%라고 말하고 있고, 조정전의 조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스포츠의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분쟁이 재판에 이른 사례는 24건으로 있고, 분쟁이 불성립 사안의 37%, 전체 분쟁의 10%로 되어져 있다.

(3) 시민의 보호 내지 스포츠의 윤리·도덕의 확보에 관한 시책

유럽평의회에 의한 1992년의 「스포츠윤리요령」, 2003년의 「스포츠에서 동성애(lesbian) 및 동성애(homosexual)에 관한 권고 1635호」, 2007년의 IOC에 의한 「스포츠에서 동성애 학대(homosexual harassment) 및 남용에 관해서 합의(consensus)에 관한 선언」 등, 유럽에서는 성폭력 등에 관한 문제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에 대응해서 스포츠담당부와 CNOSF는 2007년에 스포츠에 있어서 성폭력의 방지의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 스포츠에 있어서 성폭력의 방지에 관한 헌장(Charter relative à la prevention des violences sexuelles dans le sport)을 채택하고, 성학대(sexual harassment) 방지에 관한 행동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담당부는 스포츠에 있어서 무법한 행위(incivilités), 폭력 및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어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인종차별 및 폭력의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담당부는 프랑스축구연맹에 의한 축구에서 반인종차별 활동 및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위한 교육 계몽활동·캠페인에 대해서 조성을 행하고 있다.

더욱이, 스포츠경기대회에서는 관중이 스포츠 선수, 심판 등에 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1년의 구금 및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스포츠법전 제L.332-6조에 정해져 있다. 또한, 스포츠행사폭력방지전국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 prévention des violences lors des manifestations sportives)가 설치되어 있다.

(4) 사고보상·안전대책·보험관련 시책

스포츠 실천에 관한 사고방지 대책과 본질적인 위험에 관한 정보제공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겨울 산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해서는 「당신의 스피드를 낮추어」 「골짜기 방면의 스키어에 주의해서」 등의 캠페인이 있다. 또한, 「스키 연습장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5가지의 규칙(신체적 조건·타인의 존중, 추월, 스키 연습장에서의 진입, 도보로의 오르내리기, 스키 연습장에서의 불필요한 활강의 멈춤)」이 포스터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름 산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해서는 「안전하게 여름 산에 나가기 위해서」가 25만부 발행되고, 관공협회 등에서 배포되고 있다.

산악자전거의 내리막길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해서는 「잘 준비해서 산악자전거를 즐기자」의 포스터가 배포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담당부는 프랑스자전거지도원협회, 산악자전거인재단 및 프랑스자전거연맹에 의한 안전지도를 위한 비디오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수상에서의 레저에 대한 위험방지에 관해서는 2009년에 「바다, 호수, 하천을 배운다」는 캠페인으로 안전의 방지, 환경을 중요시하는 행동의 촉진, 수상활동의 규칙 등이 정보 제공되고 있다.

7) 스포츠산업 관련 시책

(1) 프로 스포츠 관련 시책

프랑스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스포츠단체와 프로스포츠단체는 조직으로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스포츠 조직으로서 단일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로스포츠단체는 해당하는 스포츠 종목을 관할하는 스포츠 연맹의 조직 아래에 있고, 게다가 스포츠담당부의 관할 아래에 있다. 스포츠법전 제L.132-1조에 근거, 권한을 위임받은 스포츠연맹은 연맹에 가맹하고 있는 스포츠 비영리단체 및 스포츠회사의 직업

적인 성질을 지닌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프로리그(Professional League)를 설립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이 프로리그와 스포츠연맹 사이의 관계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스포츠연맹은 프로리그에 소속하는 스포츠 비영리사단 및 스포츠회사의 법적 및 재정적인 감독을 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스포츠연맹이 조직하는 경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프로스포츠클럽은 프로스포츠선수를 고용하고, 일정의 수익을 거두는 경우에는 스포츠법전에서 정한 특별한 스포츠회사 제도에 따르고, 경영난의 예방, 상업주의적인 자본에 의한 개입으로부터의 보호, 회계의 감사와 투명성의 확보, 부정의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프로스포츠 선수에 관해서는 그 노동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프로스포츠 선수의 대표 조직과 고용단체 사이에 있어서 단체 협약이 체결되고, 프로 스포츠 활동에서 예외적인 유기노동계약이 마련되어 스포츠 대리인의 자격 및 활동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행사 및 경기대회에 관해서는 그 영업권을 스포츠연맹이 소유하고, 프로리그 및 스포츠회사의 사이에서 그 권리 관계를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2) 스포츠 고용 대책

프랑스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임금 노동자 수가 증가 경향으로 있고, 스포츠 분야의 고용이 앞으로 35만 명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해서 스포츠의 고용 창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고용 창출의 관점에서 스포츠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인 분야로서 생각되고 있다. 전국상공업고용조합연합(UNEDIC)의 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스포츠의 성질을 지닌 다양한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스포츠 관련의 임금 노동자 수가 2004년의 17만2,635 명에서 2009년의 18만3,727 명으로 증가 경향으로 있다. 특히 스포츠의 구조, 소매업자 관련의 임금 노동자 수가 감소 경향으로 있는 가운데, 스포츠 활동의 지도를 하는 사람 등의 임금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표 4-9).

표 4-9. 스포츠의 성질을 지닌 다양한 경제적 활동에서 임금 노동자 수의 추이(2004-2009)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모든 스포츠 부문	102,163	102,423	104,875	110,414	112,064	116,830
스포츠에 관련하는 활동	93,244	93,250	95,584	101,021	102,757	107,888
스포츠 시설 설비의 관리	16,001	16,524	15,947	16,463	15,842	15,992
스포츠클럽의 활동	74,946	74,296	76,058	78,240	79,372	83,878
신체문화센터의 활동	382	477	734	1,471	2,193	2,414
스포츠에 관련하는 그 외의 활동	1,915	1,953	2,845	4,847	5,350	5,604
스포츠 종목 및 여가활동의 교육	8,919	9,173	9,291	9,393	9,307	8,942
스포츠 관련 제조소매업 등	70,472	70,835	72,435	72,862	69,740	66,897
레저용 배의 건조	8,677	9,188	9,810	10,039	9,646	7,992
자전거 및 신체장애자용 차량의 제조	3,175	2,870	2,716	2,545	2,330	2,125
스포츠 용품의 제조	7,334	7,032	6,302	6,259	5,458	5,205
특정의 점 스포츠 용품의 소매업	49,709	50,243	52,082	51,958	49,901	49,277
여가 및 스포츠 용품의 임대차	1,577	1,502	1,525	2,061	2,405	2,298

출처: UNEDIC, fichier de la statistique annuelle des établissements affiliés données au 31 décembre de chaque année

이 때문에, 스포츠담당부는 1996년부터 스포츠 고용계획(Plan sport emploi)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스포츠 단체의 관리 운영을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단체가 스포츠 지도자 및 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5년간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있다. 5년간의 보조금 액은 1년째가 1만 유로, 2년째가 7,700 유로, 3년째가 4,600 유로, 4년째가 3,100 유로, 5년째가 1,600 유로로 서서히 감액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다. 이 스포츠 고용 대책은 스포츠의 전문직업화 정책으로 있는 것과 동시에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과학.기술(STAPS) 등의 대학 전문과정을 졸업해서 스포츠 관련의 면허를 소지하는 자에 대한 실업대책으로서의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스포츠연맹의 사이에서 고용목표 계획이 체결되고, 이 고용목표 계획에 따라 정부가 조성을 행한다. 이 계획에 근거해서 스포츠연맹의 간부 직원 등의 고용이 확보되고 있다.

스포츠 또는 추진부문에서 단체에 대해서 조성이 이루어지는 특수고용 계약의 타입으로서는 취로(就勞)지도 계약(contrats d'accompagnement dans l'emploi: CAE)과 장래계약(contrats d'avenir: CAV)의 2가지가 있다. 2005년 이후의 스포츠 관계 단체에서 특수고용 계약 수는 <표 4-10>와 같이 있다. 또한, 취로지도 계약 및 장래계약은 2010년에 폐지되고, 현재는 통일 신입 계약(contrat unique

d' insertion: CUI)으로 통합되고 있다.

표 4-10. 조치의 실시 이후 생긴 취로지도 계약(CAE) 및 장래계약(CAV)의 수(2005)

고용하는 단체의 타입	CAE	CAV	합계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스포츠 활동	37,410	4,719	42,129
교육활동	43,310	6,187	49,497
그 외의 단체	100,674	27,293	127,967
합계	181,394	38,199	219,593

출처: CNASEA/DARES

(2010년 6월 30일 조사)

또한, 스포츠고용 계획에 의한 청소년의 고용의 상황은 <표 4-11>와 같이 있다.

표 4-11. 「청소년·스포츠」 분야의 청소년 고용의 사람 수

고용자의 범주	계약의 타입	사회문화 추진자	스포츠 추진자	그외 추진자 또는 교육자	지역개발 추진자	단체관리 직원	그 외	합계
합계	합계	1,526	2,014	2,819	1,503	1,318	665	9,845
	유기계약	668	683	1,283	526	414	239	3,813
	무기계약	858	1,331	1,536	977	904	426	6,032
단체	합계	1,274	1,925	2,303	1,291	1,254	630	8,677
	유기계약	425	602	821	334	366	209	2,757
	무기계약	849	1,323	1,482	957	888	421	5,920
지방공동 단체	합계	199	73	355	133	33	30	823
	유기계약	197	73	349	133	32	29	813
	무기계약	2	0	6	0	1	1	10
그 외	합계	53	16	161	79	31	5	345
	유기계약	46	8	113	59	16	1	242
	무기계약	7	8	48	20	15	4	99

출처: fichier CNASEA/DARES. Traitement: Mission Statistique-Ministère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Vie Associative (mai-2007)

5. 스포츠관련 단체 조직과 스포츠 정책의 관계

1) 국내 스포츠 총괄단체

(1)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Comité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CNOSF)

① 설립배경·특징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Comité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CNOSF)는 1972년에 전국스포츠위원회(Comité national des sports: CNS, 1908년 설

립)와 프랑스올림픽위원회(Comité olympique français: COF, 1952년에 CNS으로부터 독립해서 설립)가 통합하고, 공익성 승인 비영리사단으로서 설립되었다. 2011년 현재, 동 위원회는 스포츠법전 제1편 제4장 제1절의 제L.141-1조부터 제L.141-5조에 규정되고, 법률에 근거 프랑스에서 스포츠 운동 조직(movement sportif)을 대표하는 지위와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행정의 감독 하에 프랑스 스포츠를 대표하는 것. ② 올림픽·스포츠를 규율하고 있는 여러 규칙을 준수시키는 것. ③ 프랑스 스포츠 선수의 올림픽대회에의 참가를 확보하는 것. ④ 계획에 근거해서 스포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장려하는 것. ⑤ 가맹하는 스포츠연맹에 대해서 유효한 조성을 행하는 것. ⑥ 재판 외의 스포츠 전문의 분쟁해결기관으로 있는 조정인 회의를 설치하여 스포츠 조정을 행하는 것. |
|--|

또한,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의 사업 활동은 다음의 6개 항목으로 크게 나뉜다.

항목	활동내용
① 스포츠와 사회	단체, 자원봉사, 문화활동, 교육활동, 고용, 연수교육, 자격 등의 촉진
② 스포츠와 지역	지역에서 스포츠의 추진, 시설정비, 지방공공단체와의 협력, 지속적인 환경과 개발
③ 스포츠와 높은 수준	높은 수준 스포츠에 관한 활동, 올림픽 등 국제적 이벤트의 개최 및 유치활동
④ 스포츠와 실천의 다양성	기업 스포츠의 지원, 경력 지원, 건강, 사회에의 연대·통합, 성희롱방지, 폭력대책, 여성 및 장애자의 기회 평등을 위한 활동
⑤ 의사위원회	도핑 대책 및 건강에 관한 의과학적인 활동
⑥ 국제관계	주로 유럽평의회, 독일과의 국제관계

② 조직 구성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는 스포츠연맹, 스포츠단체, 스포츠클럽 및 그 회원으로 구성되고, 96개의 스포츠연맹과 17만5,000 개의 스포츠단체가 가맹하고 있다.

지방조직으로서 28개의 주(州)올림픽스포츠위원회(Comité régional olympique et

sportif: CROS), 96개의 광역자치단체 올림픽스포츠위원회(Comité départemental olympique et sportif: CDOS), 3개의 해외 광역자치단체 올림픽스포츠위원회(Comité territorial olympique et sportif: CTOS)가 있다.

동 위원회의 내부조직은 지휘기관, 자문기관 및 관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휘기관에는 총회, 이사회, 집행부, 회장이 있다. 총회는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의 종합적인 정책을 결정하여 감독한다. 매년 개최되고, 동 위원회의 관리, 윤리 및 재정 상황에 관한 연차보고를 심사한다. 또한, 이사 및 회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동 위원회의 종합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집행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 위원회의 관리 운영을 감독한다. 이사는 합계로 45명을 두고, 그 가운데 43명이 2009년 5월 19일의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있고, 나머지 2명이 프랑스인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으로 있다.

집행부는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의 명성 하에 동 위원회의 광범위한 일상의 관리운영 업무를 행한다. 회장, 사무국장, 경리국장을 포함하는 7명으로 구성된다. 그 외의 집행부 임원은 부회장으로서 각 부국(部局)을 대표하고 있다. 더욱이, 회장을 보좌하기 때문에 약간 명의 부회장을 집행부의 회의에 참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회장은 4년마다 총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또한, 자문기관에는 회의, 위원회, 연맹간평의회가 있다. 회의로서는 4개의 회의가 있다. 위원회에는 크게 나뉘 2개의 위원회(조직내 위원회, 실행위원회)가 있고, 각각에 5개의 위원회가 포함된다. 연맹간평의회는 8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③ 예산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의 2009년 연차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예산은 <표 4-12>와 같이 있다. 지출의 내역을 보면 스포츠와 높은 수준, 운영, 대규모 이벤트의 순으로 지출이 크다. 수입은 국립스포츠진흥센터(CNDS)로부터의 조성이 많고, 행사용과 운영용의 수입 합계액은 2009년도 예산의 52.9%에 이른다. 또한, 수입의 항목별에서는 마케팅 수입이 가장 크다.

표 4-12.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 (단위: 유로)

지출	2010	2011
운영	3,604,800	3,187,600
관리·재무국	1,528,700	1,636,700
마케팅	1,525,000	1,610,000
커뮤니케이션	990,000	1,080,000
대규모 이벤트	2,617,000	763,000
TV	850,000	-
국제관계	555,000	351,000
스포츠와 지역	1,047,500	1,157,500
스포츠와 사회	807,500	801,000
스포츠와 다양성	614,000	709,000
스포츠와 높은 수준	4,216,533	1,313,000
합계	18,356,033	12,608,800
수입		
스포츠 운동 조직재원(CIO, COE···)	329,000	149,600
CNDS 운영비용	5,100,000	5,200,000
CNDS 행사용	4,349,333	730,000
마케팅	6,681,400	5,835,000
그 외 보조금	246,700	246,700
그 외 CNOSF의 재원	1,149,600	947,500
합계	17,856,033	13,108,800

출처: CNOSF, Rapport d' activités 2009, p.55

(http://franceolympique.com/files/publications/Rapport_annuel/RapportAnnuelCNOSF2009.pdf)

④ 그 외

(a) 지적 재산권의 소유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는 국내 올림픽위원회로서의 지위도 있고, 국내의 올림픽 엠블럼(emblem) 소유자, 올림픽의 모토(motto), 찬가, 심볼(symbol) 내지 「올림픽경기대회」 및 「국제올림픽대회」의 단어 수탁자(depositaire)로 있고, 지적 재산권이 있는 것이 스포츠법전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b) Podiums 2010 du sport français

프랑스의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 등의 국제적인 경기성적에 관해서는 「podiums 2010 du sport français」로서 경기별, 개인별, 지역별 등으로 나눠 상세한 결과가

보고 분석되고 있다.

(2) 국내 스포츠연맹

스포츠연맹이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포츠 종목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비영리 사단의 연합회인 것으로 있다. 스포츠연맹은 비영리 사단 계약에 관한 법률(1901년 7월 1일 제정)에 따라서 법률상의 비영리 사단(association)으로서 설립된다. 또한, 스포츠연맹은 완전하게 독립해서 그 활동을 행하는 것이 보장받고 있다.

스포츠연맹은 그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것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스포츠연맹이 등록증을 직접 교부하는 개인, ②스포츠연맹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포츠 종목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스포츠연맹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허가하는 영리조직(organismes à but lucratif), ③스포츠연맹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포츠 종목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해당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포츠 종목의 발전에 공헌하는 조직, ④스포츠 회사.

스포츠연맹에는 「허가된 연맹(Fédérations agréées)」와 「권한을 위임 받았던 연맹(Fédérations délégataires)」가 있다. 「허가된 연맹」이란 공공 서비스의 임무 집행에 참가하기 위해서, 특정의 의무적인 규정(obligatoires des statuts) 및 표준 규칙(règlement)에 따른 징계 규칙(règlement disciplinaire)을 포함하는 정관을 채택한 연맹에 대해서 스포츠담당 장관에 의해서 인가(agrément)가 교부되는 스포츠연맹인 것으로 있다. 이 정관의 의무적 규정 및 표준 징계 규칙(règlement disciplinaire type)은 프랑스올림픽스포츠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후에 Conseil d'État(국무원)의 회의의 결정을 거친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다. 허가된 연맹은 신체적 및 스포츠적 활동의 발전과 민주화에 관한 공공 서비스의 임무 실행에 참가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허가된 연맹」은 ①의무적인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전국 규모의 기관, 또는 주(州)·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기관에 위임하는(confier) 것, ②임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특히 기관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서류에 접근하는 것, ③정부의 직원(personnels) 및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는 관료조직(agents publics)의 지위를 지닌 스포츠 전문기술고문지도원(conseillers techniques sportifs)에 의해서 임무가 이루어

지는 것, ④가맹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 또는 해당 사단내의 동의를 얻었던 특정의 부문을 위해서 생산물 또는 서비스의 매입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집단적 이익 계약(contrat d'interet collectif)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권한을 위임받았던 연맹」이란 각 스포츠 종목에 있어 일정한 기간당 하나의 허가받았던 연맹만이 스포츠담당 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는 스포츠연맹인 것으로 있다. 「권한을 위임받았던 연맹」은 ①국제적, 전국적, 주(州)의 또는 광역 자치단체의 선수권이 교부되는 스포츠경기대회를 조직하는 것, ②대응하는 선발을 행하는 것, ③높은 수준의 스포츠맨, 코치, 심판 및 심판의 명부, espoir⁵⁾ 스포츠맨의 명부 내지 트레이닝 파트너의 명부에의 등록을 제안하는 권한이 위임되고 있다. 또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연맹」은 ①그 종목에 적합한 경기 규칙, ②그 등록증 소지자에게 공개되는 모든 행사의 조직에 관한 규칙, ③조직되는 스포츠경기대회의 참가를 위해서 필요한 스포츠시설의 기준(normes)과 관한 연맹 규칙의 시행조건(conditions d'entrée en vigueur)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유일 「권한을 위임받았던 연맹」만이 ①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포츠 종목명의 후에 뒤에 이어서 「프랑스연맹」 또는 「전국연맹」의 명칭(appellation)을 사용하는 것, ②「프랑스팀」 및 「프랑스 챔피언」의 명칭을 수여 또는 수여하게 하는 것, ③그 정관, 계약, 서류 또는 광고(publicites)에 있어 그것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그 외의 스포츠 조직

(1) 기초자치단체 스포츠 조직과 그 전국연맹

프랑스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3만 이상 있고, 그 대부분은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각각 기초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수준에서는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스포츠 조직(Office municipal des Sports: OMS)이라는 민간의 스포츠조직이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지역 스포츠의 진흥을 행하고 있다. 또한, 이 기초자치단체 스포츠 조직의 전국적인 연

5) espoir란 높은 수준 스포츠맨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대표기술총괄자가 유망선수로서 그 능력을 인정한 선수인 것으로 있다.

합조직으로서 기초자치단체 스포츠 조직 전국연맹(Fédération nationale des offices municipaux du sports: FNOMS)이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스포츠 조직은 지역에서 스포츠의료센터(Centres de medecine du sport: CMS)를 설치하고 있다.

3) 스포츠단체

(1) 스포츠 비영리 사단

스포츠 비영리 사단(associations sportives)이란 스포츠를 목적으로 해서 비영리 사단 계약에 관한 법률(1901년 7월 1일 제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던 비영리 사단(associations)인 것으로 있고, 지역의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연맹이 해당한다. 일반 비영리 사단에는 무신고 비영리 사단, 신고 비영리 사단, 공익성 승인 비영리 사단의 구별이 있다. 게다가, 스포츠 비영리 사단에는 일반 스포츠 비영리 사단 외에 학교 및 대학의 스포츠비영리 사단, 장애자를 위한 스포츠 비영리 사단, 기업의 스포츠 비영리 사단 등의 구별이 있다. 스포츠 비영리 사단은 조건에 근거해 허가되었던 경우에 정부의 원조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인가 기준으로는 스포츠 비영리 사단은 민주적인 운영, 관리의 투명성 및 집행기관(instance dirigeantes)에의 남녀 평등한 접근의 보증을 정관 규칙에 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허가되었던 연맹」으로부터 교부받았던 등록증의 소지자로 있고, 해당 연맹 또는 그것에 가맹하는 비영리 사단의 가운데에서 자원봉사로서 관리 및 지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스포츠 비영리 사단의 지휘자(dirigeants: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는 그 직무에 관련한 연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노동법전 제L.931-1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휴가의 수익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스포츠 비영리 사단(associations sportives sur le lieu de travail)은 공공 행정 및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1983년 7월 제 83-634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에서는 노동법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설립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2) 스포츠 회사

스포츠연맹에 가맹하는 모든 스포츠 비영리 사단은 Conseil d'État(국무원)의 회의를 거친 법령에 의해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유료의 스포츠 행사의 조직에 습관적으로 참가하거나 또는 총액이 Conseil d'État(국무원)의 회의를 거친 법령에 의해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로 몇 명의 스포츠맨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활동의 관리를 위해서 상업법전에 따른 상사(商事)회사로서 스포츠회사(sociétés sportives)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이 수입액 및 보수액이 한도 이하의 스포츠 비영리 사단으로 있더라도 그 경제적 활동의 관리를 위해서 스포츠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스포츠회사의 정관은 법령에 의해서 정한 표준 정관에 따라야 한다.

스포츠회사의 형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유한책임 스포츠인기업(enterprise unipersonnel sportive), ②스포츠목적 주식회사(sociétés anonyme à objet sportif), ③전문가스포츠 주식회사(sociétés anonyme sportives professionnelle).

스포츠목적 주식회사는 그 자본이 기명식 주식에 의해서 구성되고, 자금을 공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휘기관에서 선임 받았던 자는 직무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스포츠 비영리 사단은 설립한 스포츠목적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총회에서 의결권이 적어도 3분의 1을 보유한다. 집행청은 스포츠목적 주식회사의 의결권을 주고 또한 자본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명의의 양도에 관해서 그 조건 또는 효과가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일한 개인이 동일 스포츠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목적 주식회사 1사 이상에 관해서 상업법전 제L.233-16조의 의미에서 감독(contrôle)을 유지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다. 스포츠회사에 있어 자본 참가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의결권을 주는 명의의 소지인은 동일 스포츠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스포츠회사에 대한 임차에 동의하는 것, 스포츠회사를 위해서 보증인(caution)으로 되는 것, 보증금 공탁(cautionnement)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다. 게다가, 유한책임 스포츠인기업 및 스포츠목적 주식회사의 수익은 준비금의 설정으로 충당되고, 어떠한 배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지방 스포츠공사 자본혼합회사(sociétés d' économie mixte sportives locales)

위의 스포츠회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29일 이전에 설립되었던 지방 스포츠공사 자본혼합회사는 이전의 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방 스포츠공사 자본혼합회사는 지방공공단체 및 그 단체가 스포츠공사 혼합회사의 자본에 참가하는 회사인 것으로 있다. 이 지방 스포츠공사 자본혼합회사는 회사의 정관 및 자본에 관한 규정은 스포츠회사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

프랑스의 스포츠단체는 스포츠법전 등의 관계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특별한 지위와 권리 의무가 인정된 특별한 법인으로서 규율되어 통제받고 있다.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연맹이 스포츠 운동 조직의 구성 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상의 스포츠 비영리 단체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연맹의 행위는 공공 서비스의 임무 집행에 참가하고 있다고 간주되고, 더욱이 권한의 위임에 근거해 특별한 공권력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스포츠연맹의 행위 및 결정은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이 인정되고 있고, 스포츠연맹이 내린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재판의 대상으로 된다.

또한, 스포츠연맹은 특정의 스포츠 종목 또는 활동에 관해서 스포츠의 진흥을 담당하는 공익적인 단체로서 정부로부터의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법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로부터의 조성 대상으로도 되지 않는다. 스포츠연맹이 정부로부터 인가받기 위해서 채용해야 하는 의무적 규칙으로서는 회의 목적, 조직 구성, 총회, 회장, 지휘기관, 회계감사, 정보공개, 정관 변경, 해산, 민주적 운영, 회계의 투명성, 남녀평등 접근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스포츠연맹 내에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의 표준 징계규칙으로서 내부의 징계기관의 절차, 도핑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4) 그 외

(1) 스포츠계 전체와 스포츠 행정의 연계

정부와 스포츠 운동 조직의 사이에는 공존협력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 양자의 파트너십 관계는 양자의 대표로 있는 스포츠담당부와 프랑스로림픽스포츠위원회의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2002년에는 정부와 스포츠 운동 조직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스포츠전국회의(Etat généraux de sport)가 개최되고, ①스포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②연맹 모델의 장래, ③스포츠의 사회적 교육적 기능, ④스포츠와 지역, ⑤전문 스포츠의 위치, ⑥스포츠와 건강에 관해서 앞으로의 스포츠 정책의 방향성이 협의되고, 기본원칙이 제시되었다.

제4절 중국의 사례

1. 스포츠 담당 기관

1) 중앙조직

(1) 국가체육총국

중국의 스포츠 행정조직은 1949년의 신중국 건국이후는 국무원직속의 행정기구로 있는 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 의해서 소관되어져 왔다. 그러나 1978년부터 2001년에 걸친 국무원의 기구 개혁에 동반해서 국가체육운동위원회는 1998년에 국가체육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 of China)으로 개편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중국의 최고 국가행정기관, 국가권리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있다. 국무원은 게다가 ①국무원 변공청(弁公廳), ②국무원 구성부문, ③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④국무원 직속 기구, ⑤국무원 집행기구, ⑥국무원 직속사업 부문, ⑦국무원부위원회 관리 국가국, ⑧국무원의사협조기구의 8개의 조직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체육총국은 이 가운데 국무원 직속기구의 하나로 있다.

국가체육총국의 내부 부국(部局)은 변공청(弁公廳), 대중체육국(群體司), 경기체육국(競體司), 청소년국(靑少司) 등 13개의 기관국과, 각 스포츠종목의 운동관리센터(운동관리 중심, 22개), 안티도핑기구, 체육과학연구소, 운동의학연구소, 북경체육대학, 운동학교(3개), 스포츠 복권(체육복권)관리센터, 체육기금관리센터 등을 포함하는 43개의 직속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체육총국의 주요한 임우로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육·스포츠정책의 법규와 발전계획을 연구 제정하고, 그 실시를 감독하는 것. ② 체육·스포츠의 체제 개혁을 지도추진하고, 체육·스포츠의 발전 전략을 지정하고, 체육·스포츠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편성하고, 조화롭게 지역의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 ③ 「전민건신계획(全民健身計劃)」을 추진하고, 모든 중화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신체활동의 기회와 참가를 증가시키는 것. ④ 중국의 경기 스포츠의 발전을 계획하고, 전국적인 스포츠 이벤트 및 경기대회를 조정(coordinate)하는 것. ⑤ 도핑 및 그 외 경기에 있어서 부정을 없애는 것. ⑥ 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다른 국가 및 지역, 특히 홍콩특별행정구, 대만지구 및 마카오지구와의 협력을 깊게 하는 것. ⑦ 주요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의 참가를 추천하고, 또한 중국에서 이벤트를 주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⑧ 스포츠의 연구와 개발을 통괄하고, 그 주요한 성과의 적용을 촉진하는 것. ⑨ 스포츠산업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스포츠의 시장을 발전시켜 스포츠 비즈니스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 ⑩ 국내 스포츠단체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 ⑪ 국무원으로부터 위탁받았던 그 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 |
|--|

특히 국가체육총국의 새로운 임우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의 기회 및 참가를 증가시키는 것 및 스포츠산업 및 스포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2) 교육부

중국에서는 스포츠정책의 관할에 있어서 스포츠 전반을 소관하는 국가체육총국과 학교체육을 소관하는 교육부로 나뉘지고 있다(다만, 대학 등 전문 체육고등학교

에 관해서는 북경체육대학과 같이 국가체육총국이 직접 관할하는 경우와 지방정부, 지방체육국 및 국가체육총국과의 사이에서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의 체육·위생·예술교육국은 학생이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 예술교육 등에서 교류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교재의 개발 및 전문 교사의 양성을 기획하고, 학교 국방교육과 학생 군사훈련 업무를 지도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육위생·예술교육국의 조직은 체육위생부와 예술교육부로 구성된다. 체육위생부는 학교체육과와 위생·건강교육과로 구성된다. 게다가 학교체육과는 교육과정계, 과외 체육활동계, 체육훈련·경기계, 교사양성계, 통합정보계로 구성된다.

2) 지방조직

중국의 행정구획은 기본적으로 성(省), 현(縣), 향(鄉)이라는 3단계제로 되어져 있다. 전국 수준의 행정구획으로서는 22개의 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북경, 천진, 상해, 중경), 2개의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가 있다. 성(省)에는 자치주(州), 현(縣), 자치현(縣), 시(市)를 두고 있고, 현(縣)에는 향(鄉), 민족향(民族鄉; 소수 민족 거주 지역), 진(鎮)을 두고 있고, 직할시 및 비교적 큰 시에는 구 및 현을 두고 있다.

지방체육국은 현(縣), 자치구(自治區), 시(市)에 설치되어져 있다. 국가체육총국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현, 자치구 및 시의 체육국으로서 중국의 현·자치구·시의 체육국 편람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내역은 성(省)의 체육국이 22개, 자치구의 체육국이 5개, 시의 체육국이 10개, 그 외가 1개로 있다.

중국체육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체육 사업경비, 체육 기본건설 자금을 재정 예산 및 기본건설 투자계획에 편입, 체육사업에의 투입을 순차 증가해야(제41조) 한다고 되어져 있다. 또한, 체육행정부문은 몸을 튼튼히 함(健身), 경기 등의 체육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 그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제44조) 한다고 되어져 있다.

2. 스포츠관련 법

중국의 스포츠 법은 1995년 8월 29일에 제정되었던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회 회의통과, 이하 「중국체육법」으로 생략한다.)을 기본으로, 관련하는 행정 법규, 중앙문서, 부문 규정(행정 명령), 규범성 문서 및 지방 입법에 의해서 계층화되어져 있다. 또한, 중국의 스포츠 법은 생활스포츠 및 경기스포츠에 관계하는 법령만이 아니고, 스포츠의 경제, 인사, 자격, 교육, 선언, 외교 등 광범위한 규정이 있고, 스포츠 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져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중국체육법)

중국체육법(1995년 8월 29일 제정)은 중국의 건국이후 첫 번째로 되는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기본법으로 있고,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체육, 제3장 학교체육, 제4장 경기체육, 제5장 체육 사회단체, 제6장 보장 조건, 제7장 법률 책임, 제8장 부칙의 전체 8장 56조로 구성된다. 다만, 스포츠 용품·용구의 검정에 관한 제47조의 규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및 사회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09년에 삭제되었다.

중국체육법의 구조상 특색으로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 ① 학교체육, 사회체육 및 경기체육으로 활동 영역이 크게 나뉘져, 학교체육과 스포츠의 양쪽이 정해져 있다.
- ② 체육 사회단체에 관한 장을 마련, 체육총회 및 중국올림픽위원회 등 스포츠에 관련하는 단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에 의한 진흥책뿐만 아니라 민간 스포츠단체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 ③ 인권, 윤리, 도핑, 중재, 표장(標章), 국제교류 등 국제적인 스포츠 정책 법규의 동향을 도입한 규정이 있고, 동시에 중국의 체제에도 적용한 여러 조치를 정하고 있다.
- ④ 체육사업의 계획 경제에의 도입과 관리 체제를 정하고 있다(3조).
- ⑤ 청년·소년·아동(5조), 소수 민족(6조)의 체육활동 보장, 고령자, 장애자의 체육활동 장려(16조)에 관해서 정하고 있고, 인권 등에 배려한 규정이 있다.
- ⑥ 대외 체육교류의 원칙과 관련하는 국제 조약을 준수하는 원칙(9조)을 정하고 있고, 국제교류가 큰 정책 방침의 하나로서 열거되어 있다.
- ⑦ 사회체육 활동의 정책 주체로서 정부만이 아니고, 도시·농촌(12조), 기업·사업조직(13조), 노동조합(14조), 민족(15조), 고령자·장애자(16조) 등의 조직 등 구성단위를 정하고 있다.
- ⑧ 교육행정 부문 및 학교체육상의 구성 부분으로서 체육을 인정(17조), 학교체육을 필수로 하고(18조), 국가체육 단련표준의 실시 및 체육활동 시간의 보증을 정하고 있다(19조). 또한, 과외 체육활동 및 전교 체육운동회의 조직(20조), 체육교사의 배치와 근무·대우면의 보장(21조), 학교체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용도(22조), 학생체격 건강검사제도(23조) 등 여러 조치를 정하고 있다.
- ⑨ 제4장에서 경기스포츠에 관한 구체적인 여러 규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선수의 선발 양성만이 아니고, 전문직화 및 경력 지원에 배려해서 직업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⑩ 경기에 있어서 공평경쟁의 원칙, 도덕의 준수, 부정행위의 금지를 열거하고 있고, 또 분쟁이 생긴 경우의 중재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다(33조).
- ⑪ 경기대회의 명칭, 기, 마스코트 등의 표식 등 지적재산의 보호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35조).
- ⑫ 제5장에서 사회체육 단체를 규정하고, 각종 단체의 역할, 조직, 활동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 ⑬ 제6장의 보장조건에서는 관련하는 예산, 세금 등이 정해져 있고, 법률 및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이 있다.
- ⑭ 제7장의 법률 책임에서는 규율 위반, 도핑위반, 경기 승부조작, 도박, 부정 유용, 불법점거, 소동 등의 각각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정하고 있다.

2) 스포츠에 관한 행정 법규, 중앙문서, 부문 규정(행정 명령), 규범성 문서

(1) 행정 법규

스포츠에 관한 행정법규로서는 국가체육 단련표준 시행방법(1990년 1월 6일), 학교체육 업무 조례(1990년 3월 12일), 중국내방 외국인 등산관리방법(1991년 8월 29일), 국무원 변공청(弁公廳) 전발(轉發), 국가체육총국, 민정부, 공안부의 건신기공활동(健身氣功活動)의 관리에 관한하는 문제에 관해서 의견 전달(1999년 8월 29일), 올림픽표식보호조례(2004년 1월 13일), 복권관리조례(2009년 5월 4일), 전민건신조례(全民健身條例, 2009년 8월 30일) 등이 있다.

(2) 중앙문서

스포츠에 관한 중앙문서로서는 중공공화국무원, 청소년의 체육 강화 및 청소년의 체질 증강에 관한 의견(2007년 5월 7일), 국가체육총국, 민정부, 공안부의 건신기공활동(健身氣功活動)의 관리에 관한하는 문제에 관해서 의견(1999년 8월 29일), 국가체육위원회, 현급(縣級)체육사업의 개혁 심화 및 발전의 가속에 관해서 의견(1996년 11월 25일), 전민건신(全民健身) 계획 개요(1995년 6월 20일 공시), 중공중앙 국무원, 새로운 시기 체육업무의 강화 개선(改進)에 관해서 의견(2002년 7월 22일) 등이 있다.

(3) 부문 규정(행정 명령)

스포츠에 관한 부문 규정으로서는 사회체육지도원기술등급제도(1993년 12월 4일), 체육통계업무관리방법(1991년 12월 6일), 체육사업 제15기 계획(2006년 7월 11일), 체육도덕건설의 강화에 관한 의견(2002년 11월 18일), 2001-2010년 체육개혁발전개요(2000년 12월 15일), 전국자동차경기관리규정(2001년 10월 12일), 전국적 체육사회단체 잠정관리 방법(2010년 2월 3일) 등이 있다.

(4) 규범성 문서

중재위원회 조례(1982년 7월 29일 공시) 등이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학교체육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1995년 3월 18일 제정) 제44조는 교육, 체육, 위생의 행정부문, 학교 및 그 외 교육기관이 체육, 위생보건시설을 정비하고, 학생의 심신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체육에 관해서는 학교체육업무 조례(1990년 3월 12일 공시)에 의해서 체육에 관한 교육과정, 과외 체육활동, 방과 후 체육훈련 및 경쟁(과외체육 훈련 및 경기), 체육교사, 체육시설, 조직·관리, 장려·별칭 등이 정해져 있다.

3. 스포츠관련 예산, 자원, 세제

1) 스포츠관련 예산

(1) 스포츠 예산 총계와 스포츠 재정 지출액

중국의 「전국 재정지출」(중앙 재정지출과 지방 재정지출의 합계)에 있어서 예산 항목에 관해서는 2008년도 이전은 스포츠(원어는 「체육」), 문화 및 방송에 관한 예산은 합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2005년과 2006년의 전국 재정지출의 예산 총계는 각각 3조2,255억300만원(실제 재정 지출액 3조3,930억2,800원)과 3조8,373억3,800만 원(실제 재정 지출액 4조422억7,300만원)으로 있고, 그 가운데 문화·방송사업 예산(스포츠 사업을 포함하는)은 2005년이 644억6,500만원, 2006년이 769억1,000만원, 실제의 재정 지출액이 각각 703억4,000만원과 841억9,800만원으로 있고, 2005년·2006년 모두 연간의 예산 총계의 2.00%, 전국 재정 지출총액의 2.07%와 2.08%를 차지하였다.

2007년의 전국 재정 지출예산 총계는 4조6,514억8,500만원(실제 재정 지출액 4조9,781억3,500만원)으로 있고, 그 가운데 문화·스포츠·미디어사업 예산이 809억7,200만원, 실제 재정 지출액이 898억6,400만원으로 있고, 예산 총계의 1.74%, 전국 재정

지출총액의 1.81%를 차지하였다.

2008년 및 2009년의 전국 재정 지출에 있어서는 스포츠(원어는 「체육」) 예산이 단독으로 예산 항목으로서 계상(計上)되었다. 2008년의 전국 재정 지출예산 총계는 6조1,386억원(실제 지출총액 6조2,592억6,600만원)으로 있고, 그 가운데 스포츠 예산은 206억9,500만원, 실제 재정 지출액이 205억2,900만원으로 있고, 예산 총계의 0.34%, 전국 재정 지출총액의 0.33%를 차지하였다.

2009년의 전국 재정 지출예산 총계는 7조6,235억원(실제 지출총액 7조6,299억9,300만원)으로 있고, 스포츠사업 예산은 237억2,700만원으로, 전년비 약 32억원 증가하고, 238억2,600만원이 실제로 지출되고, 예산 총계·전국 재정 지출총액 모두 0.31%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국 재정 지출은 중앙 재정지출과 지방 재정지출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지방 재정지출의 결산액은 2008년의 지출총액이 4조9,248억4,900만원, 스포츠 지출액이 191억8,800만원으로 있고, 2009년의 지출총액이 6조1,044억1,400만원, 스포츠 지출액이 225억3,600만원으로 있었다.

게다가, 중앙 재정지출은 중앙 관할 지출과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보조 지출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중앙 관할 지출의 결산액은 2008년의 지출 총액이 1조3,344억1,700만원, 스포츠 지출액이 13억4,100만원으로 있고, 2009년의 지출총액이 1조5,255억7,900만원, 스포츠 지출액이 12억9,000만원으로 있었다.

(2) 국가체육총국의 예산

2010년도의 국가체육총국 예산은 <표 4-13>와 같이 있다. 국가체육총국의 2010년도 예산 합계는 25억4,038만6,500원으로 있고, 그 가운데 소위 문화·체육·미디어사업의 예산이 가장 많고, 20억7,002만8,700원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그 외에도 교육예산으로 3억1,558만4,200원, 주택보장지출로 8,861만1,200원 등, 그 외의 예산 항목으로 지출액이 예산에 포함되어져 있다.

표 4-13. 국가체육총국의 예산(2010)

(단위: 만원)

외교	교육	과학기술	문화체육미디어	사회보장고용	주택보장 지출	합계
472.99	31,558.42	4,048.77	207,002.87	2,094.48	8,861.12	254,038.65

출처: 국가체육총국 홈페이지(2010년 4월 2일)에 근거 작성.

2) 재원

(1) 재정 투입

중국에서 스포츠의 재원은 주로 2개의 통로로 조달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의 스포츠사업에 대한 재정지출로 있고, 또 하나는 스포츠산업과 스포츠복권으로부터의 수익금으로 있다. 또한, 중국의 스포츠 재정의 규모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지출의 증가에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 4-14>는 중국에서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스포츠에의 자금 전체의 투입량의 50%에서 60%대에 있다. 스포츠에의 재정 투입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1993년부터 2001년에 걸쳐 약 30배 증가하였다. 더욱이, 2001년의 재정 투입액의 60억7,698만원과 앞에서 설명한 2009년의 전국 재정 지출총액의 238억2,600만원을 비교하면 대략 재정 지출이 4배 증가하고 있다.

표 4-14. 스포츠에 대한 자금 전체의 투입량 및 재정 투입량의 비교와 비율(1993-2001)

연도	전체의 투입량 (만원)	재정 투입 (만원)	투입량 증가율 (%)	재정 투입량 증가율 (%)	전체 투입량에서 차지하는 재정 투입량의 비율
1993	107,343	20,181	-	-	18.80
1994	230,042	133,515	114.30	561.59	58.68
1995	282,375	153,959	22.75	15.31	54.52
1996	395,398	207,653	40.03	34.88	52.52
1997	401,359	-	1.51	-	-
1998	568,139	387,039	41.55	-	68.12
1999	631,708	393,768	11.19	1.74	62.33
2000	868,452	476,006	37.48	20.88	54.81
2001	1,191,807	607,698	37.15	27.68	51.02

데이터 출처: 국가체육총국 경제사 「체육사업 통계 연람」

(2) 스포츠 복권 등에 의한 재원

중국에서는 복권의 발행은 스포츠사업을 위한 재원의 확보책으로 되어져 있다. 국가체육총국은 아시아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의 대형 종합적인 스포츠대회에 있어 스포츠 복권의 발행을 행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국 통일의 스포츠 복권 발행 제도의 확립에 관한 지시」를 제시하고, 중국인민은행,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의 서명을 거쳐 1992년 6월 18일에 스포츠 복권의 발행이 국무원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그 후, 스포츠 복권의 통일적 발행 제도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 1994년 4월 5일에 스포츠 복권 관리센터가 설립되고, 1994-1995년도에 10억원의 스포츠 복권이 발행되었다. 더욱이, 1998년에 공시되었던 「스포츠 복권 공익금 관리 잠정 규칙」에 근거해 스포츠 복권의 공익금이 주로 「전민건신계획(全民健身計劃)」과 「올림픽메달 쟁탈 계획」에 사용되는 것이 정해졌다. 특히 「스포츠 복권 공익금 관리 잠정 규칙」에서는 스포츠 복권의 년도 공익금 총액의 60%를 「전민건신계획(全民健身計劃)」에, 40%를 경기스포츠에 이용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수익의 용도에 관한 원칙이 정해졌다. 장기간에 걸친 스포츠사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 투입과 스포츠 복권 공익금의 모집은 중국에서 스포츠사업의 발전에 대해서 자금 면에서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전국 스포츠 행정 부문에서 사용되었던 스포츠 복권의 수익금 합계는 10억1,439만원으로 있고, 그 가운데 「전민건신계획(全民健身計劃)」에 6억7,903만원(총 지출액의 66.9%), 「올림픽 메달 쟁탈 계획」이 3억3,535만원(총 지출액의 33.1%)으로 있었다. 게다가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전민건신계획(全民健身計劃)」에서는 생활스포츠 활동의 추진에 대한 자금 원조가 1억1,178만원, 시민스포츠 시설·도구의 건설·설치가 5억1,923만원, 스포츠에 의한 중서부 지구의 빈곤구제책이 4,802만원으로 있었다. 한편, 「올림픽 메달 쟁탈 계획」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경기대회 관련 경비의 보전이 1억2,303만원, 경기시설의 정비가 2억1,232만원으로 있었다. 국가체육총국은 2001년부터 스포츠 복권의 수익금을 토대로 해서 북경, 대련 등의 전민보건활동센터의 설치를 행하였다. 또한, 스포츠 복권의 수익은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지역의 공공스포츠 시설의 건설에 사용되어졌다.

<표 4-15>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스포츠 복권의 발행액을 나타낸 것으로 있다. 2004년의 스포츠 복권 발행액은 154억1,963만원으로 있고, 1995년의 10억원으로 대략 15배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 후의 중국 스포츠 복권 판매액은 2008년이 456억1,530만원, 2009년이 568억7,374만원, 2010년이 694억4,600만원으로 있었다. 스포츠 복권의 판매액은 해마다 증가의 경향으로 있고, 3년 연속해서 100억 원을 초과하는 증가로 되어져 있다.

표 4-15. 중국의 스포츠 복권 매상과 공익금의 추이 (단위: 천원)

년	공익금	매상
1995	22,542.3	100,000.0
1996	28,747.1	120,000.0
1997	42,718.8	150,000.0
1998	75,951.7	250,000.0
1999	121,112.6	403,551.0
2000	274,591.8	911,400.4
2001	447,963.6	1,492,928.4
2002	762,059.9	2,177,314.0
2003	704,708.7	2,013,453.3
2004	539,687.2	1,541,963.5

출처: 중국 재무성 홈페이지의 정보에 근거해 작성.

중국의 스포츠 복권 종류는 다양하게 있고, 축구 복권(승패 예상/골 수 예상), 농구 복권, 종목선택 복권(36선7:22선5), 숫자 선택 복권(로또식 체육 복권 치싱차이(七星彩)) 등이 있다.

(3) 중화전국체육기금회

2009년 3월 12일의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중화전국체육기금회 규정」에 의하면 중화전국체육기금회(China Sports Foundation)는 다양한 조직, 개인 및 외국인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기금회의 취지와 합치하는 모집활동을 행하고, 각종 스포츠대회의 조직, 전국 우수 운동선수, 스포츠 시설의 건설 및 설비의 설치, 스포츠의 인재양성, 과학기술연구, 스포츠교류 등에 자금 원조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해 상호보험, 우수 운동선수 장학금 학업 조성금, 은퇴선수를 위한 기금, 중국 운동선수기금, 중국농구발전기금, 山花테니스기금, 중국 테니스운동발전기금, 수상운동선

수 공부도움(助學) 고용기금, 중국탁구발전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

3) 세제

(1) 문화·스포츠업에 대한 영업세의 면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 조례 실시 세칙」에 의하면 문화·스포츠업(문화·스포츠활동을 경영하는 업무)에 있어서 주요한 납세 항목으로서는 영업세, 도시유지 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이 있다. 문화·스포츠업에 관한 영업세의 세율은 3%로 있으며, 리그방식으로 문화 활동 및 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2) 빅 스포츠 이벤트에 있어서 세제 우대조치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빅 스포츠 이벤트에 있어서 세수에 관해서는 특수한 세제 우대조치가 있다. 2003년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는 「제29회 올림픽대회 세수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제29회 북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대회 참가자에 대해서 세제 면에서의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2009년에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3개의 국제적 종합경기대회의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2010년의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황주), 2011년의 제26회 세계 유니버시아드 하계경기대회(심수), 2009년의 제24회 세계 유니버시아드 동계경기대회(하얼빈)에 대하여 일련의 세수 우대조치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런 세제 우대조치에는 대회 조직위원회, 대회 참가자, 경기대회에 있어서 수입(스포츠 기재·장비품 등)의 3가지 세제 우대조치가 있다.

(3) 기부기증에 관한 면세 조치

국내기업에 의한 기부에 관해서는 중화전국체육기금회가 영수서를 발행하고, 주관의 세무부문의 심사를 거친 후, 해당년도에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3%이내 부분에

관해서 공제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국내의 개인으로부터 기부에 관해서는 일정의 비율에 따라 거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된다.

해외에서 기증된 스포츠 기재·장비품 등의 물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면세 취급으로 되어져 있다.

(4) 기업광고 선전 항목의 적용

기업으로부터 스포츠 사업에 대한 기부·찬조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에 의한 스포츠의 훈련·경기, 대형의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광고의 성질을 지닌 찬조자금은 기업 광고 선전 항목에서의 지출로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5) 스포츠 단체에 의한 스포츠 사업 수입의 소득세 공제

스포츠의 기구, 사회단체 등이 스포츠 활동 및 그 보조 활동으로 얻은 수입에 관해서는 사업수입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좋은 것으로 되어져 있다.

(6) 스포츠 훈련 경비 부담 경감조치:

스포츠 기재·장비품 등에 관한 세금의 환급 또는 특별 보조금 등의 지급

스포츠 팀의 훈련 조건을 개선하고, 훈련경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우수한 스포츠 팀의 훈련 또는 국제대회에 있어 사용이 규정되어 있는 수입 스포츠 기재·장비품 등의 경비에 관해서는 보고하고 허가된 후에 중앙 또는 지방의 재정부문은 납세 증명서에 근거해서 세금의 환급 또는 특별보조금 등의 지급을 행하고 있다.

4. 스포츠 기본계획

1) 중국체육사업 제12기 5개년 계획

국가체육총국은 2010년에 「중국체육사업 제12기 5개년 계획(초안)」을 제시, 다음 해인 2011년에는 초안을 수정하여 「제12기 5개년 계획」이 제정되었다.

「5개년 계획」에서는 정세분석을 토대로 한 속에서 그 후 5년간의 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도사상, 전체 목표, 기본원칙이 지적되고, 「대중체육(군중체육)」(국민스포츠), 「경기체육」(경기 스포츠), 「체육산업」(스포츠 산업), 「체육개혁」(스포츠 개혁), 체육법제(스포츠 법제)의 건설, 체육·교육, 과학연구, 인재양성, 체육·스포츠의 선언·교류 등의 면에 있어서 정책 방침이 정해져 있다.

국가체육총국은 더욱이 구체적인 각 분야의 전문적인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각 분야의 정세와 임무를 분석하는 것과 함께 추진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진흥책과 조치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11기 5개년 계획의 기간에는 다음의 각 계획이 제정되었다.

「제11기 5개년 계획 군중체육 사업 발전계획」 「경기체육 제11기 5개년 계획」 「체육산업 제11기 5개년 계획」 「체육법제 건설 제11기 5개년 계획」 「제11기 5개년 계획 전국체육 인재부대 건설 계획」 등

2) 생활스포츠 진흥시책

(1) 스포츠 참가 촉진 시책

① 전민건신계획(全民健身計劃)

1995년에 중국 국무원은 국민의 체격·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민건신계획(全民健身計劃) 개요」를 공시하고, 국민의 체육·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동 개요를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체육총국은 「눈 속에 탄을 보내다 프로젝트(雪中送炭)(번역: 다른 사람이 급할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즉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 원조하는 것)」, 「경로 프로젝트(路徑工程)」, 「전민건신활동센터(전민건신활동 중심)」 등의 대형 스포츠 프로젝트를 연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8월에 국무원은 「전민건신(全民健身) 조례」를 공시하여 「전민건신(全民健身) 편람」을 구체화한 것으로 하였다. 동 조례는 전민건신(全民健身) 계획, 전민건신(全民健身) 보장 및 대응하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과 함께 매년 8월 8일을 국가의 「전민건신(全民健身) 일」로서 정하고 있다.

(a) 눈 속에 탄을 보내다(雪中送炭) 프로젝트

중국의 속담에 있는 「雪中送炭」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가장 곤란하게 있을 때에 돕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을 행하는 장소, 스포츠 기재, 경비, 부족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많은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가체육총국은 스포츠 복권의 공익금의 일부를 국내의 경제가 발전해 있지 않은 지역과 나누어 분담, 이용하기 쉬운 공공 스포츠 시설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국가체육총국은 매년 스포츠 복권의 공익금으로부터 약 5,000 만원을 지출하여 「눈 속에 탄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할당하고 있다.

(b) 경로 프로젝트

중국정부는 1997년에 「1996년도 스포츠 복권 공익금을 전민건신 계획의 실시에 이용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공시하고, 스포츠 복권 공익금의 일부를 전민건신 계획의 실시에 충당, 일부의 도시 지역사회 및 농촌에 일정 수의 기자재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의 건신(健身; 몸을 튼튼히)활동에 이용하는 것으로, 생활스포츠에 있어서 건신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건신 경로(健身 路径)」 즉 「경로 프로젝트(路径工程)」란 이런 스포츠 시설의 한 가지 형식으로 있고, 사람들이 잘 지나가는 작은 도로에 각종 간단한 건신(健身; 몸을 튼튼히) 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의 건신(健身; 몸을 튼튼히)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있다. 2008년말의 시점에서 중국에서는 12기의 「경로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국가가 스포츠 복권 공익금 6억152억원(누계)을 투입해서 함께 8,727개의 건신(健身; 몸을 튼튼히) 경로가 건설되고 있다.

(c) 전민건신(全民健身; 전국민 몸을 튼튼히)활동센터

「경로 프로젝트」의 건설을 기초로 해서 국가체육총국은 스포츠 복권의 공익금을 활용해서 각 지역에서 종합적인 실내 시설을 메인으로 하는 「전민건신 활동센터」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부터 국가체육총국은 스포츠 복권 공익금을 자금의 일부로 해서 초기의 신규 건설의 지원으로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확장에 이르기까지, 2009년의 시점에서 이미 157구역의 「전민건신활동센터」의 건설을 자금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d) 전민건신(全民健身; 전국민 몸을 튼튼히)과 올림픽을 함께 행한다

2007년에 중국에서는 2008년의 북경올림픽대회가 스포츠 진흥에 가져올 영향력을 이용하고, 대대적으로 전민건신(全民健身; 전국민 몸을 튼튼히)활동의 추진을 행하였다. 국가체육총국은 「전민건신(全民健身; 전국민 몸을 튼튼히)과 올림픽을 함께 행한다」라는 테마 하에서 함께 65개 종목의 국민 체육·스포츠 활동의 추진을 행하였다. 이런 운동에는 전통적인 스포츠로 있는 용선(dragon boat), 사자춤 등의 종목 및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등산, 수영, 조깅, 사이클 등의 종목 외 스포츠 댄스, 피트니스 체조, 테니스, 롤러스케이팅 등의 스포츠 종목도 포함되어져 있다.

② 국민체질 모니터링(National Physical Fitness Surveillance)

중국에서는 이미 1981년에 「중국 학생 체질측정 테스트 및 건강조사 방안」이 실시되었다. 1996년에 「중국 성년인 체질측정 표준시행 규칙」이 실시되었다. 더욱이, 2000년에는 「국가 국민 체질 모니터링 센터」가 설치되고, 지방의 각 성(省)에도 「체질 모니터링 센터」가 설치되어 국민의 체질 측정 업무를 도급받는 것과 함께 국민의 체질 모니터링 업무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의 결과에 근거해서 「중국 성인 체질측정 표준」을 기초로 해서 「국민 체질측정 표준」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국가체육총국, 교육부 등 11개의 부(部)·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민 체질측정 표준 시행 방법」을 공포하였다. 2009년에 시행되었던 「전민건신(全民健身; 전국민 몸을 튼튼히) 조례」에서는 「국가가 정기적으로 국민의 체

질측정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결과가 전민건신(全民健身: 전국민 몸을 튼튼히)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된다」 것이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다.

2005년에 중국은 2회째의 국민 체질측정 업무를 완료하였다. 2010년 4월에는 3회째의 국민 체질측정의 실시를 시작하고 있다. 2010년 9월 20일의 시점으로, 전국의 모든 성도(省都)에서 이미 국민 체질측정 업무를 완료하고, 전국에서 합계로 해서 25만9,858명의 샘플이 모아져 있다.

(2) 어린아이들의 스포츠 진흥에 관한 시책

① 전국 억만 학생 햇빛(陽光) 체육운동

2006년 12월에 교육부, 국가체육총국은 공산주의 청년단 중앙과 공동으로 전국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전국 억만 학생 햇빛 체육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3-5년간의 사이에 전국의 85% 아동·학생에게 매일 1시간의 운동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운동능력 측정 기준」으로 합격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것으로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 2007년 5월에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은 「청소년 체육의 강화, 청소년의 체질 강화에 관한 의견」을 나타내고, 청소년의 체질을 강화하는 각종의 조치를 진심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각 학교 및 관계 단체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지도를 강화하고, 마음가짐을 하나로 해서 사회 전체로 청소년의 체육·스포츠의 업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전국 억만 학생 햇빛 체육 운동」을, 청소년의 체질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국제 경기력 향상 시책

(1) 경기력 향상 시책

① 올림픽 메달 쟁탈 계획

중국에서 「경기체육(Champion Sports)」란 금메달을 획득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높은 수준의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 2002년에 국가체육총

국은 이제까지의 1994-2000년의 「올림픽 메달 쟁탈 계획」에 이어서 새롭게 2001-2010년의 「올림픽 메달 쟁탈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의 목표는 2004년의 아테네올림픽대회와 금메달 획득 수에서 상위를 유지하고, 우세한 경기종목을 강화·확대하고, 2008년의 북경올림픽대회와 양호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있었다. 2004년의 아테네올림픽대회에서는 20-24개의 메인 경기종목과 120개 전후의 마이너(minor) 종목에서 세계의 상위 8위까지로 들어서고, 11-14개개의 메인 경기종목과 80개 전후의 마이너 경기종목에서 메달의 획득을 목표로 하였다. 2008년의 북경올림픽대회에서는 금메달 획득 수에서 제3위, 22-26개의 메인 경기종목과 160개 전후의 마이너 경기종목에서 세계 상위 8위까지로 들어서고, 14-16개의 메인 경기종목과 100개 전후의 마이너 경기종목에서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2008년의 북경올림픽대회에서 51개의 금메달, 21개의 은메달을 획득하고, 획득하였던 메달의 총 수는 100개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0년의 광주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199개의 금메달, 119개의 은메달을 획득하고, 메달의 총 획득 수는 416개에 달했다. 이처럼 「올림픽 메달 쟁탈 계획」의 각 항목의 목표도 달성되었다.

② 우수 운동선수 장학금·학업 조성금 시행 방법

문화교육의 면에 관해서 보면 중국의 스포츠 시스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중등전문학교), 대학이라는 다른 수준을 포함하는 운영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고, 문화적 소질이 높은 스포츠의 인재가 육성되고 있다. 2003년 11월에 중화전국체육기금회는 국가체육총국이 공포한 「우수 운동선수 장학금·학업조성금 시행방법」에 근거 전국적으로 우수한 스포츠 선수에게는 고등학업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장학금 및 학업조성금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7년 말의 시점에서 함께 5,475명의 스포츠 선수가 중화전국체육기금회의 조성금을 획득하고, 조성금의 총액은 2,586.2만원으로 되어 있다.

③ 신시대 스포츠 업무의 한층 강화개선에 관한 의견

중국에서 스포츠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스포츠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02년 7월에 중국공산당 중앙국무원은 「신시대 스포츠 업무의 한층 강화개선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생략한다)」를 제시하고, 스포츠, 재정, 인사, 노동보장 등의 부문에 대해서 아마추어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가 현역을 은퇴한 후의 밑바탕에 관한 정책 조치를 검토·제정하여 우수한 스포츠 선수를 장려하는 메커니즘과 장애보험 제도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확립하고, 스포츠 선수의 현역 은퇴 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스포츠시설 정비

① 전국체육시설 전면조사

중국에서는 2004년 국가체육총국, 국가통계국, 교육부, 철도부, 농업부, 문화부, 국가공상정관리총국, 국가관광국, 전국총공회가 합동으로 「제5회 전국체육시설전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조사는 1974년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중앙의 각 관계 부문과 각 성(省)의 협력 하에 약 30만명의 조사원을 총동원해서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하고 중국 국토의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한 것으로 있다. 그 결과, 1인당 스포츠 시설 면적은 1.03평방미터, 1인당의 스포츠 시설 건설 자금 투입액은 148.2원으로 있었다. 각 성(省) 자치구별로 스포츠 시설을 보면 스포츠 시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둥성(廣東省)」의 7만7,589개소(총 수의 9.1%)로, 가장 적은 곳은 「티베트 자치구」의 1,057개소(총 수의 0.12%)로 있었다. 한편, 국민에 대한 스포츠 시설의 개방 사용률은 낮고, 전국의 스포츠 시설의 가운데 학교체육 시설이 65.6%를 차지, 그 개방 사용률은 29.2% 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스포츠 시설이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은 현황이 과제로 되어져 있다.

2003년 12월 시점으로, 중국에서는 운동장·체육관은 합계로 850만880개소가 있고, 그 가운데 표준적인 스포츠 시설이 계 54만7,178개소, 전국의 스포츠 시설 총 수의 6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합계 64개 종류의 표준적인 스포츠 시설

이 대상으로 되어져 있고,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다이빙용 수영장 등의 「대규모 스포츠 시설」이 계 5,680개소, 실외 수영장, 실외 테니스 코트, 축구장 등의 「실외 스포츠 시설」이 계 48만5,818개소로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외 스포츠 시설의 가운데 농구 코트, 소규모 운동장, 배구 코트가 계 43만6,278개소로 표준적인 스포츠 시설 총 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5년에 실시되었던 「제4회 전국체육시설 전면조사」에서는 스포츠 시설 총 수가 61만5,693개소로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전민건신(全民健身: 전국민 몸을 튼튼히) 계획 편람에 의한 스포츠 시설 건설 계획

1995년의 전민건신 계획 편람에 의해 운동장·체육관이 급증하고, 1996년부터는 스포츠 복권의 공익금으로 스포츠 시설이 건설되었다. 1997년에는 국가체육총국이 스포츠 복권의 수익금으로 시(市), 사구(社區; 공동체) 및 농촌에 지역사회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였다. 2002년에는 산천(山川), 강하호해(江河湖海), 사막, 산림 등 자연자원과 시(市), 동(町)의 광장, 공원을 이용해서 환태호(環太湖) 체육권, 칭해호(青海湖) 민족 체육권, 북경 룡표(龍漂) 체육공원, 흑룡 강빙설(江冰雪) 체육장랑(體育長廊) 등의 스포츠 시설이 건설되었다. 2003년 말까지로 전국의 성(省), 직할시, 자치구, 시, 광역자치단체, 동, 촌에서는 지역사회 스포츠센터가 계 35개소, 지방의 소규모 스포츠 시설이 계 100개소, 자연이 풍부한 공원, 산, 바다, 천, 호수 등에도 스포츠 시설이 건설되고, 국민의 건강증진, 레저에 최대한 이용되고 있다.

2006년에 국가체육총국의 『「전국 건신(健身: 몸을 튼튼히) 계획 편람」 제2기 업무 제2단계(2006-2010) 실시계획』에 관한 통지에 의하면 스포츠 시설에 관해서 다음의 것을 열거하고 있다.

- ① 공공 지역사회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고, 국민에게 스포츠 시설을 개방하는 것.
- ② 농촌 지역에 공공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
- ③ 시(市), 동(町)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건설하는 것.
- ④ 자연지역을 이용해서 국민의 스포츠 거점을 건설하는 것.
- ⑤ 시(市), 동(町), 구 및 농촌의 경제 실용형인 공공성 스포츠 시설의 증가를 보장하는 것.
- ⑥ 교육부와 관련 부문이 협력하고, 국민에게 각 학교, 각 기관 및 회사 등의 스포츠 시설을 개방하는 것.
- ⑦ 적극적으로 사회자금을 도입해서 여가 등의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는 것.
- ⑧ 2010년에 1인당 스포츠 시설의 면적 1.40평방미터를 달성하는 것.

2009년에 중국 정부가 발표하였던 「전국민 건신(健身: 몸을 튼튼히) 계획 편람」에서는 공공 스포츠 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 국무원 변공청(弁公廳)이 발표하였던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에서도 공공 스포츠 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4) 스포츠의 보호 관련 시책

(1) 도핑에 관한 시책

중국 안티도핑기구(Chain Anti-Doping Agency: CHINADA)는 국가체육총국의 관리하에 2007년에 설립되었던 중국의 국내 도핑방지기관으로 있다. 동 기구는 북경올림픽센터에 설치되어져 있고, 도핑의 통제, 검사, 분석, 연구를 임무로 하고 있다. 동 기구가 설립되기 전은 1989년에 도핑분석연구소(Doping Analytical Laboratory)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후, 1993년에 중국 올림픽위원회 안티도핑위원회(Chinese Olympic Committee Anti-Doping Commission)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국가체육총국 및 중국올림픽위원회가 책임을 분담해서 동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었다.

(2) 사고보상·안전대책·보험관련 시책

사회적인 보험의 면에 있어서는 2002년에 국가체육총국으로부터의 위탁을 받아서 「중화전국체육기금회」가 전국의 우수한 팀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스포츠

선수에 대한 상해상조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취급의 기준은 특등으로부터 11등급까지의 12급으로 구분되고, 특등은 30만원, 11등급은 2,000원으로 되어져 있다. 2006년 말의 시점에서 누계의 가입자는 8만6,478명으로, 누계의 지불자 수는 6,865명, 누계의 지불 총액은 1,930만원으로 되어져 있다.

사회적 보장의 면에 관해서 보면 2006년에 국가체육총국, 재정부, 노동·사회보장부는 「스포츠 선수에 대한 사회보장업무의 한층 강화에 관한 통지」를 제정·공포하고, 중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보장사업이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것으로 되었다.

5) 스포츠 산업 관련 시책

(1) 스포츠 산업 정책 관련 시책 및 계획

①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등의 책정

스포츠 산업(중국어로는 「체육산업」이라고 말하지만, 본 항에서는 스포츠 산업으로 번역한다)에 관해서는 1993년에 구(舊)국가체육운동위원회가 「스포츠 시장의 육성, 스포츠 산업화의 진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는 것과 함께 제1회 전국스포츠산업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에 있어서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가체육운동위원회는 1994년의 「1994-1995년도 스포츠 복권 발행관리 방법」과 「스포츠 시장관리의 강화에 관한 통지」의 속에서 스포츠 복권과 스포츠 경영을 스포츠 산업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법제관리의 대상에 편입하였다. 1995년에는 「스포츠 산업 발전 편람(1995-2010)」이 발표되고, 중국의 스포츠 산업 발전의 지도적 사상, 목표, 정책적 조치가 제기되었다. 2000년에 국가체육총국으로부터 「2001-2010년 체육개혁과 발전 편람」이 공포되고, 앞으로 10년의 스포츠 산업의 발전 목표, 기본적 전략 및 WTO가맹 후의 발전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2006년 12월에 국가체육총국이 발표하였던 「스포츠 산업 『11기 5개년』 계획」에서는 「11기 5개년」의 기간중 중국의 스포츠 산업의 발전이 직면하는 정세가 분석되고, 해당 기간중 스포츠 산업의 발전 원칙과 목표가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6월의 「스포츠 및 관련 산업 분류(시행)」에 의해 스포츠 산업의

통계가 국가의 통계에 편입시키도록 되었다. 2010년 3월에는 국무원 변공청(弁公廳)에서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이 발표되고,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과 조치가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최초의 정책으로 있고, 중국의 스포츠 산업에 빠져 있던 국가 정책이 제시되는 것으로 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일련의 정책에 의한 지도하에서 중국의 스포츠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2008년에 중국의 스포츠 산업은 부가가치 1,554억9,799만원을 실현하고, 해당연도의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2%로 되었다.

② 국가 직업 자격증서 제도

국가체육총국은 2004년 6월에 「직업기능 검정지도센터」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스포츠업계에 있어서 국가직업 자격증서 제도를 추진하고, 전국적 규모로 스포츠업계에 특유한 직업의 직업기능 검정 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있다.

현재, 국가직업 분류대전(정부가 인정하는 직업의 일람)에 리스트 업(list up)되고 있는 스포츠 업계에서 특유한 직업으로서는 사회체육지도원(social sports instructors), 스포츠시설 정비사, 스포츠매니저 및 인명구조원(lifesaver)이 있다. 이전은 사회체육지도원은 일괄해서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원으로 있었으나, 직업기능 검정지도센터가 설립되었던 것에 동반하여 사회체육지도원은 하나의 직업으로 되었다. 직업으로서의 사회체육지도원은 스포츠 지도의 전문화와 직업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현역을 은퇴한 스포츠 선수를 수용하는 중요한 밑바탕으로도 되고 있다.

(2) 스포츠 고용 관련 시책

스포츠 선수가 현역을 은퇴한 후의 근본적인 바탕 면에 관해서 보면 2002년 9월에 국가체육총국과 중앙기구편성위원회 변공실(弁公室, 중앙정부)이 작성하고, 교육부, 재정부, 인사부, 노동·사회보장부가 공동으로 「현역을 은퇴한 스포츠 선수의 재취직 업무를 더욱 확실히 행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책정하고, 현역을 은퇴한

스포츠 선수의 재취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2003년에 국가체육총국은 재정부, 인사부와 공동으로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스포츠 선수의 경제 보상규칙」을 책정하는 등, 시장경제의 조건 하에서 현역을 은퇴한 우수한 스포츠 선수의 재취직에 동반하는 금액을 제시한다고 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5. 스포츠관련 단체 조직과 스포츠 정책의 관계

1) 국내 스포츠 총괄단체

(1) 중화전국체육총회(All-China Sports Federation: ACSF)

① 설립배경·특징

「중화전국체육총회(All-China Sports Federation: ACSF)」는 국가체육총국이 주관하는 각종 스포츠단체로 구성되는 통일 조직으로 있고, 정부에 등록된 사회단체의 하나로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가체육총국의 조직 기구의 일부로 되어져 있다. 중화전국체육총회는 스포츠 단체의 연합조직으로서 생활스포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전국운동회 등의 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경기스포츠를 위한 사업을 행하고 있다.

② 조직 구성

중화전국체육총회에는 올림픽종목 31개, 비올림픽종목 35개, 합계 66개의 종목별 협회가 소속해 있고, 각 지방의 성(省)에도 성(省)체육총회가 설치되어져 있다.

또한, 지방에는 각급의 체육총회가 있고, 각 지방의 스포츠 단체, 경기자 및 지도자가 연계하는 조직으로서 지방의 스포츠에 관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2) 중국올림픽위원회(Chinese Olympic Committee: COC)

① 설립배경·특징

「중국올림픽위원회(Chinese Olympic Committee: COC)」는 비정부, 비영리의 국

내 스포츠단체로 있고, 올림픽 활동(movement)과 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올림픽 활동과 관련하는 국제적인 사항에 있어서 중국을 대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그 외 각국의 국내 올림픽위원회와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현장, 올림픽 활동에 근거한 스포츠의 진흥을 행하고 있다.

② 조직 구성

2009년 10월의 중국올림픽위원회 위원 명부에 의하면 그 회장은 국가체육총국장이 겸직하고 있고, 그 외의 위원도 국가체육총국의 부국장, 각 부국의 국장, 각 운동관리센터 주임, 지방의 성(省) 체육국장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원 구성에 관해서는 국가체육총국에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2) 그 외

(1) 스포츠계 전체와 스포츠 행정과의 관계·제휴 연계

중국의 스포츠 정책은 국가체육총국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마련되어져 있다. 각종의 올림픽 스포츠종목에 관해서는 운동관리센터가 설치되고, 또한 학교교육 단계에서도 인재의 발굴과 양성에 관해서 이미 체계적인 제도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가체육총국과 중국올림픽위원회의 회장은 동일인으로 있고, 임원 구성에도 중복이 있는 것으로, 중앙 스포츠행정 조직과 국내 스포츠 조직과의 사이에는 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중국이 스포츠 정책을 관민(官民)일체로 되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5 장

통합체육회 조직 운영 모형 설정 및 활성화 방안

.....
제1절 조직운영 모형의 도출 원칙

제2절 조직운영 모형의 설정

제3절 활성화 방안 및 향후과제
.....

제 5 장 통합체육회 조직 운영 모형 설정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조직운영 모형의 도출 원칙

1. 체육활성화의 원칙

학교체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체육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은 체육이라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생활체육이 과거보다는 활성화되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약한 편이며, 동시에 국위선양이나 국민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도 엘리트체육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전광역시체육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체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시민에게 체육을 통한 감동과 기쁨을 주고 아울러 시민화합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대전건설에 일조하며 대외적으로 스포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시 위상의 선양이라는 비전하에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시민의 체력향상과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시민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목적 사업으로는 ① 시민체육 보급 및 선수경기지도자 육성, ② 전국체육대회 등 대한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각종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③ 스포츠 과학의 진흥과 선수, 지도자의 경기기술 연구 촉진 사업, ④ 가맹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 지원·육성, ⑤ 각종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등 유치 및 개최, ⑥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개발 및 추진, ⑦ 국제 및 사·도간 체육교류, ⑧ 체육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⑨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⑩ 기타 체육발전에 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 7330의 생활화로 건강한 도시건설과 시민의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는 비전하에 시민건강 100세를 위한 생활체육특별시 만들기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시, 선진체육행정 구현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를 통한 생활체육으로 살맛나는 도시 대전 만들기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목적 사업으로는 ① 구(區) 생활체육회 및 시(市) 종목별연합회의 관리·지원, ②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③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④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⑤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⑥ 시민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⑦ 청소년 생활체육 연구보급, ⑧ 기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동안 생활체육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처럼 전 시민이 좋은 여건 하에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 체육 부문에서는 선수의 저변층 감소와 경기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 이미지 제고와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따른 대중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결국,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는 대전광역시 시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계적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엘리트체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연계성 강화의 원칙

현행 엘리트체육의 한계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대전광역시의 체육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바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강화이다.

현재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간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연계나 협조를 찾을 수 없으며 특히, 지방단위에서 연계 및 협조가 아닌 견제와 갈등의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기관에 있어 연계성의 부족은 국가 전체의 체육발전 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우리나라 체육구조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비 연계 및 협력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41.5%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두 기관의 연계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한정된 시(市)의 국가재원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 육을 발전시켜야 되는 대전광역시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유사한 사업은 두 기관의 연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지역주 민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공공체육 및 생활체육활동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 여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의 일부인데, 즉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을 도모하는 것임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인 것이다. 생활체육이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생활 체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에 침투하여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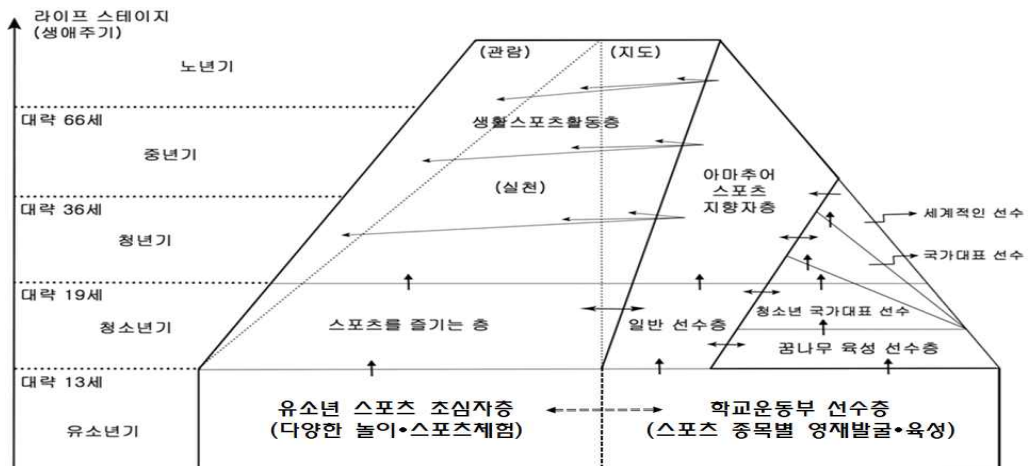


그림 5-1.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의 연계성 모형도

결국, 체육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역량강화는 지역체육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물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지역체육 행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체육발전을 위한 기본 틀은 학교체육이 하부구조를 이루어 발전하면서 엘리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이 상호간에 연계하면서 발전하는 약간 마른모꼴로 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는 전체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그림 5-1).

3. 자율성 확보의 원칙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조직은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의사결정이나 재정 운영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전광역시체육회나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는 총회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재정 면에서는 국고나 기금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체육회의 예산은 약 13,369백만 원으로 시(市) 지원금이 86.0%, 국민체육기금(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교육청)이 5.8%, 이월금 포함 자체수입이 8.4%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예산은 약 5,274백만 원으로 시(市) 지원금이 72.1%, 국민체육기금(국민생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이 26.5%, 자체수입이 0.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체육관련 조직은 중앙정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는 민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의 경우도 체육단체는 자율적인 운영이 원칙이며, 협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체육관련 공공서비스를 대신하여 수행할 때 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체육업무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민간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체육환경이 다른 선진국의 예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향후 대전광역시의 체육관련 조직 운영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4. 조직효율성의 원칙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통합의 장점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관련 행정체계의 일원화로 의사결정의 신속화 및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체육행정력의 집중으로 다양해지는 대전광역시 시민의 스포츠 요구도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시민의 체력향상과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체육인프라 확충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체육관련 조직의 통합으로 체육관련 종사자의 불협화음을 해소하여 체육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통합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별도의 영역이 아닌 체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며, 통합형은 최상위의 목표를 지향할 때는 타당한 안이 될 수 있지만, 차상위 목표나 하위목표를 지향할 때는 적당하지 않은 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두 기관 통합하에서는 엘리트체육의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는 것이 조직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엘리트체육이 생활체육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엘리트체육을 생활체육에 대한 장려책으로 이용하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상호이익이 되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단일한 존재로 간주한다.

제2절 조직모형의 설정

1. 원칙과 조직모형의 설정관계

조직모형의 4가지 도출 원칙으로 볼 때 연계강화 모형, 실질적 완전통합 모형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다. 연계강화 모형에서는 개별적인 체육의 활성화와 연계성은 기대할 수 있지만 조직의 자율성, 효율성의 원칙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실질적 완전통합 모형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개별적인 활성화에도 적합하며 체육관련 조직이 체육발전을 위해 자율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안이 될 수 있다.

2. 1안: 연계강화 모형

1안(그림 5-2)은 연계강화 모형으로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간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며 직·간접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조직의 형태는 대전광역시체육회 기획조정실에서 엘리트체육부와 생활체육부의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형태로 이전보다는 연계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는 시의 생활체육에 대한 역량강화와 함께 현재의 생활체육회의 업무를 대전광역시로 이관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대전광역시는 ‘체육행정의 종합화’라는 측면에서 체육 분야를 다른 부분과 연계를 강화하고 문화·복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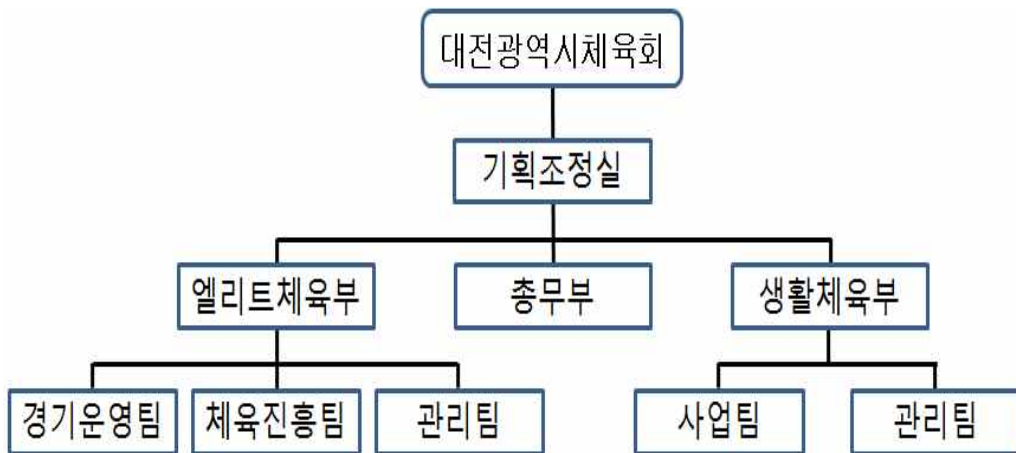


그림 5-2.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연계강화 모형

3. 2안: 실질적 완전통합 모형

실질적 완전통합 모형(그림 5-3)은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초위에서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가 하나의 기관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며, 즉 양 기관의 조직을 완전히 통·폐합한 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여 엘리트체육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체육의 육성이라는 대전제를 만족시킬 수 있

는 안이 되고 있다. 두 기관의 통합시에는 현재 양 기관의 정관상 목적사업 내용을 통합 변경하고, 체육정책개발실은 새로 출범하는 실질적 완전통합 모형 기관의 목적사업에 따른 정책을 계획·수립하고, 경기운영팀은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기존 대전광역시체육회의 각종대회 참가·운영 및 체육단체·선수육성지원 사업을, 체육진흥사업팀은 생활체육과 관련된 기존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사업을, 체육시설·인력관리팀은 기존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에서 운영 내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총괄 운영과 함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력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이는 양 기관에 있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담당하였던 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해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화와 분업화의 원리에 따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림 5-3.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실질적 완전통합 모형

제3절 활성화 방안 및 향후과제

1. 통합진행을 위한 관계인의 노력

현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3246호, 2015.3.27.공포)에 따라 통합체육회가 내년 3월에 설립되어 출범하기 전까지는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분야는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 통합체육회 출범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내년 3월에 출범됨

으로써 대전광역시 통합체육회 출범도 향후 관계기관의 합의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하며, 대전광역시 통합체육회의 정관 및 임원, 조직 등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함에 다양해지는 대전광역시 시민의 스포츠 요구도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체육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이 통합체육회 출범의 중요한 큰 흐름이니 만큼 통합을 위한 과정 속에서 두 기관의 관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체육조직의 재정력 강화

2015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체육회의 예산은 약 13,369백만 원으로 시(市) 지원금이 86.0%에 육박하고,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의 예산은 약 5,274백만 원으로 시(市) 지원금이 72.1%로, 양 기관 모두 대전광역시의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대전광역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게 되더라도 시(市)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것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체육조직은 민간조직으로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자율성은 조직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통합된 조직은 자체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행정적·제도적 지원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조직을 민간조직으로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 통합체육회 조직 역시 자율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국민생활체육회·한국체육학회(2015), 2015 국민생활체육진흥포럼 한국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 단체 통합 방향, 대한미디어.
- 김석규(2012), 중국의 스포츠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한국체육학회지 51권5호), 한국체육학회.
- 김종백(2005), 스포츠마당: 미국 체육정책의 추진체계 및 시사점(스포츠과학 90권), 체육과학 연구원.
- 김창권, 김동규(2000), 중국 스포츠정책의 전개양상과 특징(한국체육철학회지 8권2호), 한국 체육철학회.
-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2015), 2015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자료.
- 대전광역시체육회(2015), 2015년도 사업계획 개요(내부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9 체육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체육백서.
- 박주한(2013), 박근혜정부 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권2호), 한국체육 정책학회.
- 박주한(2015), 체육단체 조직구조의 변천과정과 통합방안(한국체육정책학회지 13권1호), 한국체육정책학회.
- 서성훈, 김민철(2004),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정책에 관한 연구-일본, 캐나다,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한국스포츠리서치 15권6호), 한국스포츠리서치.
- 임재구(2004), 프랑스 체육정책 사례에 관한 연구(한국체육정책학회지 4권), 한국체육정책학회.
- 전라북도체육회·전라북도생활체육회(2015), 2015 전라북도체육단체 통합 발전방향 토론회.
- 주종미(2015), 학교체육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정정책적 제안: 미국 Title IX의 응용 (스포츠와 법 18권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ディースター·라이폴트著·円谷峻訳(2008), ドイツ民法総論－設例・設問に学ぶ－, 成文堂, 373-393.
- 唐木國彦(1978), 西ドイツのスポーツ政策(スポーツ政策), 大修館書店.
- 福岡孝純他(2008), ドイツにおけるスポーツ・フォア・オール政策とスポーツ施設整備計画－ ゴールデン・プランからゴールデン・プログラムへ－, 帝京大学経済学研究, 42(1), 57-61.
- 笹川スポーツ財団(2009), 諸外国のスポーツ振興施策に係わる調査.

張林芳(2010), 中華人民共和國体育法, スポーツ法研究, 11, 13-18.

齋藤健司(2007), フランススポーツ基本法の形成, 成文堂.

齋藤健司(2008), フランスのスポーツ政策-スポーツ政策の現代的課題-, 日本評論社, 213-226.

Arrêté du 30 décembre 2005 portant organisation des directions et sous-directions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chargé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vie associative.CNDS/Direction des Sports, INSEP, MEOS, enquête «Pratique physique et sportive 2010». http://www.sports.gouv.fr/IMG/pdf/chiffres-cles_du_sport_2010.pdf

CNOSF. <http://www.franceolympique.com/>

DePauw Karen & Gavron Susan(2005), Disability Sport, 2nd ed., Human Kinetics.

http://assets.teamusa.org/assets/documents/attached_file/filename/29954/U.S._Olympic_Committee_2009_Annual_Report_2.pdf

http://assets.teamusa.org/assets/documents/attached_file/filename/29954/U.S._Olympic_Committee_2009_Annual_Report_2.pdf

http://assets.teamusa.org/assets/documents/attached_file/filename/32829/U.S._Olympic_and_Paralympic_Site_Designation_Plan_2010.pdf

http://assets.teamusa.org/assets/documents/attached_file/filename/32829/U.S._Olympic_and_Paralympic_Site_Designation_Plan_2010.pdf

http://assets.teamusa.org/assets/documents/attached_file/filename/34790/U_S__Olympic_and_Paralympic_Training_Site_2010_Fact_Sheet.pdf

http://assets.teamusa.org/assets/documents/attached_file/filename/34790/U_S__Olympic_and_Paralympic_Training_Site_2010_Fact_Sheet.pdf

http://franceolympique.com/files/File/publications/Rapport_annuel/RapportAnnuelCNOSF2009.pdf

<http://handisport.org/index.php>

[http://s1.assets.usoc.org/assets/documents/attached_file/filename/41112/2011_Site_Fact_Sheet.pdf?1302643470.](http://s1.assets.usoc.org/assets/documents/attached_file/filename/41112/2011_Site_Fact_Sheet.pdf?1302643470)

<http://usparalympics.org/about-u-s-paralympic-team>

<http://usparalympics.org/about-u-s-paralympic-team>

http://www.acsm.org/AM/Template.cfm?Section=Continuing_Education1

http://www.acsm.org/AM/Template.cfm?Section=Continuing_Education1

http://www.acsm.org/AM/Template.cfm?Section=Get_Certified

<http://www.asep.com/about.cfm>

<http://www.asep.com/Administrators/CoachEd.cfm>

<http://www.asep.com/courseInfo/curriculum.cfm>

<http://www.bls.gov/oco/oco2003.htm>
<http://www.census.gov/prod/2003pubs/c2kbr-17.pdf>
<http://www.creps-auvergne.jeunesse-sports.gouv.fr/>
<http://www.ensa.jeunesse-sports.fr/>
<http://www.ffsa.asso.fr>
<http://www.formation-bpjeps.com/>
<http://www.gwcc.com/about/docs/2010%20GWCCA%20Annual%20Report.pdf>
http://www.insee.fr/fr/themes/document.asp?reg_id=0&id=3087INSEP. <http://www.insep.fr/>
<http://www.legifrance.gouv.fr/>
http://www.sports.gouv.fr/IMG/pdf/presentation_programme_219_PLF_2011.pdf
http://www.sports.gouv.fr/IMG/pdf/budget_SPORT_2011.pdf
<http://www.sports.gouv.fr/IMG/pdf/Organigramme.pdf>
http://www.sports.gouv.fr/IMG/pdf/Stat-Info_09-01_juin2009_internet.pdf
<http://www.teamusa.org/about-USOC/USOC-general-information/leadership/key-executives>
<http://www.teamusa.org/news/2010/09/28/USOC-won-t-create-central-list-of-banned-coaches/38761>
<http://www.teamusa.org/olympic-sports>
<http://www.teamusa.org/resources/USOC-affiliated-organizations>
<http://www.teamusa.org/resources/USOC-programs>
<http://www.USOC.org/>
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02), Schéma de services collectifs du sport.
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07), Les métiers & diplômés professionnels relevant du sport et de l'animation.
Ministère des Sports. <http://www.sports.gouv.fr/>

정책연구보고서 2015-59

대전광역시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도서출판 흥경 TEL 02-362-4431 FAX 02-385-420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